시 보

선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787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5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구월 A-3BL)고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포함) ····· 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57호 도시계획시설(계양경기장)사업 실시계획 고시 ····· 4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59호 도시계획시설[도로명: 광로3류5호선, 사업명: 아암로(해안도로) 확장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4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60호 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49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6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 58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63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 6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64호 도시관리계획(희망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4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65호 인천도시관리계획(사근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71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907호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7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91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13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91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13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92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136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9-408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137

회람								

인천광역시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94호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41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95호 인천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154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99호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8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9–316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77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9-319호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37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5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구월 A-3BL)고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포함)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51번지(구월 A-3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명: 인천구월 A-3BL 공공임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인천도시공사 사장 박인서
   나.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3. 사업개요

구 분	개 요	비 고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51번지(구월 A-3BL)	
사업면적	32,107.80㎡	
대지면적	32,033.70㎡	
연 면 적	88,893.7657㎡	
규 모	아파트 6동, 지하2 지상 29층 1,10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행복주택: 754세대, 영구임대주택: 355세대)	

4. 사 업 비: 123,815,835천원(주택도시기금 55,798,446천원)
5. 사업기간: 2019. 8. ~ 2023. 2.
6. 기타: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032-440-4732) 및 인천도시공사 공공주택사업처(032-260-581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인천구월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일원	840,713.0	–	840,713.0	국토해양부 제2010-807호 (`10.11.15)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1)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840,713.0	–	840,713.0	100.0	
주거지역	소 계	494,263.9	–	494,263.9	58.8	
	제2종전용주거지역	4,920.0	–	4,920.0	0.6	
	제1종일반주거지역	23,114.9	–	23,114.9	2.7	
	제2종일반주거지역	100,805.5	–	100,805.5	12.0	
	제3종일반주거지역	365,423.5	–	365,423.5	43.5	
상업지역	소 계	127,548.3	–	127,548.3	15.2	
	일반상업지역	127,548.3	–	127,548.3	15.2	
녹지지역	소 계	218,900.8	–	218,900.8	26.0	
	자연녹지지역	218,900.8	–	218,900.8	26.0	

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61호(2015. 09. 11) 사항임

2) 용도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인천구월 공공주택지구	인천광역시 일원	89,755,383	–	89,755,383	

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61호(2015. 09. 11) 사항임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i)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52	9,367	124,094.2	13	3,609	50,675.0	16	3,034	22,685.0	23	2,724	46,120.0
		변경	52	9,367	124,429.3	13	3,609	50,749.1	16	3,034	22,946.0	23	2,724	46,120.0
일반도로	계	-	33	8,534	113,950.1	11	3,563	50,289.1	9	2,677	20,104.0	13	2,294	43,557.0
	대로	-	4	3,203	36,907.0	1	925	1,752.0	1	1,020	2,447.0	2	1,258	32,708.0
	중로	-	18	3,909	64,815.1	5	1,916	41,631.1	5	1,283	14,664.0	8	710	8,520.0
	소로	-	11	1,422	12,228.0	5	722	6,906.0	3	374	2,993.0	3	326	2,329.0
특수도로	계	-	19	833	5,865.0	2	46	460.0	7	357	2,842.0	10	430	2,563.0
	소로	-	19	833	5,865.0	2	46	460.0	7	357	2,842.0	10	430	2,563.0
기타			-	-	4,614.2	가감속차선 및 가각전제 등								

ii)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3	35~114	주간선도로	17,920 (925)	계산동 광3-9	고잔동 광3-5	일반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5-661호 ('15.09.11)	
기정	대로	2	7	30~45	보조간선도로	9,727 (1,020)	광2-1	수산동 대1-20	일반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5-661호 ('15.09.11)	
변경	대로	2	7	30~45	보조간선도로	9,727 (1,020)	광2-1	수산동 대1-20	일반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5-661호 ('15.09.11)	
기정	대로	3	175	26	보조간선도로	405	대2-7	대3-176	일반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대로	3	176	26	보조간선도로	853	대1-13	중2-766	일반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중로	1	453	20	집산도로	617	대3-176	소1-5	일반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중로	1	454	23	집산도로	465	대1-13	대3-176	일반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중로	1	455	23	집산도로	394	대2-7	대3-176	일반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변경	중로	1	455	23	집산도로	394	대2-7	대3-176	일반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구분	규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483	21.5	집산도로	291	광3-10	대3-175	일반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중로	1	484	21.5	집산도로	149	대2-7	중1-483	일반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중로	2	762	15	집산도로	284	대3-175	중1-483	일반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중로	2	763	18.5	국지도로	50	중1-483	중2-762	일반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중로	2	764	18.5	국지도로	253	중2-762	중3-289	일반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중로	2	765	15	집산도로	32	대3-176	중2-764	일반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중로	2	766	15	집산도로	664	중2-10	중1-453	일반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중로	3	288	12	국지도로	126	중2-762	중2-764	일반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중로	3	289	12	국지도로	126	중2-762	중2-764	일반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중로	3	290	12	집산도로	23	대3-176	소1-3	일반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중로	3	291	12	국지도로	25	대3-176	중3-294	일반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중로	3	292	12	국지도로	25	대3-176	중3-294	일반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중로	3	293	12	국지도로	130	대3-176	중1-455	일반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중로	3	294	12	국지도로	240	중1-454	완충녹지2	일반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중로	3	295	12	국지도로	15	대1-13	근린공원3	일반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18호 ('11.12.27)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30	중2-766	중1-453	일반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218	소1-6	소1-1	일반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95	소1-3	소1-1	일반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구분	규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85	소1-3	소1-1	일반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소로	1	6	10	특수도로	9	중1-453	소1-3	보행자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소로	1	7	10	특수도로	37	대3-176	중2-764	보행자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48	소1-2	소3-28	일반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소로	2	2	8	특수도로	39	중2-764	중3-288	보행자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소로	2	4	8	특수도로	29	대3-175	중3-289	보행자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소로	2	5	8	특수도로	55	대3-175	근린공원2	보행자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소로	2	6	8	특수도로	25	대3-176	중3-294	보행자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119	대3-176	중1-455	일반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소로	2	8	8	특수도로	81	근린공원3	광장2	보행자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소로	2	9	8	특수도로	117	광장1	근린공원2	보행자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소로	2	10	8	특수도로	11	대1-13	소3-28	보행자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18호 ('11.12.27)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107	중1-153	중1-153	일반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898호 ('13.12.30)	
기정	소로	3	1	6.5	국지도로	165	중1-453	소1-2	일반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소로	3	2	5~6	특수도로	129	중1-453	중2-766	보행자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소로	3	3	6	특수도로	18	소1-1	소3-2	보행자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소로	3	4	6	특수도로	18	중2-766	소1-3	보행자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소로	3	5	6	특수도로	32	소1-3	소1-4	보행자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구분	규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6	6	특수도로	17	중1-453	소1-5	보행자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16	소1-3	소3-11	일반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소로	3	8	6	특수도로	54	중2-764	광장3	보행자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소로	3	9	6	특수도로	56	중2-762	광장3	보행자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소로	3	10	6	특수도로	48	중1-483	중2-762	보행자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소로	3	11	6	특수도로	7	대3-176	소3-7	보행자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18호 ('11.12.27)	
기정	소로	3	12	5	특수도로	51	소2-7	근린공원3	보행자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18호 ('11.12.27)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433 (194)	중3-24	소3-28	일반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기정	소로	3	28	6~8	국지도로	217 (145)	소2-10	광3-7	일반 도로		01.09.12	

※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사항

iii)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7	대로 2-7	·가속차로 설치 - 폭원 : 3m / 연장 : 100m - 가속차로 면적 : 261.0㎡	·중로1-455호선과 연결되는 대로2-7호선의 원활한 접속 및 교통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속차로를 설치하고자 함
중로 1-455	중로 1-455	·우회전차로 설치 - 폭원 : 3m / 연장 : 27m - 우회전차로 면적 : 74.1㎡	·A-3BL의 사업계획승인 협의결과 A-3BL 진출입구의 교통안전을 확보 및 입주민의 교통 편의성을 고려하여 우회전차로를 설치하고자 함

나) 주차장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6,574.1	-	6,574.1	-	-
기정	1	주차장	구월동 1481차	467.8	-	467.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
기정	2	주차장	구월동 1492-1차	410.9	-	410.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
기정	3	주차장	구월동 1546차	2,409.0	-	2,409.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
기정	4	주차장	구월동 1529차	1,459.0	-	1,459.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
기정	5	주차장	구월동 1515차	882.0	-	88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
기정	6	주차장	구월동 1482차	945.4	-	945.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5-661호 ('15.09.11)	-

2) 공간시설

가) 공원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나) 녹지

ⅰ)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217,956.9	-	217,956.9	-	-
소 계			-	-	213,033.5	-	213,033.5	-	-
기정	1	전재울	근린 공원	구월동 1501공	122,963.6	-	122,963.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
기정	2	인천 아시아드	근린 공원	구월동 1531공	71,387.3	-	71,387.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유수지1 중복결정
기정	3	찬우물	근린 공원	구월동 1522공	18,682.6	-	18,68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
소 계			-	-	3,398.0	-	3,398.0	-	-
기정	1	성리	어린이 공원	구월동 1495공	1,505.9	-	1,505.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
기정	2	무지개	어린이 공원	구월동 1509공	1,892.1	-	1,89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
소 계			-	-	1,525.4	-	1,525.4	-	-
기정	1	구월	소공원	구월동 1486-2공	1,525.4	-	1,525.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30,436.4	감)261.0	20,175.4	-	-
소 계			-	-	24,829.6	감)261.0	24,568.6	-	-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구월동 1510-1공, 1524-1공	3,355.7	-	3,355.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구월동 1508-1공, 1513-1공, 1554-1공	12,819.0	-	12,819.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구월동 1551-1공	2,871.5	감)261.0	2,610.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구월동 1485-1공	2,353.3	-	2,353.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구월동 1486-1공	2,374.4	-	2,374.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구월동 1521-1공, 1521-2공	1,055.7	-	1,055.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
소 계			-	-	5,683.1	-	5,683.1	-	-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구월동 1544공	3,939.5	-	3,939.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구월동 1487-3공, 1488-2공	1,306.3	-	1,306.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구월동 1503-10공, 1504-5공, 1503-9공	437.3	-	437.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889호 ('13.12.30)	-
소 계			-	-	361.0	-	361.0	-	-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구월동 1483-4공	361.0	-	36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18호 ('11.12.27)	-

ii)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완충녹지	·완충녹지 면적변경 - 면적 : 2,871.5㎡ → 2,610.5㎡ (감)261.0㎡	·대로2-7호선 상 가속차로 설치에 따른 완충녹지 경계 변경

다) 광장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3,585.3	-	3,585.3	-	-
기정	1	전재울1호	일반광장	구월동 1552공	1,432.7	-	1,43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
기정	2	전재울2호	일반광장	구월동 1553공	1,432.6	-	1,43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
기정	3	전재울3호	일반광장	구월동 1539공	720.0	-	720.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19호 ('12.10.23)	-

라) 공공공지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1,593.8	-	1,593.8	-	-
기정	1	공공공지	구월동 1487-1공, 1487-2공, 1488-1공, 1489-6공, 1491-4공	1,593.8	-	1,593.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

3)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가) 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40,030.1	-	40,030.1	-	-
소 계			-	-	24,337.4	-	24,337.4	-	-
기정	128	성리 초등학교	초등학교	구월동1487학	12,337.4	-	12,337.4	'97.07.23	-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구월동1521학	12,000	-	12,00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
소 계			-	-	11,948.0	-	11,948.0	-	-
기정	129	성리 중학교	중학교	구월동1488학	11,948.0	-	11,948.0	'04.05.22	-
소 계			-	-	3,744.7	-	3,744.7	-	-
기정	2	학교	유치원	구월동1520대	3,199.8	-	3,199.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
기정	3	학교	유치원	구월동1502대	544.9	-	544.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

나)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2,970.0 (9,949.9)	-	2,970.0 (9,949.9)	-	-
기정	1	공공청사	-	구월동 1484대	2,028.9	-	2,028.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
기정	2	공공청사	-	구월동 1516대	808.0	-	808.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
기정	11	공공청사	-	구월동 1479대	133.1 (7,113)	-	133.1 (7,113)	-	-

※ (　　) 는 남동소방서 포함 면적임

4) 방재시설 - 변경없음

가)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9,052	-	9,052	-	-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구월동 1531공 일원	9,052	-	9,05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

5)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가) 가스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36.0	-	36.0	-	-
기정	1	가스공급설비	가스공급시설	구월동 1545잡	18.0	-	18.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
기정	2	가스공급설비	가스공급시설	구월동 1507잡	18.0	-	18.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7호 ('10.11.15)	-

6) 환경기초시설 - 변경없음

가) 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k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합 계			-	-	-	2.648	19,400	-	-
기정	A	하수도 (A-LINE)	구월동 826-8	남촌동 508	승기교 ~대로 2-7호선	0.707	5,148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114호 ('07.06.04)	-
기정	B-1	하수도 (B-1LINE)	구월동 569-1	구월동 686	호구포길 인근	0.607	4,190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114호 ('07.06.04)	-
기정	B-2	하수도 (B-2LINE)	구월동 717-2	남촌동 507	남동IC 인근	0.962	8,440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114호 ('07.06.04)	-
기정	D	하수도 (D-LINE)	수산동 226-4	구월동 717	구월정	0.372	1,622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114호 ('07.06.04)	-

라.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14,472.9	-	-	14,472.9	-
-	D1	2,655.8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80-1대	231.1	획지분할불가 및 인접필지 합필불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80-2대	219.4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80-3대	218.0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80-4대	217.8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80-5대	220.0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80-6대	218.8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80-7대	218.8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80-8대	230.3	
			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80-9대	219.0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80-10대	220.0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80-11대	221.0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80-12대	221.6	
-	D2	1,260.2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89-1대	266.4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89-2대	248.4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89-3대	248.4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89-4대	248.5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89-5대	248.5	
-	D3	893.4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0-1대	281.3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0-2대	281.2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0-3대	330.9	
-	D4	1,503.4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3-1대	266.2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3-3대	244.4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3-5대	263.1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3-2대	252.9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3-4대	233.9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3-6대	242.9	
-	D5	547.9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7-1대	283.9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7-2대	264.0	
-	D6	1,549.6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4-1대	245.3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4-3대	257.1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4-5대	275.0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4-2대	242.1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4-4대	260.1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4-6대	270.0	
-	D7	1,634.3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6-1대	270.2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6-3대	282.1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6-5대	283.0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6-2대	257.0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6-4대	269.0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6-6대	273.0	
-	D8	684.2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8-1대	217.4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8-2대	236.4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8-3대	230.4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	D9	954.0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83-2대	267.0	획지분할불가 및 인접필지 합필불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83-1대	294.0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83-3대	393.0	
-	D10	875.5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04-1대	219.6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04-2대	224.9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04-4대	217.1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04-3대	213.9	
-	D11	1,914.6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03-1대	247.7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03-2대	257.7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03-3대	236.5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03-4대	231.5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03-5대	229.1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03-6대	238.2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03-7대	236.5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03-8대	237.4	

2)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10,746.0	-	-	10,746.0	-
-	근생1	949.4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1-1대	326.8	획지분할불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1-2대	300.7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1-3대	321.9	
-	근생2	1,414.0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2-2대	343.7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2-3대	338.8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2-4대	341.8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2-5대	389.7	
-	근생3	925.7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9-1대	458.4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9-2대	467.3	
-	근생4	1,223.7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00-1대	385.9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00-2대	377.0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00-3대	460.8	
-	근생5	1,265.0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26-1대	627.0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26-2대	638.0	
-	근생6	902.6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14-1대	452.8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14-2대	449.8	
-	근생7	969.6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17-1대	474.8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17-2대	494.8	
-	근생8	1,503.2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18-1대	507.5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18-2대	488.2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18-3대	507.5	
-	근생9	1,592.8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12-1대	789.0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12-2대	803.8	

3) 공동주택용지 - 변경

가) 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계	-	298,592.4	-	298,592.4	-
-	A-1	26,195.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86대	26,195.9	획지분할불가 (단,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은 제외)
-	A-2	28,722.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85대	28,722.9	
-	A-3	32,107.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51대	32,107.8	
-	B-1	37,546.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13대	37,546.2	
-	B-2	33,449.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24대	33,449.0	
-	B-3	36,91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54대	36,913.0	
-	S-1	54,995.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10대	54,995.7	
-	S-2	48,587.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08대	48,587.9	
-	S-3	74.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57-1대	74.0	

나)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계	-	298,518.3	-	298,518.3	-
-	A-1	26,195.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86대	26,195.9	획지분할불가 (단,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은 제외)
-	A-2	28,722.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85대	28,722.9	
-	A-3	32,033.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51대	32,033.7	
-	B-1	37,546.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13대	37,546.2	
-	B-2	33,449.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24대	33,449.0	
-	B-3	36,91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54대	36,913.0	
-	S-1	54,995.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10대	54,995.7	
-	S-2	48,587.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08대	48,587.9	
-	S-3	74.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57-1대	74.0	

4) 도시형생활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계		2,190.0	-	2,190.0	-
-	도생1	2,190.0	인천광역시 남동구 1530대	2,190.0	획지분할불가

5) 상업업무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34,264.2	-	-	34,264.2	-
소 계		29,036.8	-	-	29,036.8	-
-	상업1	2,405.7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32-1대	1,230.8	획지분할불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32-2대	1,174.9	
-	상업2	2,253.8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35대	2,253.8	
-	상업3	1,048.9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37-1대	525.9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37-2대	523.0	
-	상업4	1,048.9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38-1대	525.9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38-2대	523.0	
-	상업5	3,606.2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33-1대	688.0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33-2대	905.7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33-3대	660.9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33-4대	660.7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33-5대	690.9	
-	상업6	2,308.0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36-1대	760.9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36-2대	760.1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36-3대	787.0	
-	상업7	1,076.0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0-1대	537.0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0-2대	539.0	
-	상업8	1,076.0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1-1대	537.0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1-2대	539.0	
-	상업9	1,700.0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34-1대	801.0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34-2대	899.0	
-	상업10	3,266.8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7-1대	1,626.4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7-2대	827.1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7-3대	813.3	
-	상업11	2,994.8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8-1대	978.9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8-2대	971.0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8-3대	522.9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8-4대	522.0	
-	상업12	3,369.6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2-1대	566.0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2-3대	559.9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2-2대	1,125.7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2-4대	1,118.0	
-	상업13	2,882.1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3-1대	959.0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3-2대	966.1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3-3대	957.0	
소 계		5,227.4	-	-	5,227.4	
-	업무1	5,227.4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27대	3,027.4	획지분할불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28대	2,200.0	

주) 상업11-3, 11-4획지는 공동개발을 권장

6)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7,781.3	-	-	7,781.3	-
-	자족1	7,781.3	1	남동구 구월동 1550-1대	1,833.7	획지분할불가
			2	남동구 구월동 1550-2대	2,044.0	
			3	남동구 구월동 1550-3대	2,001.7	
			4	남동구 구월동 1550-4대	1,901.9	

7) 복합커뮤니티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3,022.8	-	3,022.8	-
-	복컴1	3,022.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29-3전 일원	3,022.8	획지분할불가

8) 공공청사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2,970.0	-	2,970.0	-
-	공청1	2,028.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84대	2,028.9	획지분할불가
-	공청2	808.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16대	808.0	
-	공청11	133.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79대	133.1	-

주) 공공청사11은 남동소방서 지구 내 포함 면적임

9) 학교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36,285.4	-	36,285.4	-
-	학1	12,337.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87학	12,337.4	획지분할불가
-	학2	11,948.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88학	11,948.0	
-	학3	12,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21학	12,000.0	

10) 유치원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3,744.7	-	3,744.7	-
-	유1	3,199.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20대	3,199.8	획지분할불가
-	유2	544.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02대	544.9	

11)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3,810.8	-	3,810.8	-
-	종1	1,3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25종	1,323.0	획지분할불가
-	종2	1,322.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11종	1,322.9	
-	종3	1,164.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05종	1,164.9	

12)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6,574.1	-	6,574.1	-
-	주1	467.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81차	467.8	획지분할불가
-	주2	410.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2-1차	410.9	
-	주3	2,409.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6차	2,409.0	
-	주4	1,459.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29차	1,459.0	
-	주5	88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15차	882.0	
-	주6	945.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82차	945.4	

13) 교육문화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3,264.6	-	3,264.6	-
-	교1	3,264.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23대	3,264.6	획지분할불가

14) 기타시설설용지 - 변경없음

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1,772.0	-	1,772.0	-
-	위1	1,77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06주	1,772.0	획지분할불가

나) 가스공급설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36.0	-	36.0	-
-	가1	18.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5잡	18.0	획지분할불가
	가2	18.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07잡	18.0	

15) 자족 및 유통판매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33,081.9	-	33,081.9	-
-	자유1	33,081.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9대	33,081.9	획지분할불가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행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가) 필지형 단독주택(제1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D1 ~ D9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라목, 바목, 아목 내지 자목, 카목 내지 하목, 너목에 한함 ※ 단 이주자택지에 한하여 건축물연면적의 2/5범위내에서 1층 이하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 – 지하층 주거용도 불허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필로티구조 포함)
	허용가구수		• 6가구 이하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5가구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전면가로를 고려하여 배치
	형태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 설치시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도록 하며,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 야 함 •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색채		• 지붕의 색채는 외벽의 색상과 어울리는 색으로 하며, 채도가 높은 계통의 원색의 사용을 지양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 하도록 하여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물의 외벽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야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기타		• 필지형 단독주택용지에는 태양광설비, 태양열설비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의 도입을 권장함

나) 필지형 단독주택(제2종전용주거지역)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D10 D1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필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20% 이하
	높이		• 3층 이하
	허용세대수		• 5가구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전면가로를 고려하여 배치
	형태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 설치시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도록 하며,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 야 함 •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색채		• 지붕의 색채는 외벽의 색상과 어울리는 색으로 하며, 채도가 높은 계통의 원색의 사용을 지양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 하도록 하여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물의 외벽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야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기타		• 필지형 단독주택용지에는 태양광설비, 태양열설비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의 도입을 권장함

2)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 변경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A-1 A-2 A-3 B-1 B-2 B-3 S-1 S-2 S-3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음
	용적률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음
	높이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음
	배치		• 단지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내 통경축 확보 및 인접 근린공원으로의 조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기법을 강구함 • A-1 BL, A-2 BL 북측 일부지역에 저층(10층이하)배치 • S-2 BL, B-1 BL, B-3 BL 대로1-13호선변(호구포길)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0m 구간내의 건축물 중 맨 끝 1호의 건축물은 직각배치를 원칙으로 함
	형태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구배가 10분의 4이상, 10분의 7 이하) 또는 장식구조물로 특화된 평지붕을 하도록 하며, 지붕장식물 업라이팅 등 야간경관조명을 권장 • 단지내 보행동선 및 커뮤니티시설, 바람길 등의 공간 확보를 위해 주동의 지상층에 피로티 설치시 최소 2개층 이상을 확보하여 설치
	색채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 하도록 하여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물의 외벽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입면을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를 구분하여 색채, 창호·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를 권장함
	건축선		• 대지내에 가로경관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해당공지에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함 - 보행공간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소재를 이용하여 포장하며, 보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 및 광고물의 설치는 할 수 없음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름

※ S-3은 지구외 팬더아파트 편입토지로써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팬더아파트 내용을 따른다.

<별표1> 공동주택(아파트)의 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필지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세대수(호)	평균공급면적(㎡)	최고층수(층)이하	건폐율(%)이하	용적률(%)이하	비고
		기정	변경						
합계	-	298,518.4	298,444.3	6,118	-	-	-	-	-
A-1	60㎡이하	26,195.9	26,195.9	511	75	30층	50	160	분납임대
A-2	60㎡이하	28,722.9	28,722.9	636	75	30층	50	180	공공분양
A-3	소계	32,107.8	32,033.7	1,109	45 60	30층	50	190	-
	60㎡이하	8,208.0	8,208.0	355	45				영구임대
	60㎡이하	23,899.8	23,825.7	754	60				국민임대
B-1	60~85㎡	37,546.2	37,546.2	782	105	30층	50	220	공공분양
B-2	60~85㎡	33,449.0	33,449.0	602	105	30층	50	195	10년임대
B-3	60~85㎡	36,913.0	36,913.0	768	105	30층	50	220	공공분양
S-1	소계	54,995.7	54,995.7	850	105 140	30층	50	200	-
	60~85㎡	15,906.0	15,906.0	279	105				분양
	85㎡초과	39,089.7	39,089.7	571	140				분양
S-2	소계	48,587.9	48,587.9	860	105 132	30층	50	200	-
	60~85㎡	31,582.0	31,582.0	602	105				분양
	85㎡초과	17,005.9	17,005.9	258	132				분양

주) 1.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및 규모별 대지지분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2. 평균공급면적은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3. 용적률은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4. S-3은 지구외 팬더아파트 편입토지로써 공동주택의 주택유형,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에 관한 사항은 팬더아파트 내용을 따른다.

3) 도시형생활주택용지(일반상업용지) - 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도생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주거부분 350% 이하)
	높이		• 12층 이하
	배치		• 각 획지의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변 방향으로 함
	형태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구배가 10분의 3이상, 10분의 7 이하) 또는 장식구조물로 특화된 평지붕을 하도록 하며, 지붕장식물 업라이팅 등 야간경관조명을 권장 • 단지내 보행동선 및 커뮤니티시설, 바람길 등의 공간확보를 위해 주동의 지상층에 피로티 설치시 최소 2개층 이상을 확보하여 설치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처리토록 한다. 다만,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 기능상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음
	색채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 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선		• 대지내에 가로경관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해당공지에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함 - 보행공간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소재를 이용하여 포장하며, 보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 및 광고물의 설치는 할 수 없음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름

가) <별표2> 도시형생활주택용지의 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

가구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세대수 (호)	평균공급 면적(㎡)	최고층수 (층)이하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도생1	60㎡이하	2,190.0	168	45	12	70	500 (주거 : 350이하)

4) 상업업무용지(일반상업지역) - 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상업1 ~ 상업13 업무1	용도	• <별표4>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건폐율	• <별표3>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용적률	• <별표3>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높이	• <별표3>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배치	• 주출입구는 주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함 • 지정된 건축선에 따라 도로에서 이격하여 건축물을 배치함
	형태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합벽부분이나 인접 대지의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부분은 예외로 함 • 건축물의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 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처리토록 한다. 다만,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기능상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음
	색채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 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선	• 대지내에 가로경관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해당공지에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함 - 보행공간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소재를 이용하여 포장하며, 보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 및 광고물의 설치는 할 수 없음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름
	기타	• 업무용지에는 태양광설비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의 도입을 권장함

나) <별표3> 상업업무용지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구분	상업용지			업무용지
	상업 1, 5, 9, 10	상업 2~4, 6~8	상업 11, 12, 13	업무 1
건폐율(%)	70			
용적률(%)	700	300	450	500
최고층수(층)	12	5	8	12

<별표4> 상업업무용지 건축물 용도

구 분		상업용지		업무용지
		상업1~상업5, 7, 8	상업6, 상업9~13	업무 1
주거 및 업무시설군	단독주택	×	×	×
	공동주택	×	×	×
	업무시설	○	○	●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 제한상영관 제외	○ 제한상영관 제외	○ 제한상영관 제외
	종교시설	×	×	×
	운동시설	○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	○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	○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
	수련시설	×	×	×
	노유자시설	×	×	○
	관광휴게시설	○	○	○
판매시설군	판매시설	●	●	○ 상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한함
	위락시설	× (단, 상업7,8 위락시설 허용)	○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제외)	×
	숙박시설	×	○	×
교육연구 의료시설군	의료시설	○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제외	○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제외	○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제외
	교육연구시설	○	○	○
산업시설군	공장	×	×	×
	창고시설	○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
기타 시설군	1종 근린생활시설	○	○	○
	2종 근린생활시설	○	○	○
	운수시설	×	×	×
	자동차 관련 시설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교정 및 군사시설	×	×	×
	방송통신시설	○	○	○
	발전시설	×	×	×

주1) ● : 권장용도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 X : 불허용도
주2) 업무용지는 업무시설의 비율을 지상층 건축연면적의 8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주3)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는 설치할 수 없음

5) 근린생활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 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근생1 ~ 근생9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안마원, 게임제공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와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근생1~4 : 4층 이하 • 근생5~9 : 5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도로(보도)의 바닥 마감 높이와 15cm 이내로 하여 보행자의 보행 쾌적성 유도 • 전면가로의 방향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한다.
	형태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지붕형태는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하되 옥탑구조물이 가급적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지붕에는 옥외광고물 설치를 금지
	색채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 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선		• 대지내에 가로경관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해당공지에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함 - 보행공간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소재를 이용하여 포장하며, 보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 및 광고물의 설치는 할 수 없음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름

6) 공공시설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 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공청1 공청2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 목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공청1 : 50% 이하 • 공청2 : 60% 이하
	용적률		• 공청1 : 300% 이하 • 공청2 : 250% 이하
	높이		• 공청1 : 6층 이하 • 공청2 : 5층 이하
	배치		• 개별 건축계획 수용
	형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채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 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선		• 대지내에 가로경관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해당공지에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함 - 보행공간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소재를 이용하여 포장하며, 보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 및 광고물의 설치는 할 수 없다.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름
	기타		• 공공시설용지에는 태양광설비, 태양열설비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의 도입

7) 학교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 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학1 ~ 학3	용도	허용용도	• 고등학교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유치원 및 그 부대시설 •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유치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학원 제외)으로서 건축연면적의 30% 미만 범위 내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건물은 가급적이면 남향으로 배치하도록 함
	형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름
	기타		• 학교용지에는 태양광설비, 태양열설비, 지열냉난방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의 도입

8) 유치원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 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유1 유2	용도	허용용도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제외)으로서 건물 연면적의 30%이하 범위 내(유치원을 건축하고 남은 면적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건물은 가급적이면 남향으로 배치하도록 함
	형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채		–
	건축선		• 대지내에 가로경관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해당공지에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함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름
	기타		• 유치원용지에는 태양열설비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의 도입을 권장함

9) 주차장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주1 ~ 주6	용도	허용용도	• 주차전용건물일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지상층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이어야 함. 다만, 주차장외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지상층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함 •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미만에 한한다.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주1, 주2, 주5 ~ 주6 : 250% 이하 • 주3, 주4 : 400% 이하
	높이		• 주1, 주2, 주6 : 4층 이하 • 주5 : 5층 이하 • 주3 : 7층 이하 • 주4 : 8층 이하
	배치		–
	형태		•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 방향으로 건축물을 개방(창문 포함) 해서는 안됨. 단,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제외 •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을 권장함
	색채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 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선		• 대지내에 가로경관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해당공지에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함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름

10) 복합커뮤니티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 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복컴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민자치센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지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적기업 • 부수용도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 제외) ※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50%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7층 이하
	배치		-
	형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채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 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선		• 대지내에 가로경관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해당공지에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함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름
	기타		• 복합커뮤니티용지에는 태양열설비, 지열냉난방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의 도입을 권장함

11) 종교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 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종1 ~ 종3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제실,사당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의 종교집회장 및 그 부속용도(목회자 숙소, 주차시설 등)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종교1,2,3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 첨탑의 높이는 지표면에서 20m이하로 제한
	배치		-
	형태		• 첨탑에는 네온, 백열등 류의 설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을 권장함
	색채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 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선		• 대지내에 가로경관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해당공지에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함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름

12)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 - 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자족1	용도	허용용도	주용도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및 유사시설
			부수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2종근린생활시설(실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회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상점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중 창고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높이			• 12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변으로 함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공지 또는 도로(보도)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로 하여 보행자의 보행 쾌적성 유도
	형태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야 함 다만, 합벽부분이나 인접 대지의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 되지 않은 부분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여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색채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 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선			• 대지내에 가로경관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해당공지에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함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름
	기타			•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에는 태양광설비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의 도입을 권장함

13) 교육문화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 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교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 부수용도로서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안마원, 게임제공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고시원 제외)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10%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형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채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 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선		• 대지내에 가로경관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해당공지에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함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름

1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자연녹지지역) - 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위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그 부대시설(부대시설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소매점,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목의 수리점) 단, 소방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 제1항에 의거한 주유취급소의 부대시설은 허용한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함
	건축선		• 대지내에 가로경관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해당공지에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함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름

15) 자족 및 유통판매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 - 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자유1	용도	허용용도	주용도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및 유사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및 유사시설, 전문상가단지, 공동집배송센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부수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2종근린생활시설(실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회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상점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중 창고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높이			• 12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변으로 함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공지 또는 도로(보도)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로 하여 보행자의 보행 쾌적성 유도
	형태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야 함 다만, 합벽부분이나 인접 대지의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 되지 않은 부분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여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색채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 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선			• 대지내에 가로경관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해당공지에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함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름
	기타			• 자족 및 유통판매시설용지에는 태양광설비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의 도입을 권장함

바.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차량 진·출입

○ 차량의 진출입에 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비고
D1~D11 (단독주택용지) 근생1~근생9 (근린생활시설용지)	• 지구단위 계획 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결정도면 참조
A-1, A-2 A-3, B-1 B-2, B-3 S-1, S-2 (공동주택용지)	•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상의 출입구 지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허용구간에 설치함 • 두개의 단지가 마주보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 진·출입구를 일치시켜 교차로를 최소화 함 • 차량 출입구의 위치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함 - 진·출입시 사고위험이나 혼란함이 없는 곳 - 가·감속 차선의 확보 여부 - 단지 내 상가 등 차량교통 유발시설의 위치 적정성 여부 • 지하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보장치와 교통신호등을 설치함	결정도면 참조
도생1 (도시형생활주택)	• 주진입도로변으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결정도면 참조
상업1~상업13 업무1 (상업업무용지)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자유롭게 차량출입구를 설치하되 둘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접한 폭이 넓은 도로에 설치함	결정도면 참조
공청1~3, 교1, 복컴1, 종1~3, 주1~6, 위1 (공공·편익 및 기타시설용지)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결정도면 참조
학1~3, 유1~2 (교육시설용지)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여 불허구간 내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결정도면 참조
자족1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 자유1 (자족및유통판매시설용지)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자유롭게 차량출입구를 설치하되 둘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접한 폭이 넓은 도로에 설치함	결정도면 참조

다) ※ S-3은 지구외 팬더아파트 편입토지로써 차량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팬더아파트 내용을 따른다.

2) 공개공지·공공보행통로 및 대지 내 공지·담장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비고
D1~D11 (단독주택용지) 근생1~근생9 (근린생활시설용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 담장설치는 불허하며, 건축한계선이 후퇴된 부분에 생울타리를 권장하며, 대문은 투시형으로 함 • 근린생활시설은 담장설치를 원칙적으로 하여서는 안됨	결정도면 참조
A-1, A-2 A-3, B-1 B-2, B-3 S-1, S-2 (공동주택용지)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경우 건축한계선을 넘어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담장설치불허구간은 생울타리를 권장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의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동주택단지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투시형 담장으로서 단지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5m이하로 하며, 그 외 대지경계선의 담장은 높이 1m 이하의 생울타리로 함 • 지구내 순환보행체계를 고려하여 B-1 BL내 공공보행통로 조성	결정도면 참조
도생1 (도시형생활주택)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하여야 함	결정도면 참조
상업1~상업13 업무1 (상업업무용지)	• 집객력의 확보 및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주변 공공공지, 공원, 광장 등과 연계되도록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되는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결정도면 참조
공청1~3, 교1, 복컴1, 종1~3, 주1~6, 위1 (공공·편익 및 기타시설용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단, 공공청사 중 보안 유지가 우선되는 파출소 및 지구대 부지에 한하여 예외토록 함)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로에 면한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이하, 생울타리는 1.0m이하로 하여야 함 공원 등 녹지 및 그 외에 면한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0m이하로 함(단, 공공청사 중 보안 유지가 우선되는 파출소 및 지구대 부지에 한하여 예외토록 함)	결정도면 참조
학1~3, 유1~2 (교육시설용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로에 면한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이하, 생울타리는 1.0m이하로 하여야 함 공원 등 녹지 및 그 외에 면한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0m이하로 함	결정도면 참조
자족1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 자유1 (자족및유통판매시설용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결정도면 참조

라) ※ S-3은 지구외 팬더아파트 편입토지로써 공개공지·공공보행통로 및 대지내 공지·담장 등에 관한 계획에 관한 사항은 팬더아파트 내용을 따른다.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57호

도시계획시설(계양경기장)사업 실시계획 고시

도시계획시설(계양경기장)사업 실시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 032-440-1713) 및 계양구청(도시재생과, ☎ 032-450-563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11. 18.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20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명칭: 계양경기장 수익시설(골프연습장)설치 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면적: 234,872㎡ 중 17,185.5㎡

○ 규모: 가설건축물(지상3층), 연면적5,534.45㎡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당초: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변경: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18. 8. 6.~2019.12.31.

○ 변경: 2018. 8. 6.~2020.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종류 및내용	
1	계양구 서운동	207	체육용지	249,107.3	17,185.5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100	-	-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59호

도시계획시설〔도로명: 광로3류5호선, 사업명: 아암로(해안도로) 확장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명: 광로3류5호선, 사업명: 아암로(해안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해당 고시문 및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94), 경제자유구역청 송도기반과(☎453-75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9. 11. 18.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연수구 송도동, 동춘동, 옥련동 일원【변경 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종류】도시계획시설(도로명: 광로3류5호선)

【명칭】아암로(해안도로) 확장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변경 있음】

○ 당초 : 도로확장 L=2,165m, B=40m ~ 48m(6차로→8차로), 아암로 동측교량가·감속차로 및 임시구조물 설치 L=0.72km, 총 A=90,808㎡

○ 변경 : 도로확장 L=2,165m, B=40m ~ 48m(6차로→8차로), 아암로 동측교량 가·감속차로 및 임시구조물 설치 L=0.72km, 총 A=90,89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2017. 1. 20. ~ 2019.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있음】

- 붙임과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편 입 용 지 조 서(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변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	73-2	73-2	도	6,123.5	6,123.5	488	488	공	인천광역시				
2	25	25	공	270,816.5	270,816.5	96	96	공	인천광역시				
3	산1	산1	임	6,058.0	6,058.0	27	27	공	인천광역시 연수구				
4	331	331	공	454,440.6	454,440.6	296	296	공	인천광역시				교량부:230㎡ 옹벽부:66㎡
합 계				737,439	737,439	907	907						

편 입 용 지 조 서(2)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	905	905	제	1,425	1,425	136	136	국	국토교통부				
2	906-2	906-2	잡	136	136	94	94	주식회사 토지만	대전 서구 월동로45, 105동 701호 (월평동,진달래아파트)				
3	906-8	906-8	도	315	315	311	311	공	인천광역시				
4	905-1	905-1	제	35	35	32	32	국	국토교통부				
5	906-1	906-1	잡	32	32	32	32	주식회사 토지만	대전 서구 월동로45, 105동 701호 (월평동,진달래아파트)				
6	744-1	744-1	도	26,285	26,285	436	436	공	인천광역시				
7	906	906	도	38,802	38,802	26,819	26,819	국	국토교통부				
합 계				67,030	67,030	27,860	27,860						

편 입 용 지 조 서(3)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	620-5	620-5	도	15,506	15,506	15,422	15,422	국	국토교통부				
2	620-2	620-2	제	2,158	2,158	171	171	국	국토교통부				
3	620-3	620-3	도	3,387	3,387	1	1	국	국토교통부				
4	620-1	620-1	구	14,204	14,204	776	776	국	국토교통부				
5	194-74	194-74	제	1,759	1,759	552	552	국	국토교통부				교량부:265㎡ 옹벽부:287㎡
6	194-75	194-75	잡	49,586	49,586	2	2	이한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6-11 현대 슈퍼빌 에이-2503				
7	194-73	194-73	도	22,816	22,816	22,639	22,639	국	국토교통부				
8	194-226	194-226	도	127	127	25	25	국	국토교통부				
9	194-225	194-225	도	54	54	10	10	국	국토교통부				
10	194-224	194-224	도	177	177	25	25	국	국토교통부				
11	194-145	194-145	도	1,153	1,153	6	6	공	인천광역시				

편 입 용 지 조 서(4)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2	194-144	194-144	도	3,574	3,574	11	11	공	인천광역시				
13	194-197	194-197	잡	19	19	1	1	주식회사선광	인천 중구 항동7가 34-2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84 (을지로2가) (구월동종합 금융센터)	근저당권	
14	194-195	194-270	잡	75	11	10	1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지번 분할에 따른 면적변경
15	194-53	194-269	잡	28,481	460	430	46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지번 분할에 따른 면적변경
16	194-218	194-218	도	12,528	12,528	12,525	12,525	국	국토교통부				
17	194-222	194-222	제	363	363	83	83	국	국토교통부				교량부:45㎡
18	194-51	194-268	잡	65,699	1,095	1,038	1,09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지번 분할에 따른 면적변경
19	194-230	194-230	도	4,397	4,397	234	234	국	국토교통부				
20	194-221	194-221	도	4,153	4,153	4,150	4,150	국	국토교통부				
21	194-220	194-220	도	1,360	1,360	1,360	1,360	국	국토교통부				

편 입 용 지 조 서(5)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22	194-229	194-229	도	8,674	8,674	51	51	국	국토교통부				
23	194-219	194-219	도	17,553	17,553	2,201	2,201	국	국토교통부				
24	194-228	194-228	도	5,468	5,468	20	20	국	국토교통부				
25	공유수면			298	298	298	298						교량부:298㎡
합 계				263,569	170,880	62,041	62,129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60호

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관리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169호, 2019. 7. 22.)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 11. 14.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기술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재)인천테크노파크[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송도동)]

나. 조성목적

○ 21세기를 선도할 첨단 지식기반형 신규산업의 육성

○ 기업기술의 고도화 및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거점으로 구축

○ 송도신도시 및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를 선도하는 연구개발의 중추기능 수행

다. 추진경위

○ 1997. 12. 23 : 시범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자지정(통상산업부)

○ 2000. 03. 30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 2000. 09. 18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2,655,143㎡중 인천테크노파크 부분)개발사업시행자 지정

○ 2001. 11. 26 :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

○ 2001. 12. 14 : 송도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관리공단 설립인가

○ 2008. 03. 10 :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45호)

○ 2010. 09. 24 :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90호)

○ 2013. 06. 17 :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93호)

○ 2014. 12. 08 :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250호)

○ 2019. 05. 07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1호)

○ 2019. 07. 22 : 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169호)

2.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 방향

(1) 목 표

○ 기업-대학-연구소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집적형 테크노파크 조성

(2) 추진방향

○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여 첨단산업의 기지화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구 분	계	산업시설 구 역	지원시설 구 역	공공시설 구 역	녹지구역
면적(㎡)	453,523.4	168,085	190,925.7	65,156	29,356.7
구성비(%)	100.0	37.0	42.1	14.4	6.5

(1) 관리대상 건축물의 범위

○ 건축물의 범위, 내용 등 기본적인 건축사항 및 관리는 관련 법규, 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 산업시설구역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 한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건물 및 시설)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업의 건물 및 시설

· 공동 연구 · 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 공동 연구 · 개발 시설의 제공
· 시험생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 동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및 이에 준하는 R&D형 기업이 연구 · 개발, 시험생산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 및 시설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8조 2항에 의한 공장
  · 공장등록면적은 해당 산업기술단지 안의 전체 건축물 연면적에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 도시형 공장설립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름

○ 지원시설구역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 연구소에 한함),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중 아래 해당하는 건물 및 시설

※ 단,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및 시설에 한함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기관의 건물 및 시설
  · 공동 연구 · 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 신기술의 보호 · 육성 및 창업
  · 공동 연구 · 개발 시설의 제공
  · 시험생산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5조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집적시설
  ·(재)인천테크노파크 등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 바이오 기술을 제품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재)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관련 기관 및 단체 등

○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 주차장, 보행자도로, 도로 등

○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2) 용도별구획 평면도 : 별첨1

다. 업종별 산업시설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업 종 별		계	
		필지수	① 면적(㎡)
산업 시설 구역	메카트로닉스/정밀기계, 신 소 재, 생물, 전자 · 정보	36	168,085

※ 단, 산업기술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에서 조정 가능함

(2) 배치기준

○ (재)인천테크노파크의 기업지원육성기능을 중심으로 유치업종별 집적화가 가능토록 공간배치

○ 연구개발기관, 벤처지원기관 등이 호혜적이고 유연한 기술혁신 환경을 제공토록 관련기업용지를 집단화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 업종

○ 메카트로닉스·정밀기계, 신소재, 생물, 전자·정보업종에 한함.

○ 부동산임대업[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단,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만 가능)

(2)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 상기 입주대상 업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단, 가,나,라,마,바,자, 차목은 제외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자

- 시험평가 위주의 기업으로 시험평가 관련 장비비중이 전체장비의 50%를 초과하고 공해유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기관 및 단체

- 기업기술혁신활동 촉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단, 가,나,차목은 제외함), 고등교육법 제2조,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국공립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기타 정부가 중장기 사업으로 추천하는 기술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3) 입주우선순위, 입주 승인기준

○ 입주우선순위

- 인천지역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 대학교,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기능 및 벤처기업, R&D형 기업 등
- 최근 연구개발 실적이 많은 업체 및 기관

○ 입주승인 기준

구 분	평가점수	② 평가내용
입 주 승 인	90점이상	입주최적격
	80~90미만	입주적격
조건부 입주 승인	70~80미만	조건부입주 (미비사항개선)
입 주 불 허	70점미만	입주부적격

- 입주경합이 있는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 우선순위 결정
- 평가항목 : 재무평가(20), 기술평가(30),
  연구소 운영평가(30), 입주적합성(20)

(4) 분양한도

○ 필지분할계획에 합당한 범위내의 분양면적

○ 다만, 입지의 형편이나 사업계획서상 초과분양이 필요하여 입주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5) 입주절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기술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 입주예정자는 계약 후 건축설계 도면 등을 관리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은 후 건축 착수

마. 사후관리계획

(1) 목 표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권 소재 지방산업단지 입주관리요령, 산업기술단지 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 입주계약서에 의거 산업기술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2) 세부관리계획

[분양용지관리]

○ 산업기술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권소재 지방산업단지 입주관리 요령, 산업기술단지 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 건축을 완료하기 전(나대지 등)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함.

○ 경매, 기타법률에 의하여 용지, 건축물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에 취득신고 및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법정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는 법정 양도기간 내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 하도록 함.

○ 경매, 기타법률에 의하여 용지, 건축물 등을 취득한 자는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 이어야 함.

○ 관리기관은 입주업체가 산업시설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 관리기관은 경매, 기타법률에 의하여 용지, 건축물 등을 취득한 자가 법정기간 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법정 양도기간 내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할 경우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음.

[환경관리]

○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기술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 및 폐기물은 입주기업 및 기관에서 전량 차집하여 동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춘 등록업체에 위탁 처리함.

○ 산업기술단지내 공원과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입주기업 및 기관에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입주기업 및 기관은 주변 환경에 적합한 조경을 하도록 추진

[안전관리]

○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 입주기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 예비군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조로 산업기술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위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기반시설지원]

○ 산업기술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주차관리]

○ 산업기술단지 지원시설용지의 경우 인근 지원시설 부지를 연계한 주차장 설치 및 공동 운영을 할 수 있음.

<별첨 1. 용도별구획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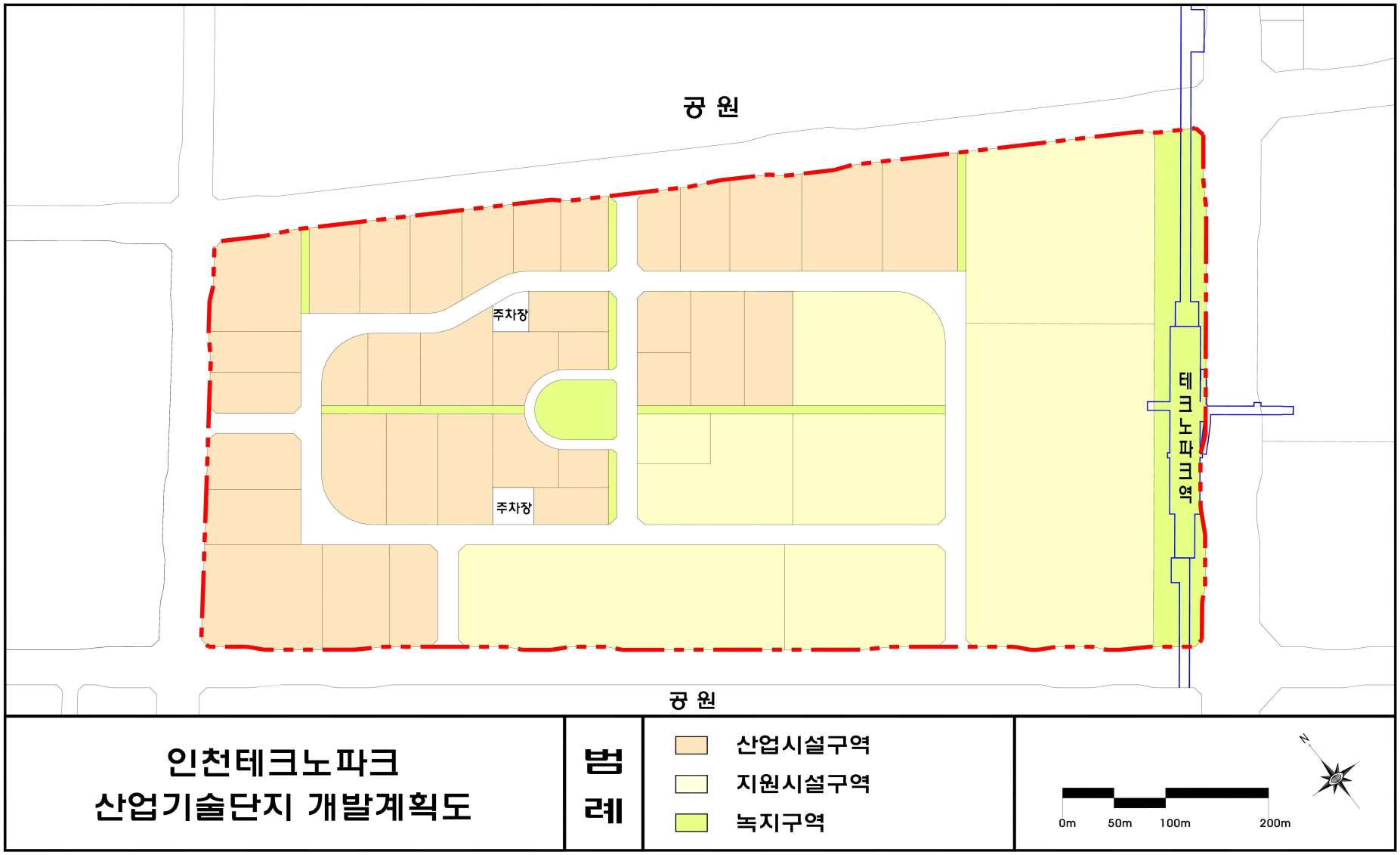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6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도로)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사업의 실시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02), 인천광역시 강화군청(도시개발과, 032-930-3198)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11. 18.

인 천 광 역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 치: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274-1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공공 청사	소방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274-1번지 일원	8,187	증)3	8,190	2018.7.9 (인고제162호)	면적증가 0.03%

○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청사	· 면적: 8,187㎡ → 8,190㎡ (증: 3㎡)	· 도시계획선 분할측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의 오차를 반영

(2) 교통시설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3	1	7	국지 도로	56	군도2호선 (삼성리 8-2)	삼성리 47-3	일반도로	-	2018.7.9 (인고제162호)	

○ 도로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 (국)3-1	도로	· 면적: 452㎡ → 455㎡ (증: 3㎡)	· 도시계획선 분할측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의 오차를 반영

4.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Ⅱ.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27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 명칭: 강화소방서 이전부지 조성공사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면적(변경)

- 당초 : 8,639㎡(공공청사: 8,187㎡, 도로: 452㎡)
- 변경 : 8,645㎡(공공청사: 8,190㎡, 도로: 455㎡)

○ 규모(변경)

- 당초: 건축면적: 2,247.67㎡, 연면적: 6,134.51㎡, 3개동(지하1/지상3층)
- 변경: 건축면적: 2,056.38㎡, 연면적: 4,489.07㎡, 2개동(지하1/지상3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장(강화소방서장)

○ 주소: 남동구 정각로 29(강화군 강화읍 남문로 23번길 1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실시계획 인가일 ~ 2020. 8. 31.
- 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일 ~ 2021.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공공청사(강화소방서)

- 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내용	
1	삼성리	274-1	전	2,686	2,686	양*숙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7*-115				
2	삼성리	275-3	전	544	544	안*영	경기 김포 하성면 석평로 1*2번길13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84(을지로2가)	근저당권	
3	삼성리	277-5	전	117	117	안*영	경기 김포 하성면 석평로 1*2번길13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84(을지로2가)	근저당권	
4	삼성리	275-5	전	2,355	2,355	안*영 외1인	경기 김포 하성면 석평로 1*2번길13				
5	삼성리	276	전	258	258	안*영 외1인	경기 김포 하성면 석평로 1*2번길13				
6	삼성리	277-6	전	1,599	1,538	안*영 외1인	경기 김포 하성면 석평로 1*2번길13				
7	삼성리	277-3	전	661	565	최*렬	경기 김포 대곶면 거물대리 3*3				
8	삼성리	1073	구	2,435	124	국	농림축산식품부				
계				10,655	8,187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내용	
1	삼성리	274-1	전	2,686	2,686	인천광역시					
2	삼성리	275-3	전	544	544	인천광역시					
3	삼성리	275-5	전	2,355	2,355	인천광역시					
4	삼성리	276	전	258	258	인천광역시					
5	삼성리	277-3	전	566	566	인천광역시					
6	삼성리	277-5	전	117	117	인천광역시					
7	삼성리	277-6	전	1,538	1,538	인천광역시					
8	삼성리	1073-4	구	126	126	인천광역시					
계				8,190	8,190						

○ 도로(소3-1호선)

- 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내용	
1	삼성리	277-3	전	661	96	최*렬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3*3				
2	삼성리	1073	구	2,435	151	국	농림축산식품부				
3	삼성리	9-2	전	237	32	김*수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산*0				
4	삼성리	10-6	전	207	20	이*순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1	불은농협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241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5	삼성리	10-7	전	992	92	임*자	경기 파주 교하읍 동패리 2*4				
6	삼성리	277-6	전	1,599	61	안*영 외1인	경기 김포 하성면 석평로 1*2번길13				
계				6,131	452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내용	
1	삼성리	9-7	전	33	33	인천광역시					
2	삼성리	10-10	전	20	20	인천광역시					
3	삼성리	10-11	전	92	92	인천광역시					
4	삼성리	277-7	전	95	95	인천광역시					
5	삼성리	277-8	전	61	61	인천광역시					
6	삼성리	1073-3	구	109	109	인천광역시					
7	삼성리	1073-6	구	45	45	인천광역시					
계				455	455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도로(소3-1호선)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최 초 결정일	공공시설 관리청 귀속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도로	소로	3	1	7	국지 도로	56	군도2호 (삼성리 8-2)	삼성리 47-3	2018. 7. 9.	강화군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63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변경(경미한 변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대곡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3. 사업 위치 : 변경 내역 참고
4. 변경 내역

지구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대곡4지구』	475	867,887	474	867,887	감 1필지 / 합병 면적 동일

5. 토지조서 : 시 및 해당 군·구에 비치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64호

도시관리계획(희망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희망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등)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희망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458-7037),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공원녹지과(450-6973)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11. 18.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도시공원(근린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산 34-16번지 일원
3. 면　　적 : 73,926㎡
4. 도시계획시설(희망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도시계획시설(희망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조서

가. 총괄표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산34-16번지일원)

(시설율 : 14.7%, 녹지율 : 85.3%)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면적 (㎡)		
합 계			73,926	14,634	-	100	100	-	73,926	10,858	2	200	200	56	감) 3,776㎡ 건축 증)100㎡
공원시설	계		14,634	14,634	-	100	100	-	10,858	10,858	2	200	200	56	감) 3,776㎡ 건축 증)100㎡
	기반시설	소 계	6,672	6,672	-	-	-	-	4,282	4,282	-	-	-	-	감) 2,390㎡
		도 로	4,831	4,831	-	-	-	-	3,355	3,355	-	-	-	-	감) 1,476㎡
		광 장	1,841	1,841	-	-	-	-	927	927	-	-	-	-	감) 914㎡
	조경시설		100	100	-	-	-	-	1,745	1,745	-	-	-	-	증) 1,645㎡
	휴양시설		460	460	-	-	-	-	1,101	1,101	-	-	-	35	증) 641㎡ 증) 35기
	유희시설		593	593	-	-	-	-	506	506	-	-	-	6	감) 87㎡ 증) 6기
	운동시설		4,824	4,824	-	-	-	-	1,164	1,164	-	-	-	15	감) 3,660㎡ 증) 15기
	교양시설		-	-		-	-	-	-	-	-	-	-	-	-
	편익시설		1,565	1,565	-	100	100	-	2,060	2,060	2	200	200	-	증) 495㎡ 건축 증)100㎡
	관리시설		420	420	-	-	-	-	-	-	-	-	-	-	감) 420㎡
녹지 및 기타			59,292	-	-	-	-	-	63,068	-	-	-	-	-	증)3,776㎡
·기 정 : 시설율 : 19.80% ·녹지율 : 80.20% ·건폐율 : 0.1%									·변 경 : 시설율 : 14.7% ·녹지율 : 85.3% ·건폐율 : 0.3%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 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 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합 계		-	-	73,926	14,634	-	-	100	100	-	-	-	73,926	10,858	-	-	200	200	56	감)3,776㎡ 건축 증)100㎡
도로 및 광장	소 계	-	-	6,672	6,672	-	-	-	-	-			4,282	4,282						감)2,390㎡
	도 로	-	-	4,831	4,831	-	-	-	-	-	-	-	3,355	3,355	-	-	-	-	-	감)1,476㎡
	광 장	가	-	1,841	1,841	-	-	-	-	-	가	-	927	927	-	-	-	-	-	감)914㎡
조경 시설	소 계	-	-	100	100	-	-	-	-	-	-	-	1,745	1,745	-	-	-	-	-	증)1,645㎡
	조경공간	나	-	100	100	-	-	-	-	-	나	-	1,745	1,745	-	-	-	-	-	증)1,645㎡
	화 단	-	-	-	-	-	-	-	-	-	나-1	-	(51)	(51)	-	-	-	-	-	
	바람숲	-	-	-	-	-	-	-	-	8	나-2	-	(1,694)	(1,694)	-	-	-	-	-	
휴양 시설	소 계	-	-	460	460	-	-	-	-	-	-	-	1,101	1,101	-	-	-	-	35	증)641㎡ 증)35기
	노인정	다	-	460	460	-	-	-	-	-	-	-	-	-	-	-	-	-	-	감)460㎡
	쉼터	-	-	-	-	-	-	-	-	-	다	-	1,101	1,101	-	-	-	-	-	증)1,101㎡
	쉼터1	-	-	-	-	-	-	-	-	-	다-1	-	(139)	(139)	-	-	-	-	-	
	쉼터2	-	-	-	-	-	-	-	-	-	다-2	-	(195)	(195)	-	-	-	-	-	
	쉼터3	-	-	-	-	-	-	-	-	-	다-3	-	(192)	(192)	-	-	-	-	-	
	쉼터4	-	-	-	-	-	-	-	-	-	다-4	-	(314)	(314)	-	-	-	-	-	
	쉼터5	-	-	-	-	-	-	-	-	-	다-5	-	(70)	(70)	-	-	-	-	-	
	쉼터6	-	-	-	-	-	-	-	-	-	다-6	-	(60)	(60)	-	-	-	-	-	
	쉼터7	-	-	-	-	-	-	-	-	-	다-7	-	(42)	(42)	-	-	-	-	-	
	쉼터8	-	-	-	-	-	-	-	-	-	다-8	-	(89)	(89)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 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 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휴양시설	파고라	-	-	-	-	-	-	-	-	-	①	-	-	-	-	-	-	-	8	증) 8기
	평의자	-	-	-	-	-	-	-	-	-	②	-	-	-	-	-	-	-	24	증) 24기
	정 자	-	-	-	-	-	-	-	-	-	③	-	-	-	-	-	-	-	3	증) 3기
유희시설	소 계	-	-	593	593	-	-	-	-	-	-	-	506	506	-	-	-	-	6	감)87㎡ 증)6기
	어린이놀이터	라	-	593	593	-	-	-	-	-	라	-	506	506	-	-	-	-	-	감)87㎡
	어린이놀이터1	라-1	-	(185)	(185)	-	-	-	-	-	라-1	-	(342)	(342)	-	-	-	-	-	-
	어린이놀이터2	라-2	-	(408)	(408)	-	-	-	-	-	라-2	-	(164)	(164)	-	-	-	-	-	-
	조합놀이대	-	-	-	-	-	-	-	-	-	④	-	-	-	-	-	-	-	1	증)1기
	그 네	-	-	-	-	-	-	-	-	-	⑤	-	-	-	-	-	-	-	1	증)1기
	놀이시설물	-	-	-	-	-	-	-	-	-	⑥	-	-	-	-	-	-	-	4	증)4기
운동시설	소 계	-	-	4,824	4,824	-	-	-	-	-	-	-	1,164	1,164	-	-	-	-	15	감)3,660㎡ 증)15기
	운동공간	마	-	4,824	4,824	-	-	-	-	-	마	-	1,164	1,164	-	-	-	-	-	감)3,660㎡
	농 구 장	마-2	-	(1,570)	(1,570)	-	-	-	-	-	-	-	-	-	-	-	-	-	-	
	배드민턴장	마-3	-	(1,120)	(1,120)	-	-	-	-	-	-	-	-	-	-	-	-	-	-	
	게이트볼장	마-4	-	(384)	(384)	-	-	-	-	-	마-1	-	(526)	(526)	-	-	-	-	-	
	족 구 장	-	-	-	-	-	-	-	-	-	마-2	-	(131)	(131)	-	-	-	-	-	
	체력단련장1	마-1	-	(1,750)	(1,750)	-	-	-	-	-	마-3	-	(217)	(217)	-	-	-	-	-	
	체력단련장2	-	-	-	-	-	-	-	-	-	마-4	-	(290)	(290)	-	-	-	-	-	
	체력단련시설	-	-	-	-	-	-	-	-	-	마-5	-	-	-	-	-	-	-	15	증) 15기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 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 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편익 시설	소 계	-	-	1,565	1,565	-	-	100	100	-	-	-	2,060	2,060	-	-	200	200	-	증) 495㎡ 건축 증)100㎡
	화장실	바-2	-	510	510	-	-	100	100	-	바	-	280	280	-	-	200	200	-	감) 230㎡ 건축 증)100㎡
	화방실1	-	-	-	-	-	-	-	-	-	바-1	-	(134)	(134)	-	-	(100)	(100)	-	
	화장실2	-	-	-	-	-	-	-	-	-	바-2	-	(146)	(146)	-	-	(100)	(100)	-	
	주차장	바-1	-	1,055	1,055	-	-	-	-	-	아	-	1,610	1,610	-	-	-	-	-	증) 555㎡
	주차장1	-	-	-	-	-	-	-	-	-	아-1	-	(1,067)	(1,067)	-	-	-	-	-	-
	주차장2	-	-	-	-	-	-	-	-	-	아-2	-	(236)	(236)	-	-	-	-	-	-
	주차장3	-	-	-	-	-	-	-	-	-	아-3	-	(159)	(159)	-	-	-	-	-	-
	주차장4	-	-	-	-	-	-	-	-	-	아-4	-	(148)	(148)	-	-	-	-	-	
	전망대	자	-	-	-	-	-	-	-	-	자	-	170	170	-	-	-	-	-	증)170㎡
관리 시설	소 계	-	-	420	420	-	-	-	-	-	-	-	-	-	-	-	-	-	-	감) 420㎡
	관리사무소	사	-	420	420	-	-	-	-	-	-	-	-	-	-	-	-	-	-	감) 420㎡
녹지 기타	소 계	-	-	59,292	-	-	-	-	-	-	-	-	63,068	-	-	-	-	-	-	감)3,776㎡
	녹 지	-	-	59,292	-	-	-	-	-	-	차	-	63,068	-	-	-	-	-	-	감)3,776㎡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 계			-	1,820	4,831				감)1,476㎡
변경				-	1,212	3,355				
기정	소 로 합 계			-	1,820	4,831				감)3,737㎡
변경				-	270	1,094				
기정	소로	3	1	3.0	485	1,455	연결로	광장	소로3-4	감)1,341㎡
변경		3	1	6.0	19	114	진입로	북측지구계	소로3-2	
기정	소로	3	2	3.0	26	78	연결로	남측지구계	놀이터2	증)422㎡
변경		3	2	4.0~6.0	100	500	진입로	북측지구계	주차장2	
기정	소로	3	3	4.0	215	860	연결로	서측지구계	북측주차장	감)440㎡
변경		3	3	3.0	140	420	진입로	남측지구계	남측지구계	
기정	소로	3	4	3.0	150	450	연결로	소로3-1	북측광장	감)390㎡
변경		3	4	2.0~3.0	24	60	진입로	북측지구계	산책로2	
기정	소로	3	5	3.0	55	165	연결로	조경공간	소로3-4	감)165㎡
폐지		-	-	-	-	-	-	-	-	
기정	소로	3	6	3.0	25	75	연결로	소로3-1	소로3-4	감)75㎡
폐지		-	-	-	-	-	-	-	-	
기정	소로	3	7	2.0	32	64	연결로	소로3-6	조경공간	감)64㎡
폐지		-	-	-	-	-	-	-	-	
기정	소로	3	8	2.0	86	172	연결로	조경공간	산정상	감)172㎡
폐지		-	-	-	-	-	-	-	-	
기정	소로	3	9	2.0	90	180	연결로	소로3-5	소로3-8	감)180㎡
폐지		-	-	-	-	-	-	-	-	
기정	소로	3	10	2.0	109	218	연결로	소로3-4	소로3-11	감)218㎡
폐지		-	-	-	-	-	-	-	-	
기정	소로	3	11	2.0	140	280	연결로	광장	산정상	감)280㎡
폐지		-	-	-	-	-	-	-	-	
기정	소로	3	12	2.0	238	476	연결로	광장	서측지구계	감)476㎡
폐지		-	-	-	-	-	-	-	-	
기정	소로	3	13	2	62	124	연결로	소로3-12	산정상	감)124㎡
폐지		-	-	-	-	-	-	-	-	
기정	소로	3	14	2	80	160	연결로	소로3-12	남측지구계	감)160㎡
폐지		-	-	-	-	-	-	-	-	
기정	소로	3	15	2	7	14	연결로	광장	주차장	감)14㎡
폐지		-	-	-	-	-	-	-	-	
기정	소로	3	16	3	20	60	연결로	광장	놀이터2	감)60㎡
폐지		-	-	-	-	-	-	-	-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소 로 합 계			-	1,394	2,261	-	-	-	중)2,261㎡
신설	산책로	-	1	2.5	42	105	연결로	쉼터5	산책로4	
신설	산책로	-	2	1.5	410	615	연결로	산책로9	산책로6	
신설	산책로	-	3	2.5	72	180	연결로	산책로4	산책로7	
신설	산책로	-	4	1.5	32	48	진입로	북측지구계	쉼터4	
신설	산책로	-	5	2.5	20	50	연결로	산책로8	쉼터4	
신설	산책로	-	6	1.5	16	24	연결로	산책로7	체력단련장2	
신설	산책로	-	7	1.5	78	117	연결로	전망대	산책로7	
신설	산책로	-	8	1.5	154	231	진입로	남측지구계	전망대	
신설	산책로	-	9	1.5	82	123	연결로	체력단련장1	산책로2	
신설	산책로	-	10	1.5	64	96	연결로	쉼터8	산책로2	
신설	산책로	-	11	1.5	14	21	연결로	산책로12	산책로11	
신설	산책로	-	12	1.5	76	114	연결로	쉼터7	산책로12	
신설	산책로	-	13	1.5	242	363	연결로	쉼터7	산책로14	
신설	산책로	-	14	1.5	20	30	연결로	산책로11	산책로12	
신설	산책로	-	15	2.0	72	144	연결로	소로3-4	쉼터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65호

인천도시관리계획(사근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사근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등)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사근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458-7037),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공원녹지과(450-6973)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11. 18.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도시공원(근린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384번지 일원
3. 면　　적 : 15,914.5㎡
4. 도시계획시설(사근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조서

도시계획시설(사근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384번지 일원)

(시설율 : 22.20%, 녹지율 : 77.80%)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5,914.5	3,525.4	1	51.92	51.92	17	15,914.5	3,525.4	1	51.92	51.92	28	
공원시설	계	3,525.4	3,525.4	-	-	-	-	3,525.4	3,525.4	-	-	-	-	
	기반시설 소 계	2,854.7	2,854.7	-	-	-	-	2,792.7	2,792.7	-	-	-	-	시설면적:감)62.0㎡
	기반시설 도 로	1,618.7	1,618.7	-	-	-	-	1,514.7	1,514.7	-	-	-	-	시설면적:감)104.0㎡
	기반시설 광 장	1,236.0	1,236.0	-	-	-	-	1,278.0	1,278.0	-	-	-	-	시설면적:증)42.0㎡
	조경시설	96.0	96.0	-	-	-	3	116.0	116.0	-	-	-	4	시설면적:증)20.0㎡
	휴양시설	-	-	-	-	-	13	-	-	-	-	-	16	
	유희시설	488.0	488.0	-	-	-	1	530.0	530.0	-	-	-	8	시설면적:증)42.0㎡
	운동시설	-	-	-	-	-	-	-	-	-	-	-	-	
	교양시설	-	-	-	-	-	-	-	-	-	-	-	-	
	편익시설	86.7	86.7	1	51.92	51.92	-	86.7	86.7	1	51.92	51.92	-	
	관리시설	-	-	-	-	-	-	-	-	-	-	-	-	
녹지 및 기타		12,389.1	-	-	-	-	-	12,389.1	-	-	-	-	-	
・기 정 : 시설율 : 22.20% ・녹지율 : 77.80% ・건폐율 : 0.33%								・변 경 : 시설율 : 22.20% ・녹지율 : 77.80% ・건폐율 : 0.33%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전 부호	변경전 위치	변경전 부지면적(㎡)	변경전 시설면적(㎡)	변경전 구조	변경전 규모	변경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전 건축물(㎡) 연면적	변경전 공작물(기)	변경후 부호	변경후 위치	변경후 부지면적(㎡)	변경후 시설면적(㎡)	변경후 구조	변경후 규모	변경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후 건축물(㎡) 연면적	변경후 공작물(기)	비고
합 계				15,914.5	3,525.4	-	1층	51.92	51.92	17	합 계		15,914.5	3,525.4	-	-	-	-	28	
도로 및 광장	소 계	-	-	2,854.7	2,854.7	-	-	-	-	-	-	-	2,792.7	2,792.7	-	-	-	-	-	
	도 로	-	384번지일원	1,618.7	1,618.7	-	-	-	-	-	-	384번지일원	1,514.7	1,514.7	-	-	-	-	-	감)104.0㎡
	광 장	가	384번지일원	1,236.0	1,236.0	-	-	-	-	-	가	384번지일원	1,278.0	1,278.0	-	-	-	-	-	증)42.0㎡
	광장1	가-1	384번지일원	(334.0)	(334.0)	-	-	-	-	-	가-1	384번지일원	(334.0)	(334.0)	-	-	-	-	-	
	광장2	가-2	384번지일원	(324.0)	(324.0)	-	-	-	-	-	가-2	384번지일원	(324.0)	(324.0)	-	-	-	-	-	
	광장3	가-3	384번지일원	(578.0)	(578.0)	-	-	-	-	-	가-3	384번지일원	(620.0)	(620.0)	-	-	-	-	-	증)42.0㎡
조경시설	소 계	-	-	96.0	96.0	-	-	-	-	3	-	-	116.0	116.0	-	-			4	증)20.0㎡
	파고라	①	384번지일원	96.0	96.0	-	-	-	-	3	①	384번지일원	116.0	116.0	-	-			4	증)20.0㎡
휴양시설	소 계	-	-	-	-	-	-	-	-	13		384번지일원	-	-	-	-	-	-	16	
	의자	②	384번지일원	-	-	-	-	-	-	13	②	384번지일원	-	-	-	-	-	-	16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유희시설	소 계	-	-	488.0	488.0	-	-	-	-	1	-	-	530.0	530.0	-	-	-	-	8	증)42.0㎡
	어린이놀이터	나	384번지일원	488.0	488.0	-	-	-	-	-	나	384번지일원	530.0	530.0	-	-	-	-	-	증)42.0㎡
	슬라이드	③	384번지일원	-	-	-	-	-	-	1	③	384번지일원	-	-	-	-	-	-	2	
	모험놀이대	-	-	-	-	-	-	-	-	-	④	384번지일원	-	-	-	-	-	-	1	
	그네	-	-	-	-	-	-	-	-	-	⑤	384번지일원	-	-	-	-	-	-	1	
	시소	-	-	-	-	-	-	-	-	-	⑥	384번지일원	-	-	-	-	-	-	1	
	그물오르기	-	-	-	-	-	-	-	-	-	⑦	384번지일원	-	-	-	-	-	-	1	
	터널통과하기	-	-	-	-	-	-	-	-	-	⑧	384번지일원	-	-	-	-	-	-	2	
편익시설	소 계	-	-	86.7	86.7	-	1층	51.92	51.92	-	-	-	86.7	86.7	-	1층	51.92	51.92	-	
	화장실	다	384번지일원	86.7	86.7	-	1층	51.92	51.92	-	다	384번지일원	86.7	86.7	-	1층	51.92	51.92	-	
녹지 및 기타	소 계	-	-	12,389.1	-	-	-	-	-	-	-	-	12,389.1	-	-	-	-	-	-	
	녹지	-	384번지일원	12,389.1	-	-	-	-	-	-	-	384번지일원	12,389.1	-	-	-	-	-	-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 계			-	834.5	1,618.7				감)104.0㎡
변경				-	766.0	1514.7				
기정	소로	3	1	2.0	142.0	286.0	산책로	광1-1	광1-2	
변경		3	1	2.0	142.0	286.0	산책로	광1-1	광-2	
기정	소로	3	2	2.0	4.0	9.0	진입로	공용의청사	소3-1	
변경		3	2	2.0	4.0	9.0	진입로	공용의청사	소3-1	
기정	소로	3	3	2.0	310.0	625.0	산책로	중2-1	중1-32	
변경		3	3	2.0	310.0	625.0	산책로	중2-1	중1-32	
기정	소로	3	4	2.0	8.5	19.0	진입로	소1-2	소3-2	
변경		3	4	2.0	8.5	19.0	진입로	소1-2	소3-2	
기정	소로	3	5	2.0	9.0	19.0	진입로	소1-2	소3-6	
변경		3	5	2.0	9.0	19.0	진입로	소1-2	소3-6	
기정	소로	3	6	2.0	290.0	543.7	산책로	중1-32	광1-3	감)29.0㎡
변경		3	6	2.0	257.5	514.7	산책로	중1-32	광1-3	
기정	소로	3	7	2.0	5.0	11.0	진입로	소1-2	소3-6	
변경		3	7	2.0	5.0	11.0	진입로	소1-2	소3-6	
기정	소로	3	8	1.0	30.0	31.0	산책로	소3-6	소3-9	
변경		3	8	1.0	30.0	31.0	산책로	소3-6	소3-9	
기정	소로	3	9	2.0	36.0	75.0	산책로	광1-3	소1-6	감)75.0㎡
변경										

5. 지형도면 : 시보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907호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 대곡동
다. 사업규모 : L=3.22km B=29.0m, (4차로+자전거도로·보도)
라. 시 행 자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2.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 2019.11.18. ~ 2019.12.01.
나. 공개방법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 1 참조)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붙임2 서식에 따라 서면제출
다.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도로과(FAX 032-440-8672)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도로과(☎032-440-37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주민의견 제출서

사 업 명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장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 대곡동	
사 업 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019. 11.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목 차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목적

1.2 계획의 개요

제2장 대상지역 설정

2.1 개발계획의 대상지역

2.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3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4 대상지역 입지관련 중점 검토

제3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3.1 평가항목 설정

3.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3.3 평가항목별 환경질 조사 계획

제4장 대안의 설정

4.1 대안의 종류 설정

4.2 대안별 비교·분석

4.3 대안별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분석

제5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7.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7.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 수렴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6.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6.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6.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목적

1.2 계획의 개요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목적

가.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본 계획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대곡동간 도로 개설공사로서 연장 3.22km의 도시지역 주간선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임

◦ 본 계획을 시행함으로서 인천광역시 서북부 도시권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각종 개발계획(검단신도시, 도시개발사업 등) 활성화 및 교통수요를 대비하고, 또한 동서축 도로망 확충(국지도 84호선과 98호선 연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계획을 시행하여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함과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계획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각종 개발계획(검단신도시, 도시개발사업 등) 활성화 및 이로 인한 교통수요를 대비하고, 동서축 도로망 확충(국지도 84호선과 98호선 연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계획을 시행하여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함과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공사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별표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1-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마. 도로의 건설	2)「도로법」제2조제1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별표3 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별표2], 환경부

◦ *본 계획은 동일 영향권역 같은 종류의 사업이 포함되어 각 사업의 규모의 합이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에 이른 경우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예정임*

◦ 동일 영향권역 같은 종류의 사업 :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

※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됨*

<표 1.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5. 도로의 건설사업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 비고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해당여부	◦ 본 계획(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 L=3.22km ◦ 동일 영향권역 같은 종류의 사업(국지도98호선) L=2.33km ◦ 3.22km + 2.33km = 5.55km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별표3], 환경부

라. 사업의 추진경위 및 계획

◦ 1998. 6. : 도시계획시설(도로) 최초 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

◦ 1998. 6. : 도시계획시설(도로) 최초 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

◦ 2013.~2015. :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건의(국토부)

◦ 국지도98호선으로 노선변경 및 등급 조정 건의(국지도 5개년계획 반영 등)

◦ 2016. 2. :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광역도로 반영 건의(국토부)

◦ 2016. 4. : 국지도98호선 노선 변경 미반영(기재부)

◦ 2017. 1. :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확정 ⇒ 광역도로 미 선정

◦ 2017. 9. : 타당성 평가 용역 착수

◦ 2018. 8. : 타당성 평가 용역 준공

◦ 2019. 8.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19.10.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목적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1항,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후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토지이용구상안
- 대안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 설명회 및 공청회의 생략여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원활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함

-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음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특정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바.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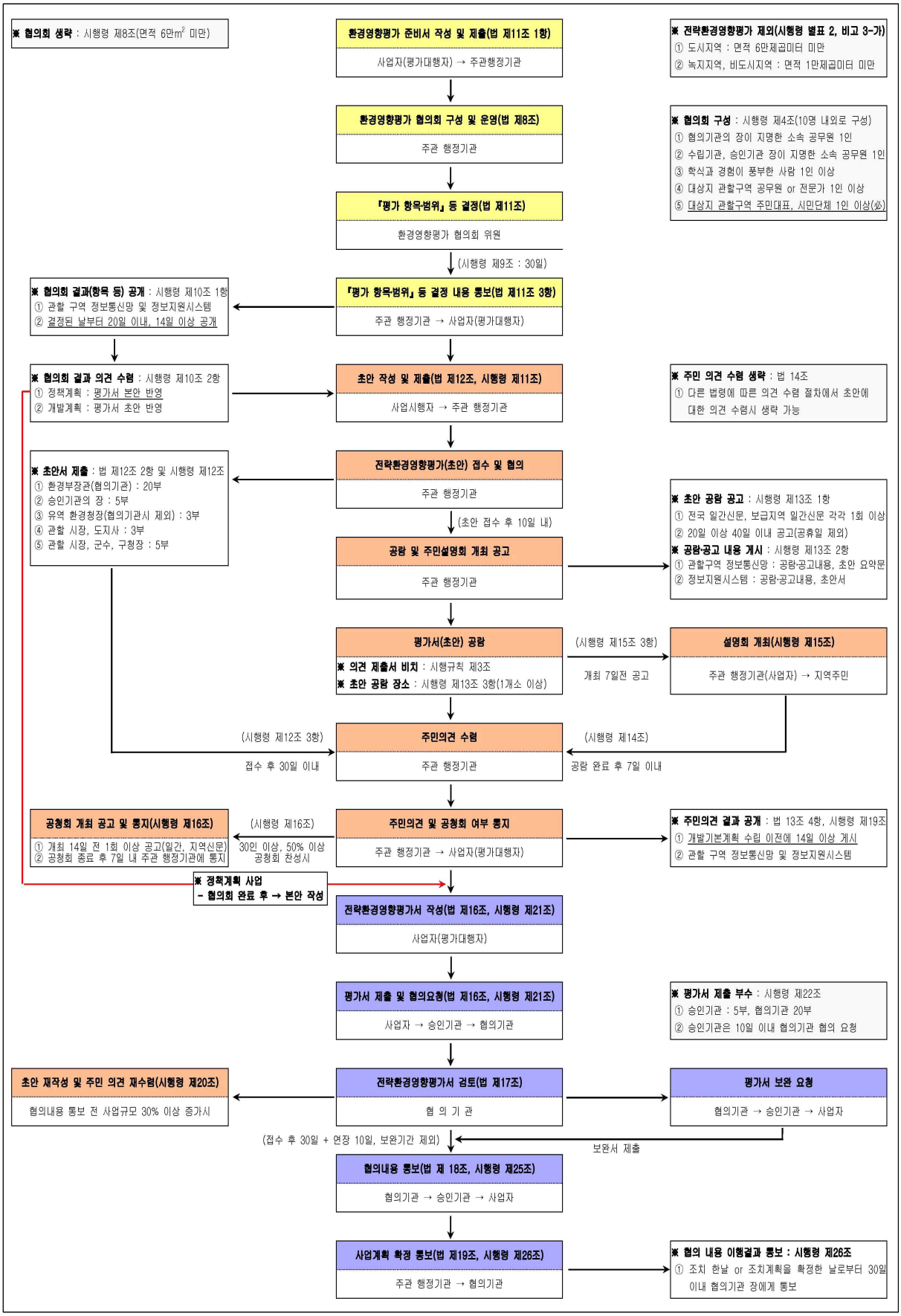

1.2 계획의 개요

가. 사업명 :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사업

나. 시간적 범위 : 2018~2023년

다.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대곡동 일원

라.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마. 승인기관 : 인천광역시

바. 주요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개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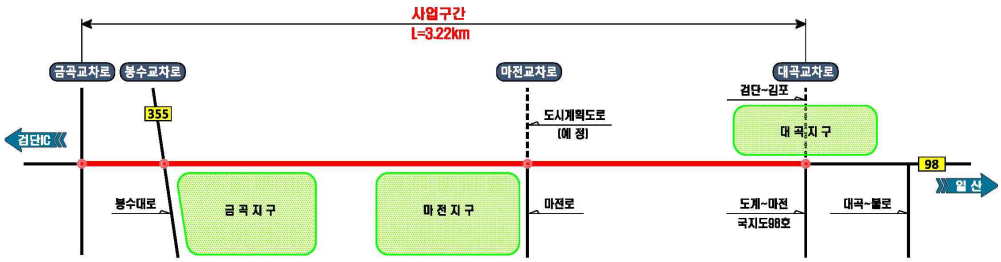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 서구 대곡동 일원
사업규모	- 연 장 : 3.22km - 구조물 : 병설분리 터널 1개소/260m - 교차로 : 평면교차로 5개소
설계속도	- 70km/h
교통량	- 24,077 대/일 (2043년 기준, 금곡교차로~봉수교차로 구간) - 23,502 대/일 (2043년 기준, 봉수교차로~마전1교차로 구간) - 22,159 대/일 (2043년 기준, 마전1교차로~마전2교차로 구간) - 19,832 대/일 (2043년 기준, 마전2교차로~대곡교차로 구간)
추정사업비	- 1,006억원
표준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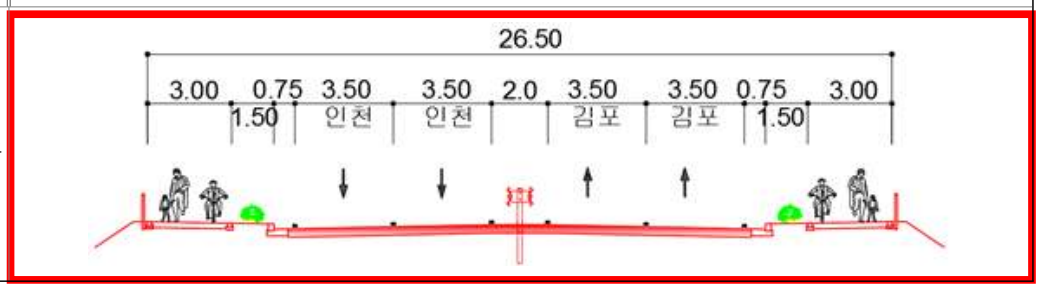

사. 동일 영향권역 같은 종류 사업(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의 주요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개요도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서구 불로동 일원
사업규모	- 연 장 : 2.33km - 교 량 : 2개소 - 평면교차로 : 2개소
설계속도	- 80km/h
교통량	- 공용개시년도(2023년) : 11,618 대/일 - 목표연도 (2042년) : 49,152 대/일
추정사업비	- 939억원

- 표준횡단면도

광로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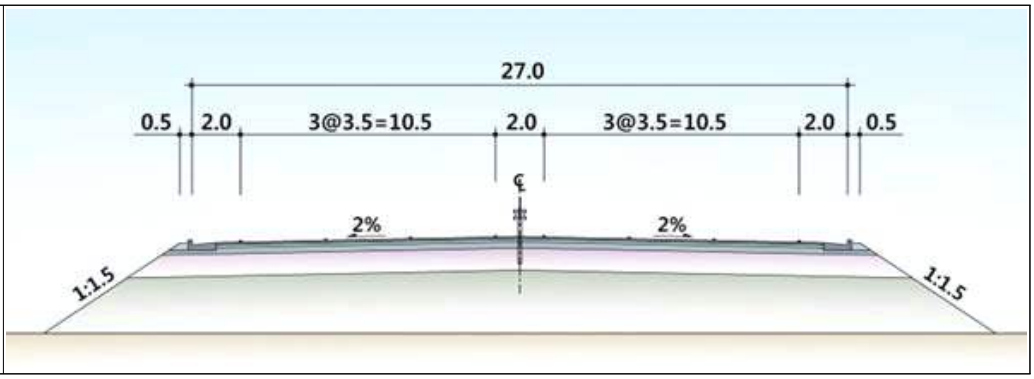
광로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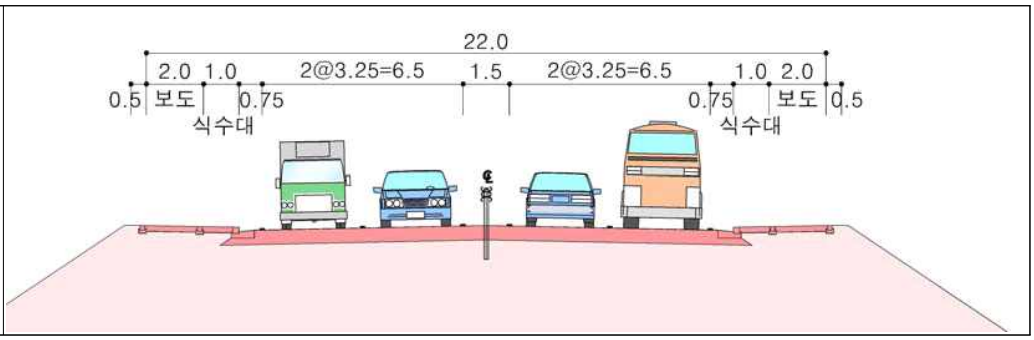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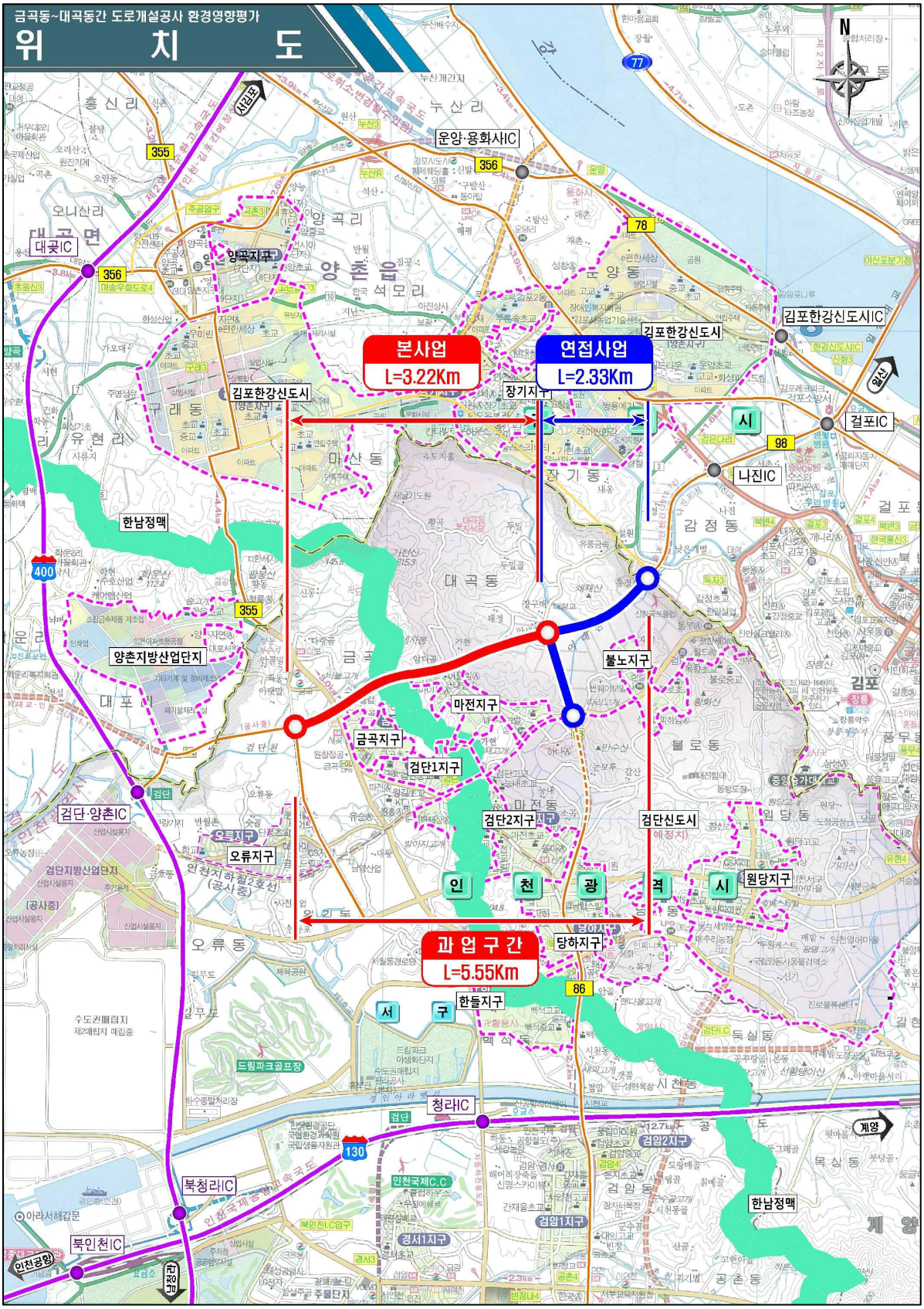

(그림 1-1) 계획노선 위치도

제2장 대상지역 설정

2.1 개발계획의 대상지역

2.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3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4 대상지역 입지관련 중점 검토

제2장 대상지역 설정

2.1 개발계획의 대상지역

가. 대상지역의 범위

1) 과업구간

◦ 시점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 종점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연장 : 3.22km

2) 동일 영향권역 같은 종류의 사업(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 시점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종점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 연장 : 2.33km

나. 대상지역 선정사유

◦ 본 계획은 인천광역시 금곡동~대곡동간 도로 개설공사로서 각종 개발사업(검단신도시, 도시개발사업 등) 활성화 및 이로 인한 교통수요를 대비하고, 동서축 도로망 확충(국지도 84호선과 98호선 연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함과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른 환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예측·분석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함

2.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본 계획의 수립, 비교노선의 입지로 인해 직·간접적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범위를 고려하여 영향권역을 설정함(「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2008.12, 환경부」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1, 환경부」참고)

<표 2.2-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및 설정사유

구 분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설정 사유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광역 조사	○계획노선 및 주변 1.0㎞ 이상	○식생 및 동·식물 서식환경변화 예상지역
			현지 조사	○계획노선 및 주변 500m 이상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절·성토에 따른 지형 변화 예상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위락·경관)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절·성토공사 및 구조물 입지로 경관영향지역
	수환경의 보전	수질 (수리·수문)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공사시(토공사, 구조물공사) 토사 유출 및 발생 오·폐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 ○터널굴착 공사시 지하수위 영향예상지역 ○운영시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 변화예상 지역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기 상)	○계획노선 및 주변 지역		○공사시, 운영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받는 지역
		온실가스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및 운영시 도로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영향예상지역
		토 양	○계획노선		○공사시 토양오염유발물질(폐유 등)의 영향을 받는 지역
		소음·진동	○계획노선 및 주변 0.5㎞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 운영시 차량운행에 따른 도로소음 영향 예상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발생 폐기물, 오·폐수의 적정처리 가능여부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지역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계획노선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 편입 및 토지이용 변화 예상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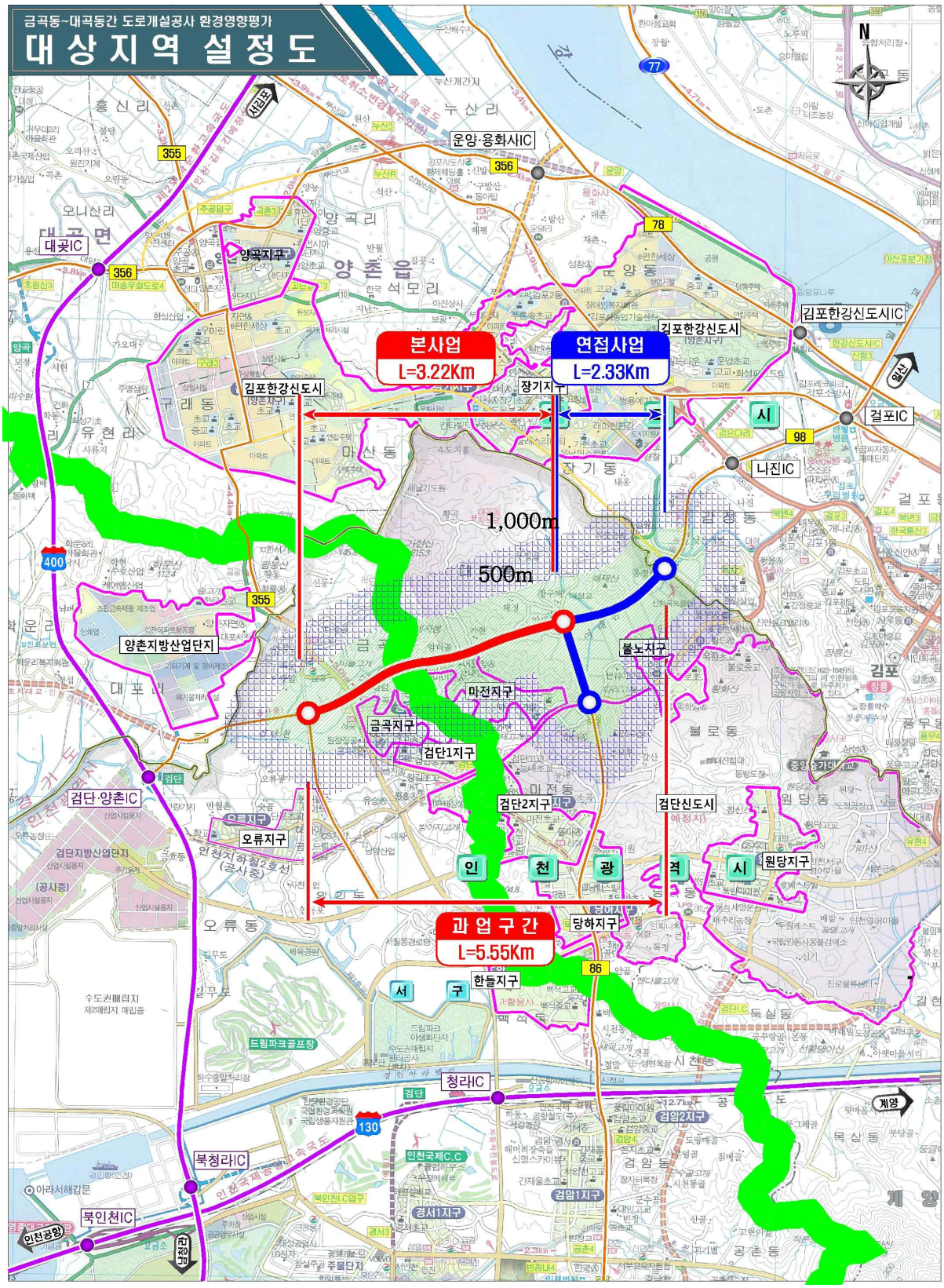

(그림 2.2-1) 대상지역 설정도(전략환경영향평가)

2.3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본 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계획의 특성 및 주변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함

<표 2.3-1>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및 설정사유

평 가 항 목		평 가 범 위	평 가 방 법	
			현 황 조 사	예 측 방 법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자연환경자산	계획노선 및 주변 1km 이상	◦조사내용 - 생태자연 현황(식생 현황, 생태자연도 분포, 보전하여야할 동·식물 및 자연환경자산 등) ◦조사범위 - 계획노선 주변 1km 이상 ◦조사방법 - 광역조사, 지존자료 조사 -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 - 법적보호종이 발견될 경우 정밀조사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서식환경을 조사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
대기 환경	기 상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조사내용 - 기상현황 분석 ◦조사범위 및 방법 - 인접 기상대인 인천기상대의 최근 10년간 기상자료 분석	◦대기질 영향예측 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계획노선 및 주변 500m이상	◦조사내용 - 계획노선 주변지역의 대기질 현황 파악 - 대기환경기준으로 설정된 항목에 대한 현황농도 실측 - 영향예상지역 정밀조사 ◦조사범위 - 계획노선 주변 주거지역 등 ◦조사방법 : 현지조사	◦계획노선 주변지역의 대기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대기질 확산모델링(AERMOD, CALINE3 등)을 수행하여 예측 - 공사시 토사이동 및 장비 가동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물질 영향예측 - 통행차량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물질 영향예측
	온실가스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조사내용 - 온실가스 발생 현황 파악 - 기존 문헌자료에 의한 원단위 분석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조사방법 :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공사시 및 운영시 연료사용 및 산림훼손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 등 예측

<표 2.3-1> 계속

평 가 항 목		평 가 범 위	평 가 방 법	
			현 황 조 사	예 측 방 법
수 환경	수질 및 수리·수문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조사내용 - 하천, 지하수에 대한 환경기준 항목의 수질 현황농도 ◦조사범위 - 계획노선 주변 수계 - 농경지, 수로, 금곡천 등 ◦조사방법 - 현지조사	◦공사중 강우시 인근 수계 및 농경지에 미치는 토사유출 영향 예측 ◦터널 공사시 인근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 ◦운영시 초기우수에 의한 비점오염원 영향 예측
토지 환경	토지이용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조사내용 - 용도별 및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인천시 서구)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이용상의 변화 파악 ◦지역간 단절구간 발생시 교차로, 암거 등 대책 수립
	토 양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조사내용 - 계획노선 주변지역 임야 및 농경지 등의 토양현황 실측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존재여부 파악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사업시행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 예측 - 지장물 철거시 - 공사장비 가동시 폐유 발생 - 발파시 화약 사용 등
	지형·지질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조사내용 - 지형형상, 지질상황 등 -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절·성토로 인한 지형의 변화정도 평가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의 훼손 여부 ◦토공량 예측, 비옥토 발생 등 검토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조사내용 -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발생 및 처리현황 -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조사방법 : 기존자료 조사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발생량 예측 - 지장물 철거 및 구조물 공사에 의한 건설폐기물 발생 - 훼손수목에 의한 임목폐기물 발생 - 장비투입시 폐유 등 지정폐기물 발생

<표 2.3-1> 계속

평 가 항 목		평 가 범 위	평 가 방 법	
			현 황 조 사	예 측 방 법
생활 환경	소음·진동	계획노선 주변 500m	◦조사내용 - 계획노선 주변지역의 소음도 및 진동레벨 현황 실측 - 정온시설 정밀조사 ◦조사범위 - 계획노선 주변 주거지역 등의 정온시설 ◦조사방법 : 현지조사	◦사업시행시 발생되는 소음·진동이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 예측 - 소음·진동 예측식 이용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 및 운영시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영향 예측
	위락 / 경관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조사내용 - 주요 위락, 경관요소 분포현황 등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자연지형의 훼손정도, 조망의 변화 예측 ◦절·성토 및 구조물 설치로 인한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변화 예측
사회 경제 환경	인구 / 주거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조사내용 - 계획노선 주변 인구 및 주거 현황조사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조사방법 : 기존자료 조사	◦계획노선 주변 인구 및 주거현황 및 분석 ◦지역간 단절 및 용지 편입 등으로 인한 영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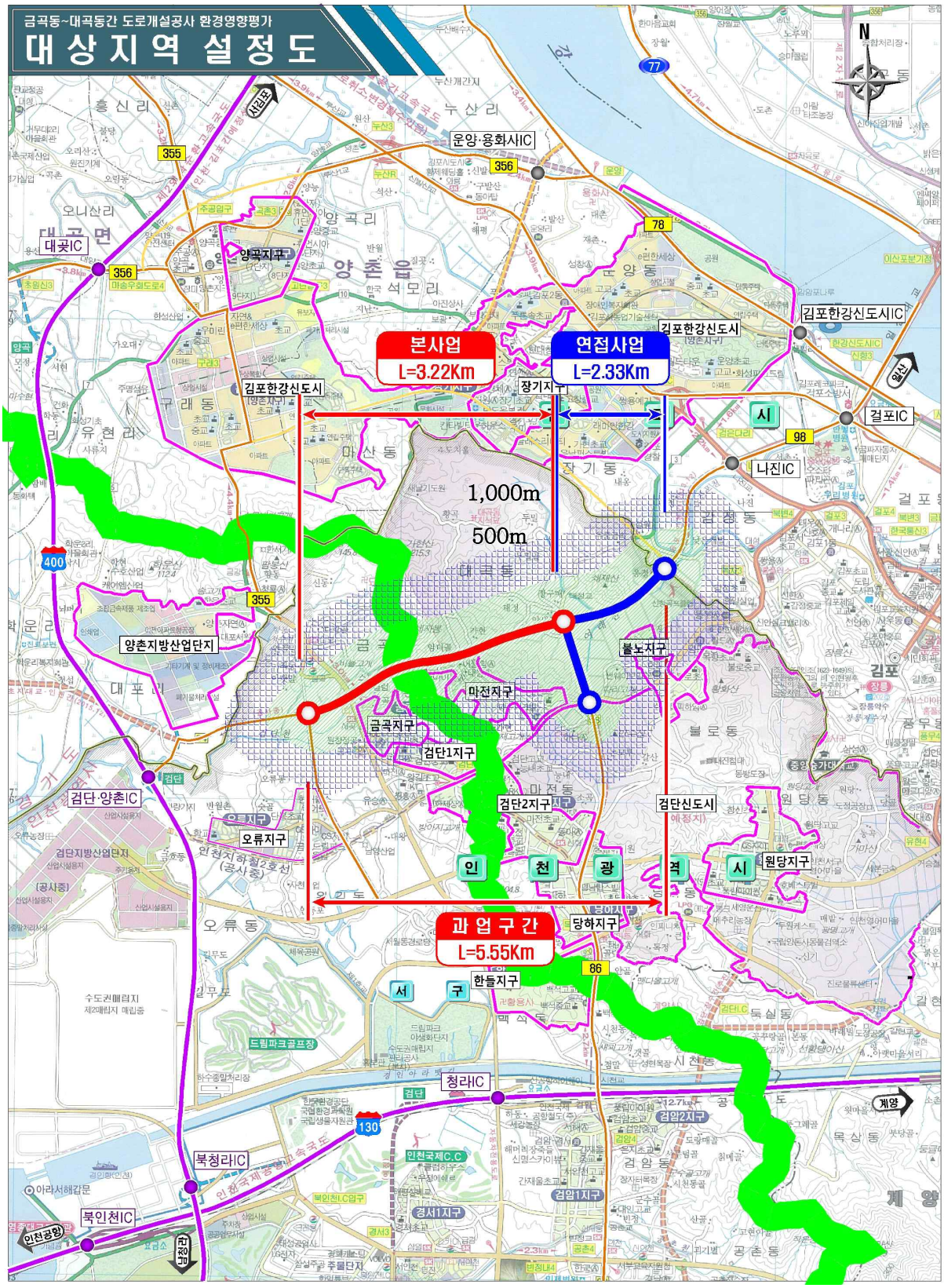

(그림 2.3-1) 대상지역 설정도(전략환경영향평가)

2.4 대상지역 입지관련 중점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2014. 1, 환경부)」내용 중 중점검토 대상지역에 대한 입지를 검토하였음

<표 2.4-1> 대상지역 입지관련 중점 검토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1) 상위계획(법), 환경보전관련법, 개별법령,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전시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개발사업 시행으로 해당지역의 환경보전시책에 저촉되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기준 유지달성이 곤란한 지역	▸해당사항 없음
◦상위계획(법), 환경보전관련법, 개별법령,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규제 내용에 해당되거나 저촉되는 지역	▸해당사항 없음
◦환경보전관련 용도로 지정된 지역(예 : 생태·경관보전지역, 수변구역, 지하수보전구역 등)으로 개발사업 시행으로 해당 지역의 지정목적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해당사항 없음
2) 개발사업 시행으로 자연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자연생태계가 매우 우수한 지역 - 생태자연도 Ⅰ등급 지역 - 생태자연도 Ⅱ등급이면서 생태·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도시지역은 7등급 이상 지역), 녹지자연도 7등급이상(도시지역은 6등급이상)으로서 급경사지(경사도 20°~30°) 이상의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대상노선은 대부분 생태자연도 3 등급 지역에 해당 (일부 2등급 지역 포함)
◦자연환경보전관련 용도지역의 주변 지역 -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예정지 포함)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예정지 포함)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 -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의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해당사항 없음
◦우수한 자연생태계 등의 보존을 위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의 지역 중에서 협의기관의 장이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지점과 그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주변 지역 - 생태계변화 관찰지역, 겨울철 철새 동시센서스 조사지역, 전국내륙습지 조사지역, 전국자연동굴 생태계 조사지역, 무인도서 조사지역, 전국해안사구 생태계 조사지역, 전국 하구역 생태계 조사지역, 전국자연경관 조사지역 등 - 해안지역의 자연경관 특성 및 보전방안 연구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	▸해당사항 없음

<표 2.4-1> 계속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자연경관 등이 우수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기암괴석, 노거수, 폭포, 용소, 산간습지, 석호, 사구, 해빈 등이 분포하고 있어 자연경관·역사문화·고유 향토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곳	▸해당사항 없음
◦야생생물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서식지	▸해당사항 없음
◦산지내 개발로 산림축 및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 과도하게 단절시키는 지역 - 면적사업(택지, 관광지, 산업단지 등)은 산림지역의 5~6부 능선(도시지역 5부 능선, 산지·구릉지 6부 능선) 이상 지역	▸일부 임야지역을 통과하나, 통과구간은 터널(생태동로)로 계획하여 산림축 단절을 최소화 함
3) 상수원 및 하천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이용시 발생 하·수, 오염원의 빗물 유입 등으로 인해 방류 하천의 수질오염을 가중시켜 수질환경기준 달성에 지장이 있는 지역 - 다만, 고도처리, 인공습지, 비점오염원 관리 등의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수질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	▸운영시 비점오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 이내인 지역. 다만,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 이상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 이내인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인 지역과 하류로 유하거리 1㎞ 이내인 지역	▸해당사항 없음 +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 이내인 지역	▸해당사항 없음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용 저수지의 상류지역으로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공장 또는 산업단지의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 이내인 지역(저수지로 직접 집수되는 구역을 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 이내인 지역(저수지로 직접 집수되는 구역을 포함) - 공장 또는 산업단지 이외의 시설인 경우 : 유효저수량이 30만㎥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집수구역	▸대상노선 시점부 북측으로 향동저수지가 2km이내에 위치하나 저수지로 직접 집수되지 않음

<표 2.4-1> 계속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100m이내인 집수구역 - 다만,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은 제외하고 지방하천은 하천법 시행령 별표1의 지방1급 하천으로 한정	▸해당사항 없음
4) 환경오염이 심화되었거나 심화가 예상되는 지역 또는 개별공장의 난립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기존의 산업단지, 개별 공장의 밀집 입지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으로서 추가적인 입지로 증가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환경기준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환경오염의 심화가 우려되는 지역	▸해당사항 없음
◦계획된 산업단지 등이 아닌 일정한 지역에 개별공장들이 산발적으로 밀집되어 입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인접 지역에 대한 추가 개발 등으로 자연생태계의 훼손, 난개발 등이 예상되어 계획개발 유도 및 입지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해당사항 없음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공장, 창고, 소규모 아파트 등 개별 시설물 입지로 인하여 주변 환경과의 심각한 부조화가 우려되고 향후 연접 개발 등 추가적인 개발 수요의 발생 등으로 자연생태계의 훼손, 난개발 등이 예상되는 지역	▸해당사항 없음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도로구역경계선)로부터 50m이내인 지역 - 다만, 도시계획구역내인 경우에는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20~30m이내인 지역	▸본 계획은 도시계획도로임
5) 기타 개발사업 시행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등 재해의 발생 우려가 높아 입지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해당사항 없음

제3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3.1 평가항목 설정

3.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3.3 평가항목별 환경질 조사 계획

제3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3.1 평가항목 설정

◦ 환경영향 검토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환경영향 인자와 환경영향 항목을 분석하고,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항목을 사업의 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하였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15호)에 제시된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참고 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주요평가 항목은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으로 구분하였음.

<표 3.1-1> 평가항목의 설정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	선정여부
1) 계획의 적정성			-	-
가) 정책계획의 적정성			• 본 계획은 개발기본계획에 해당됨.	×
나)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 계획 수립 전·후에 따른 비교를 통하여 적정성검토	○
2) 입지의 타당성			-	-
가)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식생 및 동물상의 서식형태 변화 영향 검토	○
		자연환경자산	• 계획 수립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의 영향 및 변화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 절·성토 등 토공작업에 의한 지형변화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경관)		• 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변화 예상	○
	수환경의 보전	수 질	• 공사시 토사유출, 오수로 인한 수계 영향 • 운영시 비점오염원 발생에 따른 영향	○
		수리·수문	• 계획노선 내 지방하천에 대한 영향	○
		해양환경	• 계획노선 주변 해양은 위치하지 않음.	×

〈표 계속〉 평가항목의 설정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	선정여부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환경기준 부합성	대 기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공사장비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 운영시 연료사용 및 차량 통행으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
		악 취	• 본 사업은 도로개설 사업으로 악취와는 무관한 사업임.	×
		토 양	• 계획노선 주변 토양오염도 현황조사 및 개연성 확인 • 협의회 의견에 따른 토양항목 추가	○
		소음·진동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발생 • 운영시 차량으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공사시 및 운영시설 사업계획수립으로 환경기초시설과 연관성 검토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폐유, 공사인부의 폐기물, 분뇨 등 발생 • 공사시 지장물로 인한 건설폐기물 발생 • 편입용지로 인한 임목폐기물 발생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
		온실가스	• 공사차량, 운영시 연료사용 및 통행차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예상	○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토지이용		• 편입용지 및 지장물 발생	○
	위생·공중보건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악영향 미미	×
	전파장해		• 사업시행으로 인한 전파장해 유발요인 없음.	×
	일조장해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조장해 영향 미미	×
	인구·주거		• 계획노선 조성에 따른 인구·주거 변화 예상	×
	산 업		• 본 계획수립시 산업시설 입지계획 없음.	×

3.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환경 항목별로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였으며, 사업계획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표 3.2-1>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사 유
1) 계획의 적정성			-	-	-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 계획노선이 속한 지역	• 본 계획 및 상위계획 자료 분석 • 계획비교 대안 설정·분석	• 계획 수립 전·후에 따른 비교를 통하여 적정성검토
2) 입지의 타당성			-	-	-
가)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 ·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3km 이내	• 문헌자료,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 각 분류군별 현지조사 후 영향예측	•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의 변화
		자연 환경 자산	•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1km 이내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 환경자산의 영향 및 변화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설계보고서 활용	• 학술적,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 영향여부 검토 • 지형변화, 토사유출 및 비옥토 유실 등 영향발생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경관)		•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3km 이내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변화 예상
	수 환경의 보전	수질	• 계획노선 및 인근 수계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문헌자료에 제시되어있는 원단위 적용 및 산정식 활용	• 토사유출 및 오수발생으로 인한 수질변화 예상 • 운영시 생활오수 발생 예상
		수리·수문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계획노선 조성에 따른 수리·수문 변화 예상
나) 생활 환경의 안전성	환경 기준 부합성	대기	•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2km 이내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 모델링 활용	•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 오염물질 발생

<표 계속>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사 유
나) 생활 환경의 안전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토양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 공사장비 폐유발생 등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 • 의견에 따른 항목 추가
		소음·진동	•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1km 이내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거리감쇠식 등 활용	• 공사차량 및 운영시 차량에 의한 소음·진동 발생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문헌자료 • 발생원단위 적용	• 공사시 각종 폐기물 발생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온실가스	• 계획노선 내	• 문헌자료 • 설계보고서 활용	•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배출
다) 사화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토지이용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설계보고서 활용	• 편입용지 및 지장물 발생

3.3 평가항목별 환경질 조사 계획

◦ 평가항목별 환경질 조사지점 및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이 선정토록 함.

<표 3.3-1> 환경질 조사지점 및 조사항목

구 분	지점수	항 목	비 고
수 질	4지점	• 수소이온농도(pH),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용존산소(DO), 총질소(T-N), 총인(T-P), 총탄소(TOC), 부유물질(SS), 수은(Hg), 카드뮴(Cd), 6가크롬(Cr+6), 유기인 (14개 항목)	계절별 측정
지하수질	3지점	• 수소이온농도(pH), 과망간산칼륨(KMnO4), 질산성질소(NO3-N), 암모니아성질소(NH3-N),황산이온(SO4-), 총경도, 염소이온(Cl-), 수은(Hg), 카드뮴(Cd), 납(Pb), 시안(CN), 6가크롬(Cr+6), 철(Fe), 불소(F), 구리(Cu), 대장균군수, 일반세균 (17개 항목)	계절별 측정
대기질	4지점	• PM-10, PM-2.5, SO_2, NO_2, CO, O_3, Pb, 벤젠 (8개 항목)	계절별 측정
토양	3지점	• pH, Cd,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인화합물, PCB, CN,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벤조(a)피렌(22개 항목)	계절별 측정
소음·진동	4지점	• 소음, 진동 (2개 항목) • 소음 : 주간 4회, 야간 2회 • 진동 : 주간 2회, 야간 1회	계절별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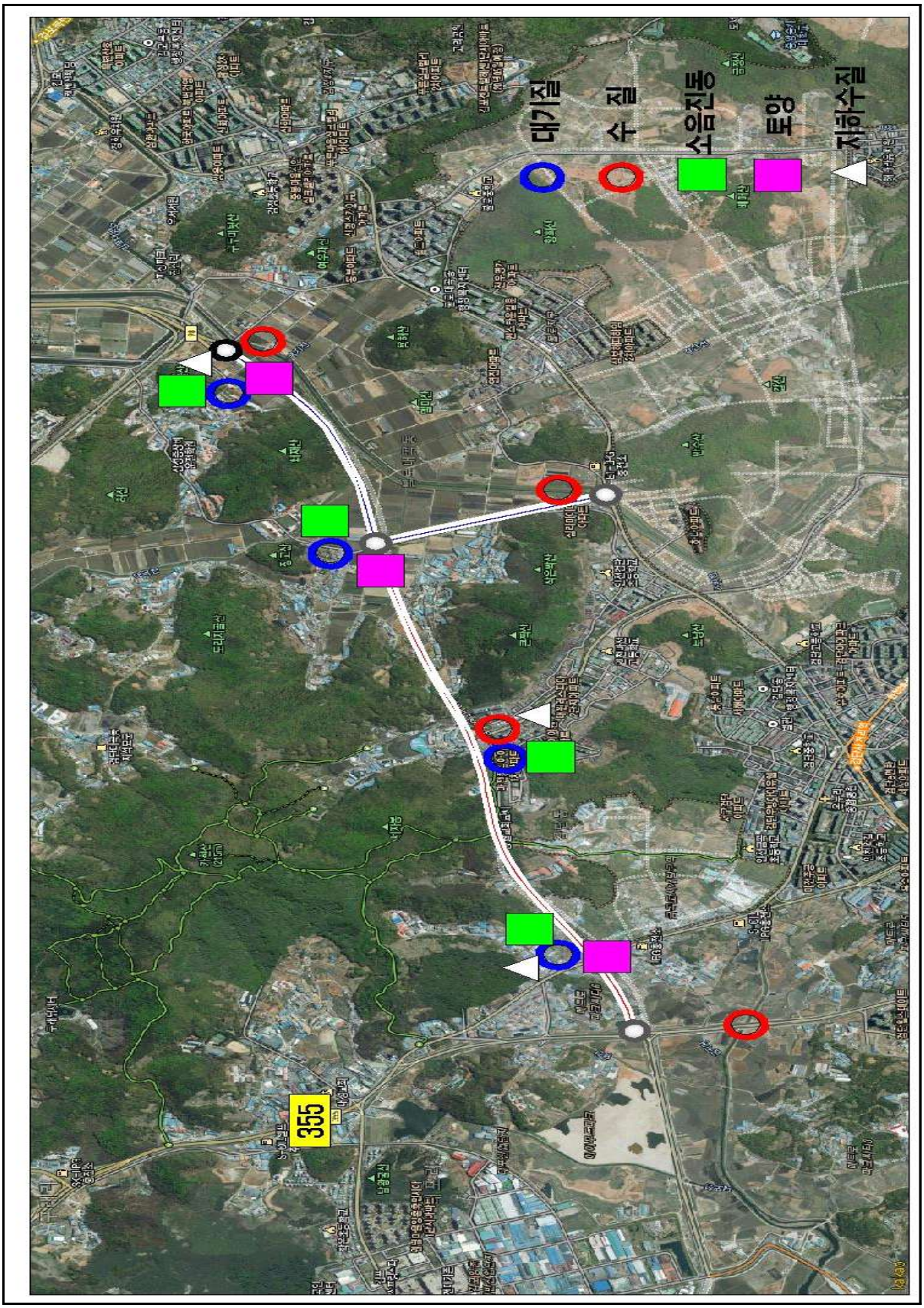

(그림 3.3-1) 환경질 조사지점도

제4장 대안의 설정

4.1 대안의 종류 설정

4.2 대안별 비교·분석

4.3 대안별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분석

제4장 대안의 설정

4.1 대안의 종류 설정

가. 대안의 종류 및 설정방법

◦ “대안”이라 함은 예비 대안을 토대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하며, 대안의 종류 및 설정방법은 <표 5.1-1> 같이 6개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4.1-1> 대안의 종류 및 설정방법

대안종류	대안 설정방법
계획비교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입 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나. 대안의 종류 설정

◦ 본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대안의 설정은 상기 대안의 설정방법 등을 참고하여 “계획비교” 및 “입지조정”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 계획비교 측면에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을 경우(Action)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음
- 입지조정 측면에서 4개 대안(비교1안, 비교2안, 비교3안, 비교4안)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음

◦ 대안의 검토 시 *동일 영향권역 같은 종류의 사업(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은 현재 노선 선정이 완료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협의 완료되어* 본 계획인 *금곡동~대곡동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만 대안을 설정하여 비교·분석함*

4.2 대안별 비교·분석

가. 계획비교에 따른 비교·분석

◦ 계획비교 측면에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을 경우(Action)로 구분하여 대안별로 비교·분석함

1)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

◦ 현재 상태의 자연환경 유지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상의 여건 변화는 없으나, 교통량 증가로 지역 내 주요도로 기능 마비 및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됨

2)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을 경우(Action)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한 일부지역에서의 자연환경 변화 및 생활환경 여건 변화 등이 예상되나, 상위 관련계획의 실행, 동서축 도로망 확충(국지도 84호선과 98호선 연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하고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함과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사업 시행에 따른 적절한 저감대책을 강구할 경우 환경여건 변화 및 자연환경훼손 등의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4.2-1> 계획비교에 따른 비교·분석

구 분	검 토 결 과	
	제1안 (No Action)	제2안 (Action)
장·단점	◦ 자연환경 유지로 자연환경 및 일부 생활환경상 여건 변화 없음 ◦ 주요도로 기능 마비 ◦ 만성적인 교통체증 발생	◦ 개발행위로 인한 자연환경 변화 및 생활 여건 변화 ◦ 상위 관련 계획 실행 ◦ 이용객에 대한 양질의 Service 제공 ◦ 만성정체 해소 ◦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나. 입지에 따른 비교·분석

◦ 본 대상지역 및 입지를 일부 조정한 총 4개 대안(비교1안, 비교2안, 비교3안, 비교4안)에 대하여 대안별로 비교·분석함

◦ 비교노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시관리계획과 부합되며, 구조물 설치 및 용지편입 최소화, 산림구간 터널 최소화, 민원 발생 해소 등 비교1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표 4.2-2> 입지에 따른 대안별 비교·분석 참조)

<표 4.2-2> 입지에 따른 대안별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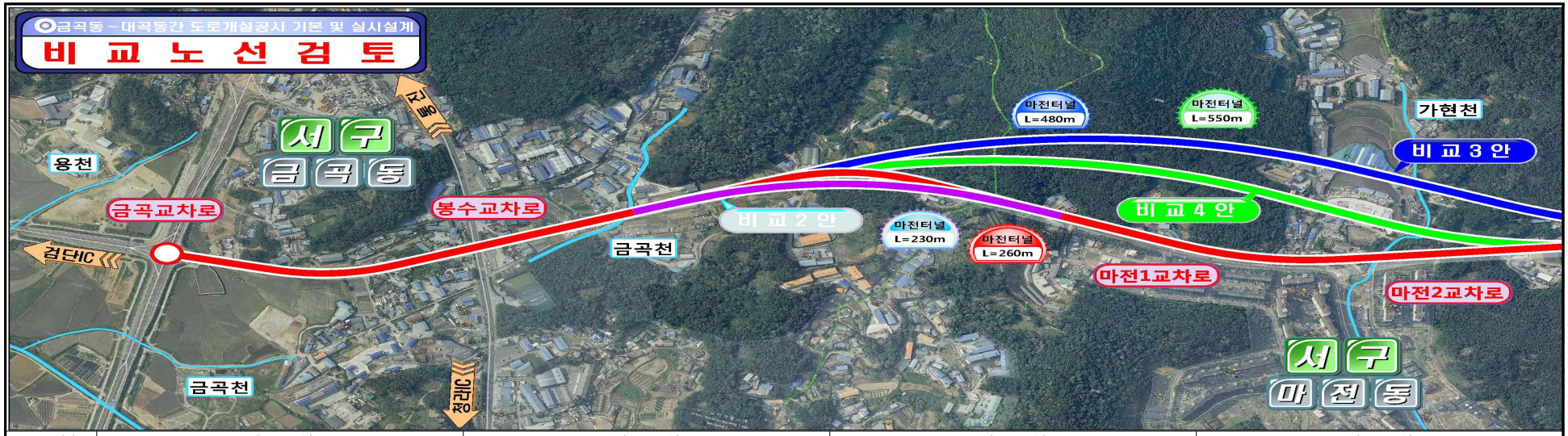

구 분	비교 1안	비교 2안	비교 3안	비교 4안
노선개요	◦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준수한 노선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시점부 곡선반경을 확대한 노선계획	◦간선기능 극대화를 고려하여 마전지구를 우회하는 노선	◦기정 도시계획시설을 최대한 준수하여 간선도로 기능 극대화를 고려한 노선계획
연장/교차로	L=3.22km/5개소	L=3.21km/4개소	L=3.28km/4개소	L=3.22km/4개소
곡선반경	R=350m	R=800m	R=1,300m	R=1,300m
주요 구조물	병설 분리터널 1개소(L=260m)	생태통로 1개소(L=230m)	병설 분리터널(상행 L=480m, 하행 L=440m)	병설 분리터널(상행 L=550m, 하행 L=390m)
토공량	깎기량 : 11.5만㎥ / 쌓기량 : 6.3만㎥ 사 토 : 5.1만㎥	깎기량 : 14.4만㎥ / 쌓기량 : 5.1만㎥ 사 토 : 8.4만㎥	깎기량 : 18.3만㎥ / 쌓기량 : 13.3만㎥ 사 토 : 6.1만㎥	깎기량 : 11.8만㎥ / 쌓기량 : 18.9만㎥ 사 토 : 6.6만㎥
편입용지	A=111,230㎡	A=121,442㎡	A=138,438㎡	A=136,392㎡
총 사업비	1,006억원	1,192억원	1,300억원	1,266억원
기술적·환경적·사회적 장·단점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준수한 노선계획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 ◦구조물 설치, 용지편입 최소화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저렴 → 사업시행에 대한 경제성 양호 ◦작은 곡선반경 구간(R=350m) 2개소 발생 ◦한남정맥 미훼손 ◦토공 발생량 최소화로 지형변화 최소화 ◦마전지구 근접통과로 생활환경 저하 ◦집단묘지 미저촉	◦평면 및 종단선형 양호로 도로용량 및 안정성 향상 ◦지장물 및 용지편입 타당성평가안 대비 다소 증가 ◦한남정맥 훼손 최소화 ◦생태통로 설치 연장 증가 ◦토공 발생량 타당성평가안 대비 증가 ◦집단묘지 일부 저촉 ◦마전지구 근접통과로 공사 중 민원 및 생활환경 영향 증가	◦평면 및 종단선형 양호로 도로용량 및 안정성 향상 ◦마전지구 연결도로 설치 필요 ◦병설터널 설치에 따른 지장물 및 용지편입 증가 ◦토공 발생량 과다 ◦마전지구 우회통과로 생활환경 저해 예방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대곡2구역 도시개발 예정지 저촉으로 민원 증가 우려 ◦집단묘지 우회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고가	◦평면 및 종단선형 타당성평가안 대비 양호 ◦마전지구 연결도로 설치 필요 ◦병설터널 설치에 따른 지장물 및 용지편입 증가 ◦저토피 통과로 개착터널 설치 필요 → 자연환경(한남정맥) 훼손 과다 ◦토공 발생량 최소화로 지형변화 최소화 ◦마전지구 우회통과로 생활환경 저해 예방 ◦집단묘지 우회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고가
검토의견	◦도시개발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도심지 통과도로의 이동성 및 접근성 기능을 공히 충족시키면서 기정 도시관리계획과 부합한 노선으로 구조물 설치 및 용지 편입면적을 최소화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면서, 한남정맥 훼손 및 지형변화를 최소화하여 환경적으로 양호하며, 경제성을 확보하면서도 장래 도시발전과 성장에 조화로운 비교1안이 타당함			

4.3 대안별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분석

가. 계획의 적정성

◦ 본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의 적정성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3-1> 계획의 적정성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제1안 (No Action)	제2안 (Action)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상위 행정계획과 일관성이 있는지를 제시	◦상위계획 미반영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제4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개년 개획, 인천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변경, 제3차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함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	◦상위계획 미반영	◦관련계획 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2)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대안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 제시	◦계획비교 : No Action(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Action(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계획비교 : No Action(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Action(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입지조정 : 비교노선에 대하여 4개 대안(비교1안, 비교2안, 비교3안, 비교4안)으로 구분하여 설정 후 비교·검토함

나. 입지의 타당성 분석

◦ 본 비교노선은 비교1안 및 비교2안, 비교3안, 비교4안으로 구분하여 노선 대안별 입지타당성을 검토하였음

<표 4.3-2> 입지의 타당성 부분에 대한 대안별 환경영향검토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비교1안	비교2안	비교3안	비교4안
2. 입지의 타당성 검토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의 가능성은 없는지 제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동·식물 서식공간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제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제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주요 산림축의 훼손을 초래하는지 제시	◦한남정맥 통과구간을 병설 분리터널로 계획하여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함	◦일부구간이 한남정맥을 통과하나 생태통로로 계획하여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함	◦한남정맥 통과구간을 병설 분리터널로 계획하여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함	◦한남정맥 통과구간을 병설 분리터널로 계획하여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함

<표 4.3-2> 계속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비교1안	비교2안	비교3안	비교4안
◦야생동·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우려되는지 제시	◦한남정맥 통과구간을 병설 분리터널로 계획하여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함	◦일부구간이 한남정맥을 통과하나 생태통로로 계획하여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함	◦한남정맥 통과구간을 병설 분리터널로 계획하여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함	◦한남정맥 통과구간을 병설 분리터널로 계획하여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함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을 초래하는지 제시	◦한남정맥 통과구간을 병설 분리터널로 계획하여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함	◦일부구간이 한남정맥을 통과하나 생태통로로 계획하여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함	◦한남정맥 통과구간을 병설 분리터널로 계획하여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함	◦한남정맥 통과구간을 병설 분리터널로 계획하여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함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높은 표고·급한 경사로 인한 과도한 지형훼손 여부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에 심대한 영향이 있는지 제시	◦지형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며, 주변 지역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지형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며, 주변 지역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지형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며, 주변 지역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지형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며, 주변 지역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호소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심각한 경관훼손이 우려되는지 제시	◦구조물, 절·성토구간, 교차로 등에 의한 일부 경관변화 예상	◦구조물, 절·성토구간, 교차로 등에 의한 일부 경관변화 예상	◦구조물, 절·성토구간, 교차로 등에 의한 일부 경관변화 예상	◦구조물, 절·성토구간, 교차로 등에 의한 일부 경관변화 예상
◦건축물, 구조물의 스카이라인이 산지 및 구릉지 등의 외부 스카이라인에 영향이 있는지 제시	◦일부 영향예상	◦일부 영향예상	◦일부 영향예상	◦일부 영향예상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역사문화자원 등 경관자원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표 4.3-2> 계속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비교1안	비교2안	비교3안	비교4안
4) 수환경의 보전				
◦각종 수환경 관련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노선 주변으로는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은 위치하지 않으나, 금곡천, 가현천, 대곡천 등 공사시 일부 하천에 영향이 예상됨	◦노선 주변으로는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은 위치하지 않으나, 금곡천, 가현천, 대곡천 등 공사시 일부 하천에 영향이 예상됨	◦노선 주변으로는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은 위치하지 않으나, 금곡천, 가현천, 대곡천 등 공사시 일부 하천에 영향이 예상됨	◦노선 주변으로는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은 위치하지 않으나, 금곡천, 가현천, 대곡천 등 공사시 일부 하천에 영향이 예상됨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1) 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임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추가 개발시 환경기준 유지·달성에 어려움은 없는지 제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처리 등이 적정한지 제시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해당 계획의 자원,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순환되고 있는지 제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원, 에너지의 효율적 순환을 검토하여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임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원, 에너지의 효율적 순환을 검토하여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임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원, 에너지의 효율적 순환을 검토하여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임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원, 에너지의 효율적 순환을 검토하여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임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해당 계획이 인구·주거·산업 등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제시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토지이용계획이 환경친화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제시	◦환경 및 생태적 보전을 위한 용도지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환경 및 생태적 보전을 위한 용도지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환경 및 생태적 보전을 위한 용도지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환경 및 생태적 보전을 위한 용도지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제5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5.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5.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 수렴

제5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5.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가. 결정내용 공개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공개 내용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을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14일 이상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공개 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반영

-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과(평가 항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주민의견 수렴

-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반영

5.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 수렴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계기관 의견수렴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작성한 후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인천광역시), 관계 행정기관(인천광역시 서구) 및 협의기관(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기간 :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공고 주체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인천광역시)

◦ 공고 시기 :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

◦ 공고 신문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대상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

◦ 공고 내용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 공고 및 공람내용 게시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 ·공고 및 공람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고 및 공람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공람 기간 : 20일 이상 40일 이내(공휴일 제외)

◦ 공람 장소 :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1개소 이상

다.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1) 설명회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설명회 개최 주체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

◦ 설명회 시기 : 공람 기간 내

◦ 설명회 실시 공고 : 설명회 개최하기 7일전까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사항에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음

2) 공청회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 이상인 경우

라. 주민의견 수렴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 의견 제출 기한 : 공람기간 시작일 ~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

◦ 제출 의견 :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에게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마.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해당사항 없음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

◦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습지보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바.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9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 공개

◦ 공개 시점 :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

◦ 내용 게시 장소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내용 게시 기간 : 14일 이상 게시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6.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6.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6.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6.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환경영향평가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6.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일 시 : 2019. 10. 15 ~ 10. 31

◦ 방 법 : 서면심의

◦ 운영위원 : 위원장 포함 10인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위원장	[redacted]			-
위 원				-
〃				-
〃				-
〃				-
〃				-
〃				-
〃				-
〃				-

6.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환경영향평가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된 내용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토록 할 계획임.

구 분	심의의견		비 고
[redacted]	□ 총괄의견	• 도로건설공사 사업시 사업구간의 동식물의 생태환경 및 생활환경변화 최소화를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함.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노선 일부구간이 한남정맥을 통과함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제시한 평가항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영향평가법 지침에 의거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으로 검토될수 있도록 하여야 함.	-
	2. 토지이용 구상안	• 향후공사로 인한 동식물의 자연·서식환경의 변화에 따른 야생동식물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동물이동통로등의 기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것으로 판단됨.	-
	3. 대안	• 선정된 대안에 대한 검토결과 대안1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됨.	-
	4. 평가항목·범위·방법등	•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계획노선이 위치한 지역을 고려하여 영향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5. 주민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도로의 효율성과 주변지역의 접근성, 이동성등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6. 기타	없음.	

구 분	심의의견		비 고
[redacted]	□ 총괄의견	• 본 계획노선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 대곡동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으로,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을 중점 검토하여 대안마련 등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환경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고, 평가항목별 영향권 범위설정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계획노선 주변 개발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누적 영향평가 실시	-
	2. 토지이용 구상안	• 향후 주변 개발 여건, 기존 도로 및 철도와의 연계축을 고려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검토하고 환경적 악영향이 우려되는 구간은 위치와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생태계 연결성(생태축), 한남정맥, 절·성토사면 높이 및 연장 등 환경적 훼손 현황을 제시	-
	3. 대안	• 계획의 목적, 주변 토지이용상황, 입지여건 및 환경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 선정사유와 최종안을 제시하여야 함 - 생태계 연결성(생태축), 한남정맥, 절·성토사면 등을 고려하여 환경적 훼손이 최소화되는 노선을 선정	-
	4.평가항목·범위·방법등	• 평가서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어야 하며, 조사방법(지점 선정, 예측 조건, 예측 시 사용된 수치 등)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적사항 및 근거자료를 반드시 수록·제시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18.12.12) • (동·식물상) 법정보호종 등 동·식물 조사는 생육·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생물의 서식 및 이동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산림지역 및 녹지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생태적 단절 및 영향이 예상되는 생물군을 제시 • (대기질, 온실가스) 공사 및 운영 시 대기질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강구,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등을 산정하고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수질·지하수) 공사 및 운영 시 토사유출, 오수,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터널 굴착 시 인근수계,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

구 분	심의의견		비 고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redacted]	4. 평가항목·범위·방법등	• (소음·진동) 공사 및 운영 시 주변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터널 공사 시 발파로 인하여 주변 정온시설(정온시설 현황) 등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
		• (토양, 지형·지질) 사업시행 시 한남정맥을 통과할 계획이므로 지맥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제시하여야 함 - 절·성토 사면 길이, 높이 등의 현황 및 사면안정성 예측에 따른 저감방안 제시 - 토양오염 개연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처리방안을 수립·제시	-
		• (경관) 사업시행으로 주변지역과의 조화에 영향이 있는 지역(마을을 관통하는 구간 등), 정맥을 통과하는 구간, 산림훼손 구간, 절·성토 등으로 경관 훼손지역 및 교량설치 지역 등을 조망점으로 선정하여 경관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라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 여부 검토	-
	5. 주민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함	
	6. 기타	• 문헌자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고, 문헌자료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상기 제시된 심의의견의 반영여부를 제시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구 분	심의의견		비 고
[redacted]	□ 총괄의견	• 사업대상지역은 우리나라 수도권 주요 광역생태축에 해당하는 한남정맥과 지방하천이 인접하여 산림 및 동식물 등 중요한 자연환경자원이 집약된 지역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환경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공사 및 운영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소음·진동, 경관저해, 수질오염 및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노선 일부구간이 한남정맥을 통과함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제시된 평가항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영향평가법 지침에 의거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2. 토지이용 구상안	• 향후 공사로 인한 동식물의 자연·서식환경의 변화에 따른 야생동식물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동물이동통로등의 기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3. 대안	• 한남정맥등 주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및 번식지 훼손이 최소화 되는 최적의 대안설정이 필요함.	-
	4. 평가항목·범위·방법등	•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계획노선이 위치한 지역을 고려하여 영향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5. 주민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관계법령(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설명회 및 공청회 이외에도 사업자는 필요시 인근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상세한 사업설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며,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시민과의 소통등을 통해 민원이 해소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6. 기타	• 없음	

구 분	심의의견		비 고
[redacted]	□ 총괄의견	• 본 개발계획은 금곡동~대곡동간 연장 3.22㎞의 도로개설공사로서 계획구간 중 한남정맥을 통과하는 구간은 환경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훼손 저감을 위한 보다 면밀한 보전방안이 필요함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
	2. 토지이용 구상안	• 국토종합개발계획, 인천시종합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일관성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제시	-
	3. 대안	• 교통수요량 추정과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도로 규모(차로수)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여 제시	-
	4. 평가항목·범위·방법등	• 생물다양성·서식지의 보전 - 동·식물상 조사의 시간적 범위(조사시기, 조사횟수)는 동·식물의 출현, 생육 등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제시 • 생활환경 - 주거지를 관통하거나 근접통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정온시설(주거시설, 교육시설, 요양시설 등)에 대해 환경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저감시설 설치 등 대안을 강구 - 주거밀집지역, 도심지 통과시 소음·대기 등 환경영향 노출인구의 최소화 방안을 제시	-
	5. 주민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현수막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6. 기타	• 계획구간중 주요 산줄기인 한남정맥을 통과하는 구간은 생태축 단절 등을 최소화하는 계획수립이 필요함.	

구 분	심의의견		비 고
[redacted]	□ 총괄의견	• 자연환경피해최소와 주변지역민의 생활편의에 대해 현재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터널. 교량, 충분한 교통로등이 확보되고, 주변 매립지를 향한 도로교통의 영향과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하여 진행가능한 것으로 판단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
	3. 대안	• p57과 같은 비교안의 검토시 - 자연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터널과 마을과 취락지구를 단절할 수 있는 성토구간의 도로망이 가능한 배제가능한 교량구간등의 적극적 방안이 검토필요 • 본 노선의 경우 - 도로개설시 매립지를 향한 교통량의 변화와 이에 따른 주변마을의 환경영향평가 필요	-
	4. 평가항목·범위·방법등	• 의견없음	-
	5. 주민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의견없음	
	6. 기타	• 의견없음	

구 분	심의의견		비 고
[redacted]	□ 총괄의견	• 본 사업은 서구 금곡동~대곡동간 도로 개설공사로서 연장 3.22㎞의 도시지역 주간선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 권역별 조사(연접 사업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등), 분석 결과를 명확히 하고, 불가피한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노선 인근 금곡 마전지구 등에 대한 생활환경의 안정성을 위해 대기질, 소음·진동에 평가대상 범위를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1㎞까지 영향 대상지역을 확대 필요함.	-
	2. 토지이용 구상안	• 사업구간 중 한남정맥 녹지축 훼손으로 인한 교통 측면뿐만이 아니라 환경 및 경관 분야 검토가 필요하며, 인근 지역의 지형, 경관, 먼지, 소음·진동 등을 고려하여 토공, 터널구간, 진·출입로 및 연결로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을 제시하여 최적 안을 제시하여야 함.	-
	3. 대안	• 현재 상황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검토결과에 대한 해결책으로 3개 이상의 대안(No Action 포함)을 마련하여 비교 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특히 산지 훼손, 절·성토, 지형훼손·변형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가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4. 평가항목·범위·방법등	• 항목별 예측 및 평가방법은「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함. •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 등의 범위, 방법에 대한 선정 및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공사·운영시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5. 주민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 수렴 공고·공람 및 설명회시 동 사업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과 공청회 개최 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6. 기타	• 평가서 초안요약서와 본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현황도면, 그림, 사진 등을 활용하고 가급적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함	

구 분	심의의견		비 고
[redacted]	□ 총괄의견	• 주변 도시개발 계획과 연계 검토 및 최근 개발 현황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객관적 예측자료 확보를 위한 측정지점(시기) 및 범위 설정 • 사업구간 내 정온시설이 위치한 구간에서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 사업 완료 후 도로 소음·진동 발생에 대한 정확한 영향 예측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정적 영향 예측시 저감방안 강구 • 사업구간 내 한남정맥이 위치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동·식물상 대상지역을 사업지구 1km에서 2km이상으로 확대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동·식물상/자연환경자산: 공사 구간 중 한남정맥이 위치하고 있음을 감안, 동·식물상 대상지역을 사업지구 경계 1km에서 2km이상으로 확대. • 대기질: 계획노선 및 주변 500m → 경계로부터 반경 1km이상 확대	-
	2. 토지이용 구상안	• 한남정맥을 관통하여 녹지훼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하여 통과구간을 터널로 계획한 것과 별도로 그 외 산림지역은 가급적 원형 보전하는 방안으로 토지이용계획을 구상	-
	3. 대안	• 수환경보전에 터널공사에 따른 터널폐수 및 지하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으로 대상지역 설정 • 도로변 주변 정온시설 인접 지역 녹지확보, 방음창, 방음벽 설치 등 도로 교통소음 최소화 방안 수립 • 공사시 분진·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 지역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및 대책 수립 • 온실가스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고 건설 공사시와 운영시 운행차량에 의한 발생 온실가스에 관한 내용 및 평가범위 설정 • 하천 인접 구간 공사시 토사, 유류 등 하천으로 오염물질 유입 예방을 위한 비점오염 저감방안 강구	-
	4. 평가항목·범위·방법등	• 대기질, 동식물상 항목은 계절적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 3계절 이상 자료 반영. • 평가지점 확대 : 정온시설 위치지역에 대기질 및 소음·진동 조사 지점 추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문헌 등을 활용 할 경우 객관성이 확보된 최신 자료를 인용하여야 함.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 도시계획 사업현황을 조사하여 영향예측시 누적평가 실시.	-
	5. 주민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관련법에 따라 의견 수렴시 전략환경영향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	
	6. 기타	•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평가서 세부검토과정에서 추가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해 기결정된 평가항목 범위 등이 조정 될 수 있음.	

구 분	심의의견		비 고
[redacted]	□ 총괄의견	• 서구는 아직 도로가 많이 부족하며 교통편이 매우 힘듦. 빠른시일내에 착공하여 완공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서구 금곡동부터 대곡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공사	-
	2. 토지이용 구상안	• 금곡동 → 대곡동 일원 (3.22㎞)	-
	3. 대안	• 도로의 어려움이 있으면 지상·터널등 공법으로해서 빠르게 하길 바람.	-
	4. 평가항목·범위·방법등	• 범위 : 금곡동 → 대곡동 • 방법 : 교통체증이 증가함으로 빠른시일에 착공하여 완공바람.	-
	5. 주민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반상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하여야 함	
	6. 기타	• 빠른시일 내에 시작하길 바람.	

구 분	심의의견		비 고
[redacted]	□ 총괄의견	•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2015년 2매립지 매립이 완료된 후, 현재 3-1 매립지에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2-2매립지에 매립이 진행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는 고려사항이라면,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 자체가 틀린 점에서 보고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야생생물보호구역이 도로 공사 인접 지역인 김포 풍무동에 위치하고 있고 보호 생물이 말똥가리, 솔개 등 맹금류인 조류이므로 도로 건설에 있어 방음벽을 세우는 등에 있어 새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 • 악취관리지역 7개소라고 하고 내용에는 9개 지역이 적시되어 있음 • 한남정맥을 관통하는 부분을 생태통로 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나 훼손부분을 최소화하여 녹지 지역 보호에 만전을 기울여야 함.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존을 위한 평가 항목에서 광역조사를 계획노선 주변 1.0km로 제한 하고 현지 조사를 노선 500m로 한 것은 너무 협소한 느낌이 있음. 한강 유역과 인접하고, 철새의 이동 지역인 김포평야 및 풍무 지역에 철새 및 풍무동에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존재하니, 이에 대한 영향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기타 부분은 적정	-
	2. 토지이용 구상안	• 노선에 따른 토지이용 구상안은 대체로 적정하나, 한남정맥을 통과하는 녹지의 훼손이 불가피한 점이 있으니, 훼손을 최소로 하는 방향으로 공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3. 대안	• 비교에 따른 대안에서 만성적인 정체 예상의 근거가 상위계획의 반영 이외는 제시되고 있지 않음. 상위계획이 세워졌다고 해도 현재 평가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입지에 따른 비교분석에 있어 한남정맥을 관통하는 거리가 가장 짧은 비교 1안을 검토하였으면 함.	-
	4. 평가항목·범위·방법등	• 동물 이동에 있어 육상 동물뿐만 아니라 날짐승 등의 이동경로 파악도 필요함. 최근 방음벽에 충돌하는 조류 발생이 급증하고 있음 .	-
	5. 주민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형식적인 공청회와 정보 열람이 아닌 주민의 의사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에게 정보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시행.	
	6. 기타	• 의견없음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

□ 총 괄 의 견

○ 도로건설공사 사업시 사업구간의 동식물의 생태환경 및 생활환경변화 최소화를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노선 일부구간이 한남정맥을 통과함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제시된 평가항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영향평가법 지침에 의거 2개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향후 공사로 인한 동식물의 자연·서식환경의 변화에 따른 야생동식물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동물이동통로등의 기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대안
○ 선정된 대안에 대한 검토결과 대안1 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됨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계획노선이 위치한 지역을 고려하여 영향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도로의 효율성과 주변지역의 접근성, 이동성등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없음

2019. . .

심의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의견 통보서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공사]

□ 총괄 의견

○ 본 계획노선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 대곡동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으로,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을 중점 검토하여 대안마련 등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환경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고, 평가항목별 영향권 범위설정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계획노선 주변 개발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누적 영향평가 실시

2. 토지이용 구상안
○ 향후 주변 개발 여건, 기존 도로 및 철도와의 연계축을 고려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검토하고 환경적 악영향이 우려되는 구간은 위치와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생태계 연결성(생태축), 한남정맥, 절·성토사면 높이 및 연장 등 환경적 훼손 현황을 제시

3. 대 안
○ 계획의 목적, 주변 토지이용상황, 입지여건 및 환경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 선정사유와 최종안을 제시하여야 함
- 생태계 연결성(생태축), 한남정맥, 절·성토사면 등을 고려하여 환경적 훼손이 최소화되는 노선을 선정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평가서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어야 하며, 조사방법(지점 선정, 예측 조건, 예측 시 사용된 수치 등)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적사항 및 근거자료를 반드시 수록·제시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18.12.12)

○ (동·식물상) 법정보호종 등 동·식물 조사는 생육·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생물의 서식 및 이동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산림지역 및 녹지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생태적 단절 및 영향이 예상되는 생물군을 제시
○ (대기질, 온실가스) 공사 및 운영 시 대기질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강구,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등을 산정하고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수질·지하수) 공사 및 운영 시 토사유출, 오수,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터널 굴착 시 인근수계,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 (소음·진동) 공사 및 운영 시 주변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터널 공사 시 발파로 인하여 주변 정온시설(정온시설 현황) 등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 (토양, 지형·지질) 사업시행 시 한남정맥을 통과할 계획이므로 지맥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제시하여야 함
- 절·성토 사면 길이, 높이 등의 현황 및 사면안정성 예측에 따른 저감방안 제시
- 토양오염 개연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처리방안을 수립·제시
○ (경관) 사업시행으로 주변지역과의 조화에 영향이 있는 지역(마을을 관통하는 구간 등), 정맥을 통과하는 구간, 산림훼손 구간, 절·성토 등으로 경관훼손지역 및 교량설치 지역 등을 조망점으로 선정하여 경관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라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 여부 검토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함

6. 기 타
○ 문헌자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고, 문헌자료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상기 제시된 심의의견의 반영여부를 제시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019. 10. 31.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

□ 총 괄 의 견

○ 사업 대상지역은 우리나라 수도권 주요 광역생태축에 해당하는 한남정맥과 지방하천이 인접하여 산림 및 동식물 등 중요한 자연환경자원이 집약된 지역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환경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공사 및 운영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소음·진동, 경관저해, 수질오염 및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노선 일부구간이 한남정맥을 통과함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제시된 평가항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영향평가법 지침에 의거 2개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향후 공사로 인한 동식물의 자연·서식환경의 변화에 따른 야생동식물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동물이동통로등의 기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대안
○ 한남정맥 등 주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및 번식지 훼손이 최소화되는 최적의 대안설정이 필요함.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계획노선이 위치한 지역을 고려하여 영향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관계법령(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설명회 및 공청회 이외에도 사업자는 필요시 인근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상세한 사업설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시민과의 소통 등을 통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없음

2019. 10. .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

□ 총 괄 의 견

○ 본 개발계획은 금곡동~대곡동간 연장 3.22㎞의 도로개설공사로서 계획구간 중 한남정맥을 통과하는 구간은 환경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훼손 저감을 위한 보다 면밀한 보전방안이 필요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국토종합개발계획, 인천시종합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일관성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제시

3. 대안
○ 교통수요량 추정과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도로 규모(차로수)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여 제시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생물다양성·서식지의 보전
- 동·식물상 조사의 시간적 범위(조사시기, 조사횟수)는 동·식물의 출현, 생육 등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제시
○ 생활환경
- 주거지를 관통하거나 근접통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정온시설(주거시설, 교육시설, 요양시설 등)에 대해 환경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저감시설 설치 등 대안을 강구
- 주거밀집지역, 도심지 통과시 소음·대기 등 환경영향 노출인구의 최소화 방안을 제시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현수막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계획구간중 주요 산줄기인 한남정맥을 통과하는 구간은 생태축 단절 등을 최소화하는 계획수립이 필요함.

2019. 10. 21 .

심의위원
※전자문서 발송에 따른 서명생략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

□ 총 괄 의 견

○ 자연환경피해최소와 주변지역민의 생활편의에 대해 현재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터널, 교량, 충분한 교통로등이 확보되고, 주변 매립지를 향한 도로교통의 영향과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하여 진행가능한 것으로 판단

□ 심 의 의 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p57과 같은 비교안의 검토시
- 자연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터널과 마을과 취락지구를 단절할 수 있는 성토구간의 도로망이 가능한 배제가능한 교량구간등의 적극적 방안이 검토필요

○ 본 노선의 경우
- 도로개설시 매립지를 향한 교통량의 변화와 이에 따른 주변마을의 환경영향평가 필요

3.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2019. 10 . 23 .

심의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

□ 총 괄 의 견

○ 본 사업은 서구 금곡동~대곡동간 도로 개설공사로서 연장 3.22㎞의 도시지역 주간선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 권역별 조사(연접사업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등), 분석 결과를 명확히 하고, 불가피한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노선 인근 금곡 마전지구 등에 대한 생활환경의 안정성을 위해 대기질, 소음·진동에 평가대상 범위를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1㎞까지 영향 대상지역을 확대 필요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사업구간 중 한남정맥 녹지축 훼손으로 인한 교통 측면뿐만이 아니라 환경 및 경관 분야 검토가 필요하며, 인근 지역의 지형, 경관, 먼지, 소음·진동 등을 고려하여 토공, 터널구간, 진·출입로 및 연결로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을 제시하여 최적 안을 제시하여야 함.

3. 대안
○ 현재 상황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검토결과에 대한 해결책으로 3개 이상의 대안(No Action 포함)을 마련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특히 산지 훼손, 절·성토, 지형훼손·변형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가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2-1)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항목별 예측 및 평가방법은「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함.

○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 등의 범위, 방법에 대한 선정 및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공사·운영시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 수렴 공고·공람 및 설명회시 동 사업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과 공청회 개최 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6. 기 타

○ 평가서 초안요약서와 본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현황도면, 그림, 사진 등을 활용하고 가급적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함

2019. 10.

심의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주변 도시개발 계획과 연계 검토 및 최근 개발 현황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객관적 예측자료 확보를 위한 측정지점(시기) 및 범위 설정

○ 사업구간 내 정온시설이 위치한 구간에서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 사업 완료 후 도로 소음·진동 발생에 대한 정확한 영향 예측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정적 영향 예측시 저감방안 강구

○ 사업구간 내 한남정맥이 위치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동·식물상 대상지역을 사업지구 1km에서 2km이상으로 확대

□ 평가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동·식물상/자연환경자산: 공사 구간 중 한남정맥이 위치하고 있음을 감안, 동·식물상 대상지역을 사업지구 경계 1km에서 2km이상으로 확대.

○ 대기질: 계획노선 및 주변 500m → 경계로부터 반경 1km이상 확대

2. 토지이용 구상안

○ 한남정맥을 관통하여 녹지훼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하여 통과구간을 터널로 계획한 것과 별도로 그 외 산림지역은 가급적 원형 보전하는 방안으로 토지이용계획을 구상

3. 대안

○ 수환경보전에 터널공사에 따른 터널폐수 및 지하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으로 대상지역 설정

○ 도로변 주변 정온시설 인접 지역 녹지확보, 방음창, 방음벽 설치 등 도로 교통소음 최소화 방안 수립

○ 공사시 분진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 지역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및 대책 수립

○ 온실가스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고 건설 공사시와 운영시 운행차량에 의한 발생 온실가스에 관한 내용 및 평가범위 설정

○ 하천 인접 구간 공사시 토사, 유류 등 하천으로 오염물질 유입 예방을 위한 비점오염 저감방안 강구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대기질, 동식물상 항목은 계절적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 3계절 이상 자료 반영.

○ 평가지점 확대 : 정온시설 위치지역에 대기질 및 소음·진동 조사 지점 추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문헌 등을 활용 할 경우 객관성이 확보된 최신 자료를 인용하여야 함.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 도시계획 사업현황을 조사하여 영향예측시 누적평가 실시.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관련법에 따라 의견 수렴시 전략환경영향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

□ 기타

○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평가서 세부검토과정에서 추가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해 기결정된 평가항목 범위 등이 조정 될 수 있음.

2019. 10. 31.

심의위원

<별지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

□ 총 괄 의 견

○ 서울 아직 도로가 많이 부족하며 인구 밀집 지역 임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며 문제점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서구 금성동부터 대성동간 도로 개설에 대한 검사

2. 토지이용 구상안

○ 금성동 → 대곡동 (약 22.4km)

3. 대안

○ 도로의 어려움이 있으며 지상, 터널공법으로 해서 빠르게 하길 바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범위: 금성동 → 대곡동

○ 방법: 교통체증이 증가하므로 빠른시일에 착공하며 문제 바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반상회등을 통해 주민 더러 수렴해야 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길 바람

2019. 10. 30.

심의위원

2019-10-30 12:10 FROM: TO: P.01

<별지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

□ 총 괄 의 견

○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2015년 2매립지 매립이 완료된 후, 현재 3-1매립지에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2-2매립지에 매립이 진행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는 고려사항이라면,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 자체가 틀린 점에서 보고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야생생물보호구역이 도로 공사 인접 지역인 김포 풍무동에 위치하고 있고 보호 생물이 말똥가리, 솔개 등 맹금류인 조류이므로 도로 건설에 있어 방음벽을 세우는 등에 있어 새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

○ 악취관리지역 7개소라고 하고 내용에는 9개 지역이 적시되어 있음.

○ 한남정맥을 관통하는 부분을 생태통로 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나 훼손부분을 최소화하여 녹지 지역 보호에 만전을 기울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및 서식지 보존을 위한 평가 항목에서 광역조사를 계획노선 주변 1.0km로 제한 하고 현지 조사를 노선 500m로 한 것은 너무 협소한 느낌이 있음. 한강 유역과 인접하고, 철새의 이동 지역인 김포평야 및 풍무 지역에 철새 및 풍무동에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존재하니, 이에 대한 영향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기타 부분은 적정

2. 토지이용 구상안

○ 노선에 따른 토지이용 구상안은 대체로 적정하나, 한남정맥을 통과하는 녹지의 훼손이 불가피한 점이 있으니, 훼손을 최소로 하는 방향으로 공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3. 대안

비교에 따른 대안에서 만성적인 정체 예상의 근거가 상위계획의 반영 이외는 제시되고 있지 않음. 상위계획이 세워졌다고 해도 현재 평가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입지에 따른 비교분석에 있어 한남정맥을 관통하는 거리가 가장 짧은 비교 1안을 검토하였으면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동물 이동에 있어 육상 동물뿐만 아니라 날짐승 등의 이동경로 파악도 필요함. 최근 방음벽에 충돌하는 조류 발생이 급증하고 있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형식적인 공청회와 정보 열람이 아닌 주민의 의사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에게 정보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시행.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2019. 10. 28.

심의위원

공란

공란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911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 11. 15.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등록 사항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단체명	변경사항(대표자)		주관과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제378호 2007-0-인천광역시-7 (2007.1.23.)	노동자 교육기관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2-79 회춘원빌딩2층	**인천 부평구 마장로 1 부영빌딩 2층**	노동인권과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91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 11. 18.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비 고
당초	제2000-0-인천광역시-9호	(재)인천 YMCA 청소년 재단	이 창 운	인천. 남동구 구월남로 118 (구월동)	건전청소년육성사업,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자원봉사 등	대표자 변경
변경	상 동	상 동	김 권 중	상 동	상 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92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 11. 18.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비고
당초	제2017-0- 인천광역시-8호	한국청소년 환경단 인천지부	김석균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13번길40 대운빌딩 306,307호	- 환경조성을 주제로 하는 각종 봉사 활동사업 - 청소년활동 중심 환경감시 활동 및 환경주제 체험 및 탐방사업 -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환경 캠페인 사업	
변경	상 동	상 동	상 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44번길9 약산빌딩 201호	상 동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9-408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9.11.18. ~ 2019.12.02(15일간)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붙임의 내용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는 6. 납부안내를 참조하시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6. 납부안내

가. 납부기한 : 2020년 02월 28일까지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다. 납부기한이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의제기제출

이의제기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032-440-8818), 우편(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이의제기서 제출 기한 : 2020년 02월 05일

8. 기타 자세한 내용

○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3)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공시송달대상

연번	과태료 대장번호	대상자	주민등록주소	우편물 송달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단속내용	단속 차량	처분 과태료	반송사유	비고
1	000183	박**	인천광역시중구 참외전로 ****호 (전동, 나눔빌라)	좌 동	2019.03.13. 13:33.	서구 당하동 드림로	폭0.47미터 초과(폭2.97미터)	98라****	500,000	반송 (수취인불명)	
2	000184	윤**	경기도부천시 중동로280번길 **** (중동, 중흥마을)	“	2019.03.14. 10:06.	연수구 송도동 송도바리오대로	축하중1.35톤 초과(3축하중11.35톤)	경기06조****	500,000	반송 (수취인불명)	
3	000185	지**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미라15길 **** (쌍용동, 대우타워아파트)	“	2019.03.14. 13:59.	계양구 효성동 봉오대로	축하중1.50톤 초과(3축하중11.50톤)	인천06아****	700,000	반송 (수취인불명)	
4	000187	강*	서울특별시관악구 국회단지19길 **** (봉천동)	“	2019.03.14. 08:24.	서구 가정동 봉수대로	높이0.23미터 초과(높이4.23미터)	82가****	300,000	반송 (폐문부재)	
5	000207	김**	경기도포천시신북면신평로172번길 **** (헤럴드원룸)	“	2019.03.19. 10:33.	서구 연희동 봉수대로	높이0.28미터 초과(높이4.28미터)	경기91바****	300,000	반송 (폐문부재)	
6	000223	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동암산로**** (십정동)	“	2019.03.25. 13:52.	서구 가정동 봉오대로	축하중1.20톤 초과(4축하중11.20톤)	인천06아****	500,000	반송 (폐문부재)	
7	000234	장**	경기도시흥시 서촌상가2길 **** (정왕동)	“	2019.03.26. 16:28.	중구 신흥동3가 축항대로	폭1.10미터 초과(폭3.60미터)	경기98아****	1,000,000	반송 (폐문부재)	
8	000237	권**	인천광역시연수구 청량로 **** (옥련동, 메종드제이)	“	2019.03.26. 15:04.	연수구 동춘동 앵고개로	높이0.28미터 초과(높이4.28미터)	경기94사****	300,000	반송 (폐문부재)	
9	000257	박**	강원도평창군진부면송정택지1길 **** (성원아파트)	“	2019.04.01. 10:12.	서구 신현동 봉수대로	폭0.24미터 초과(폭2.74미터)	인천98자****	300,000	반송 (수취인불명)	
10	000309	이**	인천광역시계양구 당미1길 **** (동양동, 럭키아트빌)	“	2019.04.13. 09:31.	남동구 논현동 남동대로	축하중1.25톤 초과(4축하중11.25톤)	서울06하****	500,000	반송 (폐문부재)	
11	000322	변**	인천광역시서구 청라한내로 ****수자인레이크블루)	“	2019.04.16. 15:34.	서구 경서동 경명대로	축하중1.10톤 초과(4축하중11.10톤)	서울07나****	700,000	반송 (폐문부재)	

12	000323	김**	강원도동해시 천곡로 **** (천곡동, 한양2차아파트)	“	2019.04.16. 19:00.	중구 사동 인중로	폭0.45미터 초과(폭2.95미터)	경기98바* ***	500,000	반송 (수취인불명)	
13	000360	주**	인천광역시계양구 봉오대로 **** (효성동, 태산아파트)	“	2019.04.24. 09:41.	부평구 청천동 부평대로	폭0.26미터 초과(폭2.76미터)	경기89바* ***	300,000	반송 (수취인불명)	
14	000381	김**	인천광역시계양구 경명대로 **** (계산동)	“	2019.05.03. 16:01.	미추홀구 학익동 매소홀로	축하중1.95톤 초과(3축하중11.95톤)	인천06아* ***	500,000	반송 (주소불명)	
15	000407	송**	대전광역시중구 선화서로19번길 **** (선화동)	“	2019.05.09. 09:55.	서구 석남동 봉수대로	폭0.49미터 초과(폭2.99미터)	경기98아* ***	500,000	반송 (폐문부재)	
16	000414	박**	광주광역시북구 상촌로43번길 **** (양산동, 일신아파트)	“	2019.05.13. 09:39.	연수구 송도동 센트럴로	폭0.25미터 초과(폭2.75미터)	광주88바* ***	300,000	반송 (폐문부재)	
17	000428	이**	인천광역시서구 건지로284번길 **** (가좌동)	“	2019.05.18. 08:58.	연수구 옥련동 비류대로	축하중1.95톤 초과(2축하중11.95톤)	인천06아* ***	500,000	반송 (폐문부재)	
18	000436	이**	경기도시흥시 월곶중앙로14번길 **** 월곶풍림2차아이원아파트)	“	2019.05.22. 09:14.	미추홀구 숭의동 독배로	폭0.45미터 초과(폭2.95미터)	서울98바* ***	500,000	반송 (이사감)	
19	000450	전**	인천광역시서구 청라커낼로 **** (청라동, 청라LH)	“	2019.05.30. 09:23.	중구 항동 인중로(항동과적검문소)	길이2.61미터 초과(길이19.31미터)	인천98아* ***	300,000	반송 (폐문부재)	
20	000558	김**	인천광역시연수구 벚꽃로 **** (연수동, 연수푸르지오 1단지)	“	2019.07.05. 17:23.	중구 신흥동 서해대로	폭0.44미터 초과(폭2.94미터)	서울98사* ***	500,000	반송 (폐문부재)	
21	000575	고**	인천광역시연수구 함박안로 **** (연수동)	“	2019.07.15. 07:10.	중구 항동 인중로 (항동과적검문소)	축하중1.39톤 초과(3축하중11.39톤)	인천06사* ***	500,000	반송 (폐문부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94호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부패행위 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직자 부조리 신고대상자를 규정함(안 제2조제2호)

○ 신고방법을 정비함(안 제3조제2항)

○ 별표 1의 제목을 정비함(안 별표 1)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dalmalk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032-440-621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포함한다)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시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 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3조제2항 중 “부조리”를 “공무원 등의 부조리”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은”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언제라도”로 한다.

별표 1 중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서(제3조 관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공무원등”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시의회·직속기관·사업소 소속 공무원과 시가 출자 및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시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경우에는 행위당시의 재직기관 소속으로 본다.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포함한다)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시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

현 행	개 정 안
	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신고방법) ① (생 략)	제3조(신고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등의 부조리 ---------- 경우에는 누구든지 언제라도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5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3., 2016. 3. 29., 2017. 4. 18.>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8.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9.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시행일 : 2019. 10. 17.] 제2조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의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8조(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단체
2. 법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
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를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3., 2011. 10. 28., 2013. 3. 23., 2014. 11. 19.>

③ 공직유관단체가 법률 또는 정관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1. 23.>

④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기관·단체가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부조리 신고대상자에 포함함(안 제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감사관실 감사관 김성훈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95호

인천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원폭피해자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원폭피해자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원폭피해자 지원 협력체계 구축 사항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4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5, 팩스 032-440-8764, 이메일 johyera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1945년 일본에 투하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원폭피해자”라 한다)란 1945년 미국에 의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피해를 입은 한국인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적십자사에 한국인 원폭피해자로 등록된 원폭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사람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원폭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폭피해자 지원 시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원폭피해자의 지원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폭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원폭피해자와 그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원폭피해자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
2.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와 자료 수집 및 정리
3. 원폭피해자 의료 및 상담지원, 교육
4. 원폭피해자 추모 사업
5. 원폭피해자를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원폭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원폭피해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받은 피폭자 건강수첩 및 증빙서류를 가지고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신청에 관한 사무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원폭피해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에 대한 현황 및 자료 수집 협조
2. 의료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에 관한 사항 심의
3. 상담지원, 교육 관련 자문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원
2. 원폭피해자 대표
3. 원폭관련 전문가 및 지원단체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국원폭피해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할 때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등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조(피해자 실태조사)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피해자"란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2.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킬로미터 이내에 있었던 사람
3.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 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피해자의 심사·결정
3. 의료지원금의 지급
4. 피해실태조사보고서 작성
5.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6.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
7. 그 밖에 피해자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피해자 대표(피해자의 자녀 및 후견인을 포함한다)
3.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7조(피해자 실태조사) ① 위원회는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수집 및 조사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록)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변동신고) ①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4.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비속
3.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제11조(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피해자(이하 "등록된 피해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제12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록된 피해자에게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피해자 중 건강수첩 소지자(일본의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이 조와 제13조의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5호의 진료보조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의료지원의 종류) ①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에 대하여 연 1회의 정기검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밀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가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의료를 받았을 경우 이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술비
2. 진찰·검사비

3. 입원비
4. 약제비
5. 진료보조비

③ 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 및 제2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의 산정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자폭탄 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추모묘역 및 위령탑
2. 그 밖에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권리의 보호) 의료지원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위하여 신청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에 대하여 피해자 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자문이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4. 30.]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피해자 실태조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의 연령별 · 성별 · 지역별 분포 등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의 소득수준 및 주거실태 등에 관한 사항
4. 피해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 기관 ·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피해자의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o 안 제5조(지원사업)

o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o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o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o 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에 비용이 수반되나 연간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 안 제5조(지원사업) 제1항 제3호에 근거, 원폭피해자 의료 및 상담지원에 따른 **상담 교재 및 홍보 리플릿 등 인쇄 발간** 등에 대해 비용을 추계함

· 교재 및 리플릿 제작 : 5,000천원

- 교 재 : 10천원 × 300권 = 3,000천원

- 리플릿 : 1천원 × 2,000부 = 2,000천원

-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라 구성되는 인천광역시 원폭피해자 지원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15명 이내로 구성, 이중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을 제외한 12명에게 지급하는 **참석 수당 및 다과비** 등에 대해 비용을 추계함

· 위원 : 15명(참석 수당 지급위원 12명)

· 개최 횟수 : 연2회

· 참석 수당 : 100천원

- 기본 2시간(70천원) + 추가(30천원)

- (소요예산) 100천원 × 12명 × 2회 = 2,400천원

※ 수당 지급 대상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제함

· 다과비 등 일반운영비 : 1,300천원

(단위:천원)

구분	합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 계	43,500	8,700	8,700	8,700	8,700	8,700
교재 제작 등	2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위원회의 설치 등	18,500	3,700	3,700	3,700	3,700	3,700

※ 2019년도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름

o 안 제5조(지원사업)은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한 조항으로 재정이 수반될 요인이 있음. 다만, 대상자 현황 및 의료비 지원 수준 파악 등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은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업계획에 따른 비용의 범위를 미리 정할 수 없음.

4. 작성자

건강체육국 건강증진과장 강병진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 - 199호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비율을 상향하여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하여 지역 업체 참여 근거 강화(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8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7, 팩스 032-440-8766, 이메일 bank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의견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필요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1부.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60퍼센트”를 각각 “7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역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생 략)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2. ~ 4. (생 략) ③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역업자의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 할 수 있다. 1.·2. (생 략) 3.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60퍼센트 이상 권장	제8조(지역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현행과 같음) ②----------. 1. ---------- 70퍼센트 --- 2. ~ 4. (현행과 같음) ③ ----------. 1.·2. (현행과 같음) 3. ---------- 70퍼센트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장 채기병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9-316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 교육행정 환경 및 수요 변화에 따라 직속기관의 능률화, 효율화를 위해 직속기관 조직 및 기능을 개편하고

나.「산업안전보건법」전면개정으로 확대되는 업무 전담팀을 신설하고 배치 부서를 변경(예산복지과→ 안전총괄과)함에 따라

다. 이에 따른 각 기관(부서)의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교육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자구수정 및 명확한 사무(업무)를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0. 1. 1.자 직속기관 조직 및 기능개편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

나. 산업안전보건팀 신설 및 부서 변경 지정에 따른 업무조정

다. 사문화 된 업무 삭제 또는 자구수정 및 용어 현행화

라.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지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2019년 12월 1일(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감(참조 : 학교설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aeyong9345@ice.go.kr

2) 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

-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3) 팩스 : 032-420-6563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032-420-65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law.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 “붙임1”

5. 개정규칙안 : “붙임2”

< 붙임1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서식)

민원인 인 적 사 항	성 명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인)

인천광역시교육감(학교설립과장) 귀하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 교육행정 환경 및 수요 변화에 따라 직속기관의 능률화, 효율화를 위해 직속기관 조직 및 기능을 개편하고

나.「산업안전보건법」전면개정으로 확대되는 업무 전담팀을 신설하고 배치 부서를 변경(예산복지과→ 안전총괄과)함에 따라

다. 이에 따른 각 기관(부서)의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교육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자구수정 및 명확한 사무(업무)를 지정하고자 함

2. 개정근거

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부터 제12조

나.「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조 및 제4조

다.「2020.1.1.자 직속기관 조직 및 기능개편 계획」(학교설립과-4393, 2019.7.29.)

라.「업무조정협의회 사전협의회 결과 보고」(학교설립과-6555, 2019.11.8.)

3. 주요내용

가. 2020. 1. 1.자 직속기관 조직 및 기능개편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

나. 산업안전보건팀 신설 및 부서 변경 지정에 따른 업무조정

다. 사문화 된 업무 삭제 또는 자구수정 및 용어 현행화

라.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지정 등

4.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19. 11. 18. ~ 2019. 12. 1.(예정)

다. 교육규제: 해당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없음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으로 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장”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에 기획평가부, 연수운영부”를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 기획운영부, 교원연수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평가부장ㆍ연수운영부장ㆍ세계시민교육부장”을 “기획운영부장ㆍ교원연수부장ㆍ세계시민교육부장”으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장”을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인천광역시중앙도서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북구도서관·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으로, “평생교육운영과”를 “마을교육지원과”로,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인천광역시주안도서관·인천광역시화도진도서관·인천광역시서구도서관·인천광역시계양도서관 및 인천광역시연수도서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부평도서관·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인천광역시교육청화도진도서관·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생교육운영과장”을 “마을교육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관할 부속시설로 다누리를 두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제3장제4절(제16조)을 삭제한다.

제3장제5절의 제목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한다.

제17조 중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장”을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한다.

제3장제6절의 제목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장”을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제3장제7절의 제목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으로 한다.

제21조 중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장”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으로 한다.

제3장제8절의 제목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장”을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3장제9절의 제목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24조 중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을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에 기획연구과, 운영지원과”를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 기획운영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연구과장, 운영지원과장”을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 호, 2019. .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목 중“교육과학연구원”을 “교육과학정보원”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2조 중“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를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 학습관운영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 문화회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인천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중“인천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별표 1]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에 두는 수련시설의 위치

명 칭	위 치
해양환경체험학습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463
서사체험학습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서사길 159
흥왕체험학습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1854
국화리학생야영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282번길 48

[별표 4]

사 무 분 장 표 (제 35조 관련)

1. 본 청

[소통협력담당관]

과 · 담당관	분 장 사 무
소통협력담당관	1. 인천교육 홍보 기본 계획 수립·추진·평가 2. 인천교육 언론동향 분석 3. 언론 브리핑 운영 및 언론 인터뷰·취재활동 지원 4. 인천교육 홍보물(영상물, 간행물등)제작·보급 및 데이터베이스(D/B) 관리 5. 인천교육 학생·학부모기자단 운영 6.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홍보망 구성·운영 7. 인천교육소식 홈페이지 운영 8. 기자실 운영 9. 교육 관련 보도기사 스크랩 관리 업무 10. 학교혁신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소통협력담당관 업무와 관련한 사항

[감사관]

과 · 담당관	분 장 사 무
감사관	1. 각종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수감 및 감사 결과 처리 3. 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공·사립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처리(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 제외) 4. 조사,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지도감독결과에 따른 징계의뢰 사항 포함) 5.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결과 처리 6. 공무원범죄 통보 사항 조사 및 처리 7.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8. 공직기강(비위,진정,청원등) 관련 사항 9. 교육부조리(부패방지, 공무원행동강령 등) 근절대책 수립 및 지도관리 10.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교육지원청의 자체감사 실시계획 검토·조정 12. 그 밖에 감사관 업무와 관련한 사항

[마을교육지원단]

과·담당관	분 장 사 무
마을교육지원단	1.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혁신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4. 교육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부모지원정책 수립 6.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및 운영 7. 학부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8. 유치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원 9.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10. 그 밖에 마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정 책 국

[정책기획과]

과·담당관	분 장 사 무
정책기획과	1. 교육정책 기획·개발·관리·조정에 관한 사항 2. 인천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조정 3. 교육균형발전계획 수립·관리 및 총괄 4. 학교업무 정상화 대책 등에 관한 사항 5. 일하는 방식 개선 등 교육행정 혁신 및 정부혁신에 관한 사항 6. 교육지표·시책 수립 7. 주요업무계획의수립·평가·조정 8.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9. 국정과제 추진 기획·조정 10. 교육정책모니터링 11. 제안제도 운영 12. 인천미래교육위원회 운영 13. 시의회·국회 주요업무 보고 14. 시·도교육감 및 부교육감회의 업무 15. 교육감·부교육감 지시사항 관리 16. 시·도교육청 평가 17. 교육지원청 평가 18. 학교평가 관리

과·담당관	분 장 사 무
정책기획과	19.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20.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21. 교육의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2. 교육정책이론 및 방법 연구에 관한 사항
	23. 현직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24. 지방의회와 관련한 사항(행정사무감사 제외)
	25. 교육행정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법령·지침 등 발굴·정비
	26. 조례·규칙·훈령(안)의 심사 및 공포·발령
	27. 소송사무의 총괄 및 수행
	28.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29.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30.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31. 고문변호사 운영
	32.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
	33. 법령 등 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34. 자치단체간 교육지원·연계 강화 협력
	35. 정책국 업무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36. 그 밖에 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민주시민교육과]

과·담당관	분 장 사 무
민주시민교육과	1. 학교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3. 학교혁신지원센터 운영 4. 행복배움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5. 국제교육 교류 업무에 관한 사항 6. 교육국제화특구 업무 7. 학교혁신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관한 사항 8.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의 운영 및 지도·감독 9.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유치원·특수학교(급) 제외) 10. 학생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11. 교재·교구 기준 관리 12. 교과교실제 운영에 관한 사항 13.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학업성적관리 및 평가 관리 지도 15.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업무 16.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17. 소수선택과목 개설 지원에 관한 사항 18. 교과중점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9. 공교육 정상화법 관련 업무 20. 평가방법개선(서술형, 논술형, 수행평가) 추진 2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22. 인천학술진흥재단 운영·지원 23. 초·중·고 학사일정 및 학사선진화 운영 관리 24.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운영 지원

과·담당관	분 장 사 무
민주시민교육과	25. 인정도서 승인에 관한 사항
	26. 교과서 선정·주문·공급
	27. 다문화교육지원
	28.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29. 탈북학생 교육지원 업무
	30. 호국·보훈에 관한 사항
	31. 인천 이해 교육
	32. 독도교육 업무
	33. 역사, 평화 및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34. 강화 생태·평화·역사교육지구 운영
	35.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36. 교권 존중 프로젝트
	37.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8. 학생·교직원 인권 보호 업무(인권보호관 운영)
	39.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40. 학교 및 학생자치에 관한 사항
	41. 학생 사회참여 활동 운영
	42. 청소년단체 업무에 관한 사항
	43. 학생봉사활동 기본계획 수립
	44. 학생봉사프로그램 개발·보급·지원
	45. 동아시아 시민 교육
	46. 지역 교과용도서 편찬
	47. 초등교과보완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8. 진로·진학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9. 학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0.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예산복지과]

과 · 담당관	분 장 사 무
예산복지과	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관리 2. 공립학교 학교기본운영지원비 관리 지도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중·단기 지방교육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4. 지방교육재정 집행관리 계획 수립·시행 5.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6.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학생교육복지 정책을 위한 행·재정체제 강화 기본계획 수립·추진 8. 학생교육복지 관련 대외협력 강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9.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10.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 11. 방과후학교 지원(자유수강권, 보육료 지원, 초등학교돌봄교실 운영, 농어촌방과후학교 운영) 12. 누리과정지원비 편성 및 관리 13. 교과용도서 무상지원(도서 선정업무 제외) 14. 저소득층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사항 15.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교육정보화, 중식비, 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 16.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17. 급식학교 운영 관리 18.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 관리(유치원 포함) 19. 학생의 영양관리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유치원 포함) 20. 학교급식관련 경비 지원 21. 학교우유 급식 관리 22. 지방자치단체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무상급식 포함) 23.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24. 학교급식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25. 유치원 급식지도 관리 및 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예산복지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노사협력과]

과·담당관	분 장 사 무
노사협력과	1.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등 교원노동조합과 관련한 사항 2. 교원단체연합회와의 교섭에 관한 사항 3.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등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한 사항 4.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업무의 조정·총괄에 관한사항 5.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 및 배치기준 수립 6.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전보 등 인사업무 7.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사위원회 및 인력관리협의회 운영 8.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총액인건비 관리 9.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교육훈련 및 복무관리 10.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 및 무기계약전환 운영 11.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등에 관한 업무 12.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 업무 13. 노사협의회 운영 14. 노동관련 법령 해석 및 교육, 상담, 노무관리 운영실태 개선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노사협력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안전총괄과]

과·담당관	분 장 사 무
안전총괄과	1. 재난 및 학교안전에 대한 총괄기획 및 조정 2. 안전관리 통합매뉴얼 마련 및 운영실태 점검 3. 안전대책상황반 운영 4. 학교안전공제회 법인 업무 지원 및 관리 5. 안전한국훈련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 6. 재난안전관리 세부집행 계획 수립 7.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수립 8. 학교재난예방활동 계획 수립 9. 재난 및 재해관리 10.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운영 지원 11. 학생안전관리 업무 기획 및 총괄 12.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13.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생소풍, 수학여행 및 학생수련에 관한 사항 15. 안전체험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6. 초등학생 안전한 등하굣길 운영에 관한 사항 17. 미세먼지 예방에 관한 사항 18. 배움터지킴이 관리에 관한 사항 19. CCTV 관리에 관한 사항 20. 보안관리 업무 21. 비상대비업무(충무계획의 수립·종합) 2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 23. 사회복무요원 배정, 근무지 지정 및 복무 관리 24.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안전총괄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 교 육 국

[초등교육과]

과 · 담당관	분 장 사 무
초등교육과	1. 교실수업개선계획 수립 및 자료개발 보급 2. 기초학력 향상 지원 3. 컨설팅장학 계획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 4. 인성(효)교육 기본계획 수립 5. 방과후 학교 운영·지도(기본계획 등 교육과정 관련 사항 6. 교육활동 유공학교 및 교원·학생 표창 등에 관한 사항 7. 수업개선선도교사제 운영 8. 초등 현장교육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9. 연구학교 기본계획 수립 10. 각종 연구대회 운영 총괄·조정 11.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2. 초등학습준비물지원 업무 13. 초등교육실습협력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 14. 인성교육중심수업 지원 15. 공립 초등교원(특수학교·유치원 교원포함, 이하 같다)의 인사, 연수, 징계 및 정원 관리 16. 공립 초등교원 수급계획 수립(교원인사제도의 탄력적 운영계획포함) 17. 초등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 18. 초등교원 명예퇴직 및 학교장·교사초빙제 실시에 관한 사항 19. 초등 퇴직교원 및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한 사항 20. 교원 관련 각종위원회(인사, 명예퇴직 및 공적심사 등) 운영 21. 초등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과·담당관	분 장 사 무
초등교육과	22.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연수에 관한 사항 23. 초등교원 연수, 연구실적 등의 학점화에 관한 사항 24. 초등교원 복무, 공무국외여행 심의에 관한 사항 25. 초등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26. 초등 수석교사제 선발·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27. 유아교육 기본계획 수립 28.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29. 유치원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30. 유치원 방과후 과정 및 돌봄교실 운영 지원 31.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32. 특수교육운영계획 수립 33.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34.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35.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수·학습 지원 36. 특수학교(급) 설립 기본계획 수립 37.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38.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총괄 39. 교육국 업무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40. 교육정책 기획, 개발·관리,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41. 연구·시범학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42.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 43.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운영 지원 44. 그 밖에 교육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등교육과]

과·담당관	분 장 사 무
중등교육과	1. 교실수업개선계획 및 자료개발 보급 2. 원어민교사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외국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진로·진학교육에 관한 사항 5. 대학입학전형 및 대학진학관련 업무 6. 전국연합학력평가, 대입수능관련 업무 7. 컨설팅장학 계획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 8. 학생 자율동아리 지원 9. 중등교과연구회 기본계획 수립 10. 중등 현장교육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11. 교육활동 유공학교 및 교원·학생 표창 등에 관한 사항 12. 문화예술교육 지원 13. 사교육비 경감 대책 수립·추진 14. 고교 재학생 병영 사무에 관한 사항 15. 방송 및 미디어교육활용에 관한 사항 16. 특성화중·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17. 중등 수석교사제 선발·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18.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19. 자율고 및 기숙형 고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0. 예술계열 학교 설립 기본계획 수립 21. 학생문화예술축제 발표회 지원 22. 예술고교 및 예술교육중점학교 운영 지원 23.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 지원 24. 공립 중등교원의 인사, 연수, 징계 및 정원 관리 25. 공립 중등교원의 수급계획 수립(교원인사제도의 탄력적 운영계획 포함)

과·담당관	분 장 사 무
중등교육과	26. 중등 교육전문직원 관리 27. 중등교원 명예퇴직 및 학교장·교사초빙제 실시에 관한 사항 28. 중등 퇴직교원 및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한 사항 29. 교원 징계위원회 운영 30. 중등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31. 강사,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 교사 관리 32. 중등교원 임용후보자 연수에 관한 사항 33. 중등교원 연수, 연구실적 등의 학점화에 관한 사항 34. 중등교원 복무, 공무국외여행 심의에 관한 사항 35. 중등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36. 교원성과상여금 업무에 관한 사항 37. 교육전문직원 선정경쟁시험 관리 38.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관리 39. 사립교원의 인사관리 40. 학생 재입학 및 편입학 관리(특성화고등학교 제외) 41. 학생 전입학 관리(특성화고등학교 제외) 42. 고등학교 입학전형 업무 4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44.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5.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 46. 교원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47. 교원자격증 재교부 48. 북부교육문화센터 운영 지원 49. 그 밖에 중등교육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평생교육체육과]

과·담당관	분 장 사 무
평생교육체육과	1.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2. 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시설 설립·폐지 및 운영지도 4. 제3호에 해당하는 무등록 교육기관의 단속 5. 학원의 설립·폐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공공도서관의 설립·폐지 및 운영·지도 7. 공익법인의 설립·폐지 및 운영·지도 8. 평생학습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사항 10. 문해교육에 관한 사항 11. 체육관련 교육기관(학교포함)의 설립·폐지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지도 12. 체육계열학교 체육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및 초·중·고등학교 체육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13. 체력검사,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4. 체육특기자 심사 15. 학교운동부 운영에 관한 사항 16. 전국(소년,동계)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학교체육연구대회에 관한 사항 18.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에 관한 사항 19. 학생건강증진 및 학교보건교육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지도 20.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유치원 포함)

과·담당관	분 장 사 무
평생교육체육과	21.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22. 흡연 및 약물 오 ·남용 예방관리 23. 학교 먹는 물 위생 관리(유치원 포함) 24. 학교 교사 내 공기 질 유지 관리(유치원 포함) 25. 학교보건실 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항 26. 학교보건 연구학교 운영 지원 27. 학교설립용지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축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승인 28. 독서·토론·논술교육에 관한 사항 29.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30.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1. 인문학 및 인문소양 교육 32.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운영 지원 33.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34. 그 밖에 평생교육체육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창의인재교육과]

과 · 담당관	분 장 사 무
창의인재교육과	1.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각종학교포함,이하같다)의 교육과정편성·운영 지도 2. 특성화고의 컨설팅 장학지도 및 연구학교 운영 지원 3. 특성화고의 실험실습 기자재 활용지도 4. 산학협동, 현장실습 및 취업지도 5. 특성화고의 기술인력 양성계획 수립 및 운영·지도 6. 각급 학교 경제교육에 관한 사항 7. 특성화고의 실험실습시설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8. 특수목적고(산업수요 맞춤형고, 과학고) 설립·폐지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지도 9.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기본계획 수립 및 장학협의 등 운영·지도 10.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의 설립·폐지 기본계획 수립 및 장학협의 등 운영·지도 11.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2.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3. 정보교육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14. 교육정보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15. 교육정보화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6. 교원 교육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대회운영 포함) 17. 소프트웨어 교육 및 디지털 교과서 등 정보교육 관련 미래교육에 관한 사항 18. 교류협력 대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과·담당관	분 장 사 무
창의인재교육과	19. 정보통신윤리교육에 관한 사항
	20. 학생 지식정보처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1. ICT교수학습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2.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관한 사항
	23.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운영·지원
	24.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25. 학교의 과학전용교실 확보 및 지원
	26. 융합인재교육(STEAM) 활성화 지원
	27.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운영 지원
	28.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9. 체험중심 생태환경교육 지원
	30.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31. 영재교육 관련 위원회 운영
	32. 영재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33.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34. 해양교육에 관한 사항
	35.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36. 그 밖에 창의인재교육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학교생활교육과]

과·담당관	분 장 사 무
학교생활교육과	1. 학생생활지도 관련 업무 2. 학교폭력 예방 계획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발생 사안조사 및 민원처리(성폭력 사안처리 포함) 4. 학교 주관 교복 구매에 관한 사항 5. Wee 프로젝트(학생상담활동 포함) 정책 관련 업무 6. 대안학교 운영 및 지도·감독 7.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지원 8.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업무 9. 학생선도위원회(협의회) 업무 10. 학생상담 자원봉사자회 지원 업무 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업무 12. 학업중단 예방업무 13. 학업중단학생 학력인정 14. 재입학생 적응교육 15. 대안교육위탁기관 지정·운영 16. 무등록 대안 교육 시설 단속 17. 대안교육지원센터 운영 18.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 지원 19. 학생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20. 성 평등에 관한 사항 21.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2. 성교육에 관한 사항 23. 성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학교생활교육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 행 정 국

[총무과]

과 · 담당관	분 장 사 무
총무과	1. 관인관수 2. 당직관리 3. 청사 관리 4. 관용차량 정수관리 및 본청배정차량 운영·관리 5. 부설주차장 운영·관리 6.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 운영 7. 교직원 맞춤형 복지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8.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운영 지원 9. 연금,대여장학금,국민건강보험,임대주택 등에 관한 사항 10. 지방직 공무원 인사, 연수, 상훈 및 복무관리 11. 공무원증 발급 12. 회계직 공무원 임명·해임 13. 각급기관 특수운영직군 운영 및 관리(청소 및 당직근로자 등) 14.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및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등 운영 15.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6.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17.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BRM) 운영 18. 정보공개제도 운영 19.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운영 20. 인천교육사료보관소 운영 21.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지도 22. 민원상담 및 제증명 등 민원처리 23. 민원의 접수 및 관리 24.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25. 문서 접수·발송·배부 26. 교육정책 기획, 개발·관리,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다른 국·담당관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학교설립과]

과 · 담당관	분 장 사 무
학교설립과	1. 지방교육행정조직 관리 2. 지방직 공무원 정원 관리 3. 공무원 총액인건비 관리에 관한 사항 4.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에 관한사항 5.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6. 사무분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교육행정 업무편람 발간 8. 지식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9. 지방교육행정기관 기능 재배분 10. 지방이양·지역균형발전 및 분권에 관한 업무 1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초,중,고,특수) 학생배치계획 및 학급편제 12. 의무취학 관리 13. 학교군·구 운영에 관한 사항 14. 개발지역 학생배치계획 및 학교설립 협의 15. 개발사업지역의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 16. 학교용지 선정 업무에 관한 사항 17.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공립학교)에 관한 사항 18. 신설학교 개교추진사항 점검 및 보고 19. 교명심의위원회와 개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20.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관한사항 21. 유치원 설립·폐지와 변경인가에 관한 지도감독 2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사립유치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산업체부설학교 제외, 이하 같다)의 설립(또는 설치)·폐지(변경사항 포함) 2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전·재배치 기획 24. 사실상 학교형태로 운영되는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25. 그 밖에 학교설립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교육재정과]

과 · 담당관	분 장 사 무
교육재정과	1.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결산 관리 2. 자금관리와 차입금 및 상환 3.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관리 4. 교육금고 지도감독 5. 공립유치원 및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책정 6. 채권관리 7. 세출예산의 집행 8. 물품, 용역 계약 및 관리 9. 물품관리 및 물자절약,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시행 10. 통합급여 관리 11. 공사계약 및 관리 12.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13. 신기술, 친환경 장애인 중소기업(여성기업) 생산품 구매관리 14.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및 관리 15. 국·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교환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6. 도시·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학교제외)에 관한 사항 17. 학교용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지장물 보상 등)에 관한 사항 18. 공유재산 실태조사 19.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20.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해산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1. 학교법인에 관한 사항 22. 사립학교의 학교회계 관리지도(사립유치원 포함) 23.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등 각종 재정보조 24.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25.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교육재정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정보지원과]

과 · 담당관	분 장 사 무
정보지원과	1. 교육정보화 기본·시행 계획 수립 및 조정 2. 교육통계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운영 3.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구축·운영 4. 나이스시스템 구축·운영 5.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구축·운영 6.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7.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서 발급·관리 8. 정보기술아키텍처(범정부EA) 구축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 10. 지방공무원 정보화 역량 강화 11. 학교홈페이지 통합 구축·운영 12. 교육정보화 기기보급에 관한 사항 13.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4. 학내전산망(유무선) 구축 지원 15. 정보시스템 통합재해복구시스템 구축·운영 16.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 구축·운영 17. 인천교육융합통신망 구축·운영 18.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시행 19. 개인정보보호 20. 정보보안 21.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 22. 그 밖에 정보지원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교육시설과]

과 · 담당관	분 장 사 무
교육시설과	1.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기획업무(표준 설계 포함) 2.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4. 교육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조정·지도 5. 위험시설물 판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학교시설사업의 민간자본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7. 민간투자사업 기획·고시·협약·시공 및 정부지급금·성과평가·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본청 및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가.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 나. 지도 다. 하자검사 및 보수 9. 학교 시설 지원 총괄 10.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의 신설 및 전면개축·이전재배치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가.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 나. 건축 승인 및 협의 다. 지도 감독 및 검사 11. 지장물(전기, 통신 등 공공시설물)의 이설에 관한 사항 12. 시설복합화사업 추진 13. 그 밖에 교육시설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2. 직속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부서명	분 장 사 무
교육정보자료부	1. 정보원 업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정보 자료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망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7. 사이버가정학습 인천 e학습터 운영 8. 소프트웨어교육지원센터 운영 9. 문헌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보 교과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1. 찾아가는 창의미래교육 12. 그 밖에 교육정보 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과학교육부	1. 과학기술정보 제공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과학교육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과학실험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과학기교재 개발 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과학교육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과학탐구교실 및 과학동아리 지도에 관한 사항 7. 각종 과학교육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8. 인천학생과학관 운영·관리 및 전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9. 과학 교과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0. 과학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11. 지진 관련 안전체험교육 12. 그 밖에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총무부	1. 관인 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부서명	분 장 사 무
기획운영부	1. 연수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혁신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3. 연수원 발전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4.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5. 초·중등교원, 보건·영양교사 및 교수요원 연수 이외의 연수에 관한 사항 6. 원격교육 연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전산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교원연수부	1. 중등교원 및 보건·영양교사 연수(수요조사와 선발 포함)에 관한 사항 2. 초등교원 및 교수요원 연수(수요조사와 선발 포함)에 관한 사항
세계시민교육부	1.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어민교사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세계시민교육 및 외국어교육을 위한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4. 소관 특별실 운영관리 및 각종 교육기자재 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5. 학생 세계시민교육 및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세계시민교육연수 및 외국어연수에 관한 사항
행정연수부	1. 지방공무원 연수 및 교육연수생 선발(기본교육, 위탁교육, 타 교육훈련기관 교육 제외)에 관한 사항 2. 사립학교 직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3.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 연수에 관한 사항
총무부	1. 관인 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식당 및 기숙사 등 청사 및 차량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의무실 운영 및 원내 위생에 관한 사항 6. 특별실 운영 관리 및 각종 교육기자재 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부서명	분 장 사 무
독서문화과	1. 도서관 자료의 열람·대출 2. 순회문고 운영 3.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행사 등 각종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서관리·보존·통계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업무 6.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상호교환 7.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정보자료과	1. 도서관 자료의 선정 및 수집 2. 도서관 자료의 정리분류 및 목록 작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자료의 수집 4. 도서관 자료의 조사 연구 5.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7. 디지털정보 및 학술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9. 자료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DLS) 운영 및 활성화
마을교육지원과	1. 평생교육운영계획 수립 추진 2.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3. 평생학습 정보수집 4. 지식정보취약계층의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5. 각급학교 평생교육 지원 6. 마을교육 및 마을교육자치 지원 7.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관리과	1. 관인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금 및 의료보험 등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단, 인천광역시교육청부평·주안·화도진·서구·계양·연수도서관의 독서문화과장은 마을교육지원과 업무를 포함하여 분장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부서명	분 장 사 무
교학과	1.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교육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생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관리과	1. 관인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학생교육원 시설 및 차량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해양환경체험학습장	1. 해양 환경 및 생태 체험활동 2. 야영 및 공동체활동
서사체험학습장	1. 통일 평화 체험활동 2. 야영 및 공동체활동
흥왕체험학습장	1. 역사 문화 체험활동 2. 야영 및 공동체활동
국화리학생야영장	1. 숲 생태 체험활동 2. 야영 및 공동체활동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부서명	분 장 사 무
운영부	1.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2.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3. 학교축제 문화 지원 4. 청소년 자치교육 활동 기획 및 운영 5. 지역문화예술교육네트워크 운영 6.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회 기획 운영 7.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총무부	1. 관인관수 및 일반서무 2. 인사·복무 및 보안 3. 예·결산 및 회계 4. 청사 및 시설 안전 관리 5. 물품 및 재산관리 6. 자유이용실 운영 7. 정보화 관련 업무 8.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부서명	분 장 사 무
기획·정보부	1.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 2. 대외협력 업무 및 홍보 3. 어린이 도서관 및 디지털 자료실 운영 4. 정보보안 및 전산 시스템 관리 5. 학습자료 수집 및 정리 6. 독서 프로그램 운영 7.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회 기획·운영 8.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9.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부	1.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2. 학부모교육센터 운영 3. 교직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평생학습 계좌제 운영 5. 학습동아리 운영 6.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 7. 평생교육 상담 및 취업 지원 8. 학점은행제 운영 9. 평생교육기관 상호간 연계 체제 구축
총무부	1. 관인관수 및 보안관리 2. 인사·복무관리 3. 급여,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등 직원후생 관리 4.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청사 및 차량 운영관리 6. 기록물관리 7. 물품, 재산 및 시설관리 8.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부서명	분 장 사 무
기획운영과	1.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관련 연구 수행 및 교원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4.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5. 유아체험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유아교육관련 프로그램과 교재·교구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유아교육 교육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원봉사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유아교육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관리과	1. 관인관수 및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결산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3. 물품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5. 청사 및 차량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7. 연금 및 의료보험 등 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부서명	분 장 사 무
초등교육과	1. 학교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2.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혁신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 4.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5.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6.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7. 초등 독서·토론·논술교육 및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사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원의 인사,연수,복무,상훈 및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9.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원 징계에 관한 사항 10. 유치원, 초등학교 교원의 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 11. 초등학교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 12. 계기교육(경제,에너지)에 관한 사항 13. 초등학교,유치원 교육방송 활용 및 교육기자재 활용 지원 14.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15. 초등학교 및 유치원 컨설팅장학 및 연구·실험·연구학교(유치원) 운영 지도 16. 초등학교 및 유치원 방과후학교 운영(교육과정 포함) 및 사교육비경감 관련 업무 17.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 18. 유치원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유치원 관리 운영 지원 20. 초등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2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22. 학생·교직원 인권 보호 업무 23.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24. 학부모교육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25. 지역사회 협력 26. 학부모회에 관한 사항 27.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28. 초등 역사 및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29.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성교육 포함) 30. 교육정책 공보지원에 관한 사항 3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32.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33. 초등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 34. 문화예술 교육에 관한 사항 35. 그 밖에 중등교육과 주관 업무의 유·초등학교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6. 그 밖에 교육지원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등교육과	1.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중학교 컨설팅 장학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원 3.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4. 입학, 전·편입학 관리 5. 중학교 교수학습지원 자료의 개발·보급 6. 재입학생 적응 교육에 관한 사항 7.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및 평가 관리 8. 중학교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 9. 수준별 수업 및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10. 중학교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공·사립중학교 교원의 인사· 연수·복무·상훈 및 국외여행 12. 중학교 교사 징계에 관한 사항 13. 학생진로·진학 관련업무 14. 중학교 교과연구회 및 교과연구활동 지원 15. 생활교육 관련 업무

부서명	분 장 사 무
	16.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7.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 18.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9.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20. 부적응 학생 지원 21. Wee 센터 운영 22.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3. 학생안전에 관한 사항 24.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성교육 포함) 25.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및 학생수련에 관한 사항 26. 과학교육관 운영 및 과학교육행사 지원 27. ICT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8. 영재교육 및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영재교육원 운영 포함) 29.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사항 30. 교육행정정보화 및 전산관련 업무 31.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업무 32.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3.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34. 체육교육과정의 운영 35. 체력검사,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36. 체육특기자 심사 37. 운동부 지도자 관리 38. 중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및 사교육경감 관련 업무 39. 중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40.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1. 학교 및 학생자치에 관한 사항 42. 학생 사회참여 활동 운영 43. 성인식 개선 및 성평등 교육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44. 탈북학생 교육지원 업무 45. 다문화교육지원 46. 중등 독서·토론·논술교육 및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47. 중등 역사 및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48. 학교폭력 관련 학교 현장지원 및 민원처리 4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50.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1. 학생·교직원 인권 보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2. 혁신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3. 교육혁신지구 및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54. 그 밖에 초등교육과 주관 업무의 중학교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5. 그 밖에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건강과	1. 학원의 설립·등록과 그 변경 및 폐원(독서실 포함)에 관한 사항 2. 과외교습소의 신고 수리와 그 변경 및 폐지 3.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4.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지도·감독(독서실 포함) 5. 평생교육시설 무등록 교육기관의 단속 6. 학교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의 지도·감독 7.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수리 및 변경 및 폐지 8. 학교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9.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10.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11. 학생 건강검사 및 건강에 관한 사항 12. 보건실 환경개선 지원 13. 학생(유치원생 포함) 건강증진 및 감염병 예방 관리 14. 학교(유치원 포함) 먹는 물 위생 관리 15. 학교(유치원 포함) 교사 내 공기 질 유지 관리 16. 그 밖에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17. 교육환경평가 심의 및 이행사항 확인 18.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관리 19.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20.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 관리 21. 학교(유치원 포함) 공기정화장치 관리 22. 식생활 안전관리 23. 유치원·학교 급식 및 위생 안전관리 24. 영양교육 및 식생활 개선

[행정지원국]

부서명	분 장 사 무
학교운영지원과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평가 2. 관인관수 및 보안 관리 3.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4. 민원에 관한 사항 5. 교육정책 홍보 및 공보지원에 관한 사항 6.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관한 사항 7. 지방공무원의 인사, 징계, 상훈 및 복무관리 8. 지방공무원의 국외여행 9. 회계직 공무원의 임명·해임 10. 비상대비업무 및 민방위 훈련 11. 직장예비군·민방위대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12. 청사 및 차량관리 13. 행정권한의 위임전결, 보고통제, 간행물 발간 조정 14. 행정정보공개제도 관련 사항 15. 공직기강(비위,진정,청원 등 제외)확립 및 추진 16. 상급기관 및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의 수감 준비 및 결과 처리 17.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 지방의회 관련 사항 18. 교육부조리(부패방지,공무원행동강령 등)근절대책 수립 및 지도관리 19.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결과 처리 20. 징계의결 요구 신청 21. 교육행정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혁신 추진 22. 교육통계의 작성 및 분석 23. 제안제도 운영 24.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관리 25. 성과관리·지식관리시스템 운영 26.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27.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28. 학교회계 예·결산에 관한 사항 29. 사립 각급 학교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사립유치원 포함) 30. 사립 중학교 재정 보조

부서명	분 장 사 무
학교운영지원과	31.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32.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33. 의무취학과 학교군 및 학구의 운영 34.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35.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포함)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36. 교육감 소속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37.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운영 38. 그 밖에 청내 다른국, 다른과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복지재정과	1. 세출예산 집행 2. 사용료 및 수수료 기타 세입 징수 3. 학비감면 및 대여장학금 관리 4. 물품관리와 재물조사 및 물품수급 5.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6. 세출예산 집행의 원인 행위 7. 공사, 제조, 용품 구입 수선의 검사 및 입회 8. 급여 관리 9. 물자절약, 에너지절약 10. 교과용 도서 수급 1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유치원포함)의 국·공유재산 관리지원 업무 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운영 나. 재난 및 재해 관리 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 라. 일반재산(폐교재산 등)의 유지 관리 12. 공유재산심의회 지원 업무 13. 학교 용지의 시설 결정 14. 교육지원청 재산의 취득·처분 및 교환(학교제외) 15. 교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연금 관련 업무 나. 공무원 건강보험 관련 업무 다. 공무원 맞춤형복지 관련 업무 라. 직장어린이집 관련 업무

부서명	분 장 사 무
복지재정과	16.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가. 누리과정 지원 나. 저소득층 중식비 지원 다.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라.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마.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바. 초등학교돌봄교실 운영 사. 교복비 및 저소득층 앨범비 지원 17. 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1.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의 시설 증축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가. 시행계획 및 승인(설계포함) 나. 건축 승인 및 협의 다. 지도·감독 및 검사 라. 하자 검사 및 보수 3. 학교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관리 4. 지장물(전기, 통신 등 공공시설물)의 이설에 관한 사항 5. 학교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6. 책걸상 및 사물함 지원·관리 7. 민간투자사업 정부지급금·성과평가·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점검

[강화교육지원청]

부서명	분 장 사 무
교육지원과	타 지원청 교육지원국 소관 사항
행정지원과	타 지원청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
미래교육지원센터	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2. Wee센터 운영 3. 학부모지원센터 운영(학부모지원 및 교육 포함) 4. 학원 및 평생교육 관리 5. 학교폭력관련 업무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소속기관]

부서명	분 장 사 무
과학교육관	1. 과학 관련 각종 교사연수 지원 2. 학생과학탐구능력 신장 활동 지원 3. 학교과학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과학관 안전 및 시설 관리
특수교육지원센터	1.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지원 2. 교수·학습 전략 및 방법 지원 3.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4. 장애인 및 장애학생 가족 상담 지원 5. 통합교육 및 특기적성교육 지원 6. 치료교육 및 직업전환교육 지원 7. 특수교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자료 제공 8. 그 밖에 특수교육 정책 지원

[별표 5]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부속시설의 명칭과 위치

명 칭	위 치
다누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천로 14번길 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절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제1절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제10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0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장----------.
제11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정보자료부, 과학교육부, 총무부를 둔다. ② (생 략)	제11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② (현행과 같음)
제2절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제2절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제12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2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
제13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에 기획평가부, 연수운영부, 세계시민교육부, 행정연수부,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평가부장·연수운영부장·세계시민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 기획운영부, 교원연수부----------. ② 기획운영부장·교원연수부장·세계시민교육부장----------.

제3절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	제3절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제14조(관장)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장은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4조(관장)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장----------.
제15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인천광역시중앙도서관에 독서문화과, 정보자료과, 평생교육운영과, 관리과를 두며,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인천광역시주안도서관·인천광역시화도진도서관·인천광역시서구도서관·인천광역시계양도서관 및 인천광역시연수도서관에 독서문화과, 정보자료과, 관리과를 둔다. ② 독서문화과장·정보자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평생교육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신 설>	제15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청북구도서관·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마을교육지원과---------- 인천광역시교육청부평도서관·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인천광역시교육청화도진도서관·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 ② ---------- 마을교육지원과장----------. ③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관할 부속시설로 다누리를 두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제4절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	<삭 제>
제16조(장장)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장은 동인천중학교장이 겸임한다.	<삭 제>
제5절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	제5절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제17조(원장)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7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
제18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에 교학과, 관리과를 두며, 관할 수련시설로 해양환경체험학습장, 서사체험학습장, 홍왕체험학습장, 국화리학생야영장을 둔다.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8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절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제6절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제19조(관장)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9조(관장)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제20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에 운영부, 총무부를 둔다.	제20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절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제7절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제21조(원장)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1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제8절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제8절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제22조(관장)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22조(관장)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장----------.
제23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에 기획·정보부, 평생교육부, 총무부를 둔다. ② (생 략)	제23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② (현행과 같음)
제9절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제9절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제24조(원장)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4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
제25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에 기획연구과, 운영지원과, 관리과를 둔다. ② 기획연구과장, 운영지원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고,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제25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 기획운영과----------. ② 기획운영과장----------.

관계법령 발췌

관계법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0조(과·담당관 등의 설치) ○ 제11조(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제1항 ○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제2항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3조(담당관·과·한시기구의 설치 등) ○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관 계 법 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에 두는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교육지원청 국ㆍ과(담당관)ㆍ센터의 설치 및 국장ㆍ과장(담당관)ㆍ센터장의 사무 분장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되, 국ㆍ과(담당관)ㆍ센터의 설치기준 및 국장ㆍ과장(담당관)ㆍ센터장의 직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담당관·과·한시기구의 설치 등) 본청의 담당관·과·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 2019 - 319호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1. 개정이유

영종도·용유도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급지별 학교 수업료 적용을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개정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 등)

나.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징수금액)

3. 주요내용

영종도·용유도 소재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1급지 적용시기 변경(안 별표 1)

: 2020학년도 신입생 → 2021학년도 신입생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인천광역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law.ice.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 주소 : (우편번호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 우편 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 전화 및 팩스: 전화) 032-420-6573 팩스) 032-420-6595

- E-mail: manpower1036@ice.go.kr

5.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양식 : "붙임1"

6. 개정규칙(안) : "붙임2"

[붙임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민원인 인 적 사 항	성 명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성명 (인)

[붙임2]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 표에서 1급지 “가”라 함은 2급지 “가”, “나” 및 3급지를 제외한 시내 전지역과 인천과학고등학교, 인천국제고등학교를, 2급지 “가”라 함은 읍지역을, 2급지 “나”라 함은 3급지를 제외한 면지역을, 3급지라 함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된 학교(읍지역 제외) 및 그 소속 병설유치원과 영종도ㆍ용유도 지역 소재 학교를 말한다.(단, 영종도ㆍ용유도 지역 소재 학교는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1급지 “가”를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1]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 : 원)

구분 / 학교별	급지별		월/년	입학금	수업료 비특성화고	수업료 특성화고	적요
고등학교	1급지	가	월		116,700	116,700	
			년		1,400,400	1,400,400	
	2급지	가	월		85,500	85,500	읍지역
			년		1,026,000	1,026,000	
		나	월		76,100	48,400	면지역
			년		913,200	580,800	
	3급지		월		58,100	41,300	도서·접적
			년		697,200	495,600	
방송통신고등학교	1급지	가	월		9,800		
			년		117,600		
공립유치원	1급지	가	월		38,200		
			년		458,400		
	2급지	가	월		26,200		읍지역
			년		314,400		
		나	월		15,100		면지역
			년		181,200		
	3급지		월		15,100		도서·접적
			년		181,200		

[비 고]

1. (생 략)
2. 이 표에서 1급지 "가"라 함은 2급지 "가", "나" 및 3급지를 제외한 시내 전지역과 인천과학고등학교, 인천국제고등학교를, 2급지 "가"라 함은 읍지역을, 2급지 "나"라

개 정 안

[별표 1]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 : 원)

구분 / 학교별	급지별		월/년	입학금	수업료 비특성화고	수업료 특성화고	적요
고등학교	1급지	가	월		116,700	116,700	
			년		1,400,400	1,400,400	
	2급지	가	월		85,500	85,500	읍지역
			년		1,026,000	1,026,000	
		나	월		76,100	48,400	면지역
			년		913,200	580,800	
	3급지		월		58,100	41,300	도서·접적
			년		697,200	495,600	
방송통신고등학교	1급지	가	월		9,800		
			년		117,600		
공립유치원	1급지	가	월		38,200		
			년		458,400		
	2급지	가	월		26,200		읍지역
			년		314,400		
		나	월		15,100		면지역
			년		181,200		
	3급지		월		15,100		도서·접적
			년		181,200		

[비 고]

1. (현행과 같음)
2. 이 표에서 1급지 "가"라 함은 2급지 "가", "나" 및 3급지를 제외한 시내 전지역과 인천과학고등학교, 인천국제고등학교를, 2급지 "가"라 함은 읍지역을, 2급지 "나"라

현 행	개 정 안
함은 3급지를 제외한 면지역을, 3급지라 함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된 학교(읍지역 제외) 및 그 소속 병설유치원과 영종도·용유도 지역 소재 학교를 말한다.(단, 영종도·용유도 지역 소재 학교는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1급지 "가"를 적용한다.)	함은 3급지를 제외한 면지역을, 3급지라 함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된 학교(읍지역 제외) 및 그 소속 병설유치원과 영종도·용유도 지역 소재 학교를 말한다.(단, 영종도·용유도 지역 소재 학교는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1급지 "가"를 적용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